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기초연구

도남희·구자연·신나리·강규돈





연구보고 2022-05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기초연구

저

자

도남희, 구자연, 신나리, 강규돈

연구진

연구책임자 도 남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구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신 나 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강 규 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2-05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기초연구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자인 02)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20-6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리말

영유아기의 성인과의 관계는 이후 사회·정서적인 발달에 중요하다. 영유아들은 자신에게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성인과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주변을 탐색하면서 성장하고 발달한다. 그러므로 가정을 떠나 부모 외 다른 성인과의 초기 경험을 갖게 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와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는 이후 사회·정서뿐만 아니라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가정 외 공간에서 최초의 타인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확장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전반적인 보육 환경과 국내·외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제도 및 현황, 선행연구와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였고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자료를 확보하고 각 시범사업들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을 만났으며 전문가 인터뷰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검토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 시·도 공무원 실무 담당자들, 어린이집 원장님들,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함께 연구해 주신 충북대학교 신나리 교수님과 원내 연구진, 본 연구를 위해 조언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 목차

|    |   |
|----|---|
| 요약 | 1 |
|----|---|

|                |    |
|----------------|----|
| I. 서론          | 13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5 |
| 2. 연구 내용       | 16 |
| 3. 연구 방법       | 17 |
| 4. 용어 범위 및 제한점 | 20 |

|                             |    |
|-----------------------------|----|
| II. 연구의 배경                  | 23 |
| 1. 전반적인 보육 환경               | 25 |
| 2. 국내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제도 및 현황 | 33 |
| 3. 국외 교사 대 아동 비율 현황         | 40 |
| 4.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중요성          | 47 |
| 5. 선행연구                     | 54 |
| 6. 소결                       | 61 |

|                                |    |
|--------------------------------|----|
| III. 지자체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시범사업 사례 | 63 |
| 1. 서울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 65 |
| 2.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 74 |
| 3. 인천시의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 77 |
| 4. 대전시 0세 전용 어린이집 지원사업         | 80 |
| 5. 광양시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 83 |
| 6. 진주시 구슬모음어린이집 사업             | 85 |
| 7. 소결                          | 87 |

|                          |    |
|--------------------------|----|
| IV.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인식과 요구 | 93 |
| 1. 보육 현장에 대한 인식          | 95 |

---

|                                        |     |
|----------------------------------------|-----|
| 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 .....            | 99  |
| 3.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 ..... | 102 |
| 4.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의 효과 인식 .....     | 108 |
| 5.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모형개발 .....              | 109 |
| 6. 소결 .....                            | 114 |

## **V.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 제안** **117**

|                                |     |
|--------------------------------|-----|
| 1. 시범사업 모형개발의 기본 방향 및 쟁점 ..... | 119 |
| 2. 시범사업 실시 추진 계획 .....         | 121 |
| 3. 시범사업 모형과 추정 예산 .....        | 123 |

## **참고문헌** **129**

## **부록** **135**

|                        |     |
|------------------------|-----|
| 1. 사례조사 .....          | 136 |
| 2. 심층면담(어린이집 원장) ..... | 137 |
| 3. 심층면담(어린이집 교사) ..... | 138 |
| 4. 전문가 의견조사 .....      | 139 |

---





## 표 목차

|                                                     |    |
|-----------------------------------------------------|----|
| 〈표 Ⅰ-1- 1〉 사례조사 대상 .....                            | 18 |
| 〈표 Ⅰ-1- 2〉 사례조사 내용 .....                            | 18 |
| 〈표 Ⅰ-1- 3〉 심층면담 대상 .....                            | 19 |
| 〈표 Ⅰ-1- 4〉 심층면담 내용 .....                            | 19 |
| 〈표 Ⅰ-1- 5〉 전문가 의견 조사 .....                          | 20 |
| 〈표 Ⅰ-1- 6〉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 20 |
| 〈표 Ⅱ-1- 1〉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                  | 25 |
| 〈표 Ⅱ-1- 2〉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                   | 26 |
| 〈표 Ⅱ-1- 3〉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교직원 현황 .....                  | 27 |
| 〈표 Ⅱ-1- 4〉 어린이집 일반 현황 .....                         | 28 |
| 〈표 Ⅱ-1- 5〉 어린이집 1개당 아동 수,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 .....      | 29 |
| 〈표 Ⅱ-1- 6〉 정원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                  | 30 |
| 〈표 Ⅱ-1- 7〉 현원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                  | 30 |
| 〈표 Ⅱ-1- 8〉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                        | 31 |
| 〈표 Ⅱ-1- 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                      | 31 |
| 〈표 Ⅱ-1-10〉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                  | 32 |
| 〈표 Ⅱ-2- 1〉 보육교사 배치기준 .....                          | 33 |
| 〈표 Ⅱ-2- 2〉 교사 대 아동 비율 일반기준 적용예시 .....               | 34 |
| 〈표 Ⅱ-2- 3〉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 적용예시 .....               | 34 |
| 〈표 Ⅱ-2- 4〉 유예대상과 기간 .....                           | 35 |
| 〈표 Ⅱ-2- 5〉 연령별 반편성 출생일 기준 .....                     | 37 |
| 〈표 Ⅱ-2- 6〉 연령별 반편성 정원 기준 .....                      | 37 |
| 〈표 Ⅱ-2- 7〉 연령혼합 반편성 정원 기준 .....                     | 38 |
| 〈표 Ⅱ-2- 8〉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                      | 39 |
| 〈표 Ⅱ-2- 9〉 연장보육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                 | 40 |
| 〈표 Ⅱ-3- 1〉 유럽연합 국가의 교사/성인 대 아동 비율 (2018/2019) ..... | 42 |
| 〈표 Ⅱ-3- 2〉 NAEYC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반 규모 (2022) .....     | 44 |
| 〈표 Ⅱ-3- 3〉 호주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                  | 45 |
| 〈표 Ⅱ-3- 4〉 뉴질랜드의 성인 대 아동 비율 기준 .....                | 46 |
| 〈표 Ⅱ-3- 5〉 일본의 보육소 보육사 배치기준(최저기준) .....             | 47 |

---

|                                               |     |
|-----------------------------------------------|-----|
| 〈표 II-4- 1〉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선행연구 .....          | 56  |
| 〈표 II-4- 2〉 교사-아동 상호작용 외적 요인 관련 선행연구 .....    | 58  |
| 〈표 II-4- 3〉 교사-아동 상호작용과 아동발달 관련 선행연구 .....    | 60  |
| 〈표 III-1- 1〉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 .....                | 65  |
| 〈표 III-1- 2〉 서울시 노원구 어린이집 현황 .....            | 68  |
| 〈표 III-1- 3〉 노원안심어린이집 유형별 개소수 및 연령별 반수 .....  | 69  |
| 〈표 III-1- 4〉 노원안심어린이집 시설별 반 운영비 지원 단가 .....   | 69  |
| 〈표 III-1- 5〉 서울시 서초구 어린이집 현황 .....            | 71  |
| 〈표 III-1- 6〉 서울시 동작구 어린이집 현황 .....            | 73  |
| 〈표 III-1- 7〉 동작구 시범사업 소요 예산 .....             | 74  |
| 〈표 III-2- 1〉 경기도 어린이집 현황 .....                | 75  |
| 〈표 III-3- 1〉 인천시 어린이집 현황 .....                | 77  |
| 〈표 III-4- 1〉 대전시 어린이집 현황 .....                | 81  |
| 〈표 III-5- 1〉 전라남도 광양시 어린이집 현황 .....           | 83  |
| 〈표 III-6- 1〉 경상남도 진주시 어린이집 현황 .....           | 86  |
| 〈표 III-7- 1〉 국내 지자체 시범사업 비교표 .....            | 89  |
| 〈표 IV-5- 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한 이유 .....       | 109 |
| 〈표 IV-5- 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한 연령(다중응답) ..... | 110 |
| 〈표 IV-5- 3〉 개선 시 교사 대 1인당 아동 수와 집단 크기 .....   | 111 |
| 〈표 IV-5- 4〉 시범사업의 필요 여부 .....                 | 112 |
| 〈표 IV-5- 5〉 시범사업 모형 선택 .....                  | 112 |
| 〈표 IV-5- 6〉 시범사업 시 운영 방안 예시 선택 .....          | 113 |
| 〈표 IV-5- 7〉 시범사업 어린이집 개수 .....                | 114 |
| 〈표 V-1- 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제안 .....             | 119 |
| 〈표 V-3- 1〉 시범사업 모형 1안 .....                   | 124 |
| 〈표 V-3- 2〉 시범사업 모형 2안 .....                   | 124 |
| 〈표 V-3- 3〉 시범사업 모형 3안 .....                   | 125 |
| 〈표 V-3- 4〉 모형 1안의 지원금액 .....                  | 125 |
| 〈표 V-3- 5〉 모형 2안의 지원금액 .....                  | 126 |
| 〈표 V-3- 6〉 모형 3안의 지원금액 .....                  | 127 |
| 〈표 V-3- 7〉 각 모형의 시범사업 1년 소요예산 .....           | 128 |

---



## 그림 목차

|                                                        |     |
|--------------------------------------------------------|-----|
| [그림 I-1-1]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 17  |
| [그림 II-1-1]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                    | 26  |
| [그림 II-1-2]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                     | 27  |
| [그림 II-1-3]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교직원 현황 .....                    | 28  |
| [그림 II-3-1] OECD 국가의 ECEC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수 (2020) ..... | 41  |
| [그림 III-1-1] 동작구 시범사업 추진절차 .....                       | 74  |
| [그림 V-3-1] 시범사업 모형 .....                               | 123 |

---





### 1. 서론

#### 가.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에 대한 개선을 약속함.
  - 영유아의 인구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수 감소와 폐원 증가, 정원 충족률 등의 변화로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인 수준에 부응하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보육서비스인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 모형개발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현장 적용 시범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향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연구 내용

-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중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국내·외 규정과 현황 등을 파악함.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을 위해 이미 시행된 지자체 중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관련 사업 등의 관련 내용을 분석함.
  - 서울시(서초구, 노원구, 동작구),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광양시, 진주시
-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하여 분석함.
-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을 시도함.

####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제도와 규정 검토, 2차 자료를 분석함.
- 사례조사를 통해 지자체 시범사업의 내용과 시사점을 도출함.

- 심층면담을 통해 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의견을 청취함.
-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시범사업과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모형개발의 방향성 모색함.

## 라. 용어의 정의 및 연구 범위

-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모형개발이 목적이며 예산은 어린이집 유형과 개수에 따라 변동 가능함.

## 2. 연구의 배경

### 가. 전반적인 보육 환경

- 어린이집은 2021년 12월 기준, 전반적인 감소세에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은 감소세가 뚜렷함.
-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 아동도 감소하고 있으나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아동은 증가세에 있음.
- 보육교직원은 2010년에 비해서 증가하다가 주춤한 상황에 있지만, 앞서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 현황과 마찬가지로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교직원은 증가세에 있음.
- 보육통계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 수,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 1개소 당 평균 아동 수는 35.6명,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평균 3.7명,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평균은 5.0명임.

### 나. 국내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제도와 현황

-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과 연령별 반편성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배치기준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 따른 연령별 반편성 기준에 따름.
  - 교사 대 아동 비율 적용

| 구분           |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
| 원칙           |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 탄력 편성        |      | -                    | 1명    | 2명    | 3명     | 3명      |
| 농어촌<br>특례 범위 | 기본보육 | 4명 이내                | 7명 이내 | 9명 이내 | 19명 이내 | 24명 이내  |
|              | 연장보육 | 7명 이내(0세 포함 시 5명 이내) |       |       | 20명 이내 |         |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p. 211-212 내용을 합하여 구성함.

## 다. 국외 교사 대 아동 비율 현황

□ OECD 회원국의 경우, 회원국의 평균은 15.14명으로, 최소 비율은 아일랜드(3.96명), 최대 비율은 영국(36.70명)으로 보고되고 있음(OECD, 2022).

- 보조교사 및 보조인력을 제외한 정교사 기준의 수치인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8.42명임.
- 2017년 13.3명에 비해 급격하게 낮아졌는데(OECD, 2019), 이는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아 수로 인해 과소 추정된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 국가에서 주교사에 해당하는 core practitioner의 배치 기준은 유아의 경우 적게는 노르웨이의 6명, 아일랜드와 헝가리와 같이 8명인 경우도 있으나, 20명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남.

- 영아에 대한 교사 배치기준은 0세의 경우 교사 1명 또는 성인 1명이 담당하는 최대 인원이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임.
- 2세는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와 같이 성인 1명이 담당하는 최대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국가가 대부분임.

□ NAYEC의 경우는 적절한 집단의 크기와 성인 대 아동 비율 유지가 중요함.

- 2세 미만의 영아는 4명, 걸음마기 2세는 6명임.
- preschool로 통칭되는 3-4세 유아반은 10명, 5세가 주요 대상이 되는 유치원(kindergarten)은 12명으로 제시함.

□ 호주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NQF에서 정하고 있음

-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의 경우 유아 연령 이하는 1:4, 그 이상은 1:7로 비교적 단순하게 정함
- 기관보육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2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1:4이며, 이 비율은 빅토리아주를 제외하고 36개월 영아까지 동일함.

- 대부분 3-4세 유아는 교사 1인당 10명 또는 11명을, 5세 유아는 교사 1인당 10명 또는 11명이 기준인 주도 있으나, 대부분 15명이 기준임.
- 일본의 보육사 배치 기준은 0세 이하의 경우는 영유아 3명에 보육사 1명, 2세 이하의 경우는 6명, 3세 이하는 20명, 4세 이상은 30명으로 규정함.

## 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중요성

-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구조적 특성 지표
  -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을수록 보육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이유는 개별 영유아에게 주의를 더 집중하여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고 주도성을 증진시키는 지원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정서 표현이 증가함
- 양육 가치관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교사 배치기준에 대한 기대
  -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교사의 상호작용을 이전 세대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며 1인의 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더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높음.
- 국제 비교를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지표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각국의 ECEC 현황을 나타내는데 빠지지 않는 핵심 지표에 해당함.
- 보육교사의 권리존중과 적정한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
  - 적은 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은 보육실에서의 노동 강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직무상의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음.

## 마. 선행연구

-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개선 방안을 연구함.
  -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을 요구함.
  - 연구에 따르면 0세, 3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음.
  - 학급당 교사 2인 배치에 대한 요구도 많았음.



### 3. 지자체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시범사업 사례

#### 가. 서울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 서울시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공립 및 서울형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11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160개소임
  - 신규 채용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전액 지급으로 소요된 예산은 시비 6,516백만 원임.
  - 사업 결과로는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적 개선, 보육교사의 근로개선 효과, 양육자와의 소통 증가 등임.
- 노원구 안심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 2022년 국공립,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 등 97개소에 운영비 지원함.
- 서초구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사업
  - 2019년부터 영아반(만0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를 위한 보조교사와 유아반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만3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를 위해 담임 및 보조교사를 지원함.
- 동작구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
  - 상대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0세반과 과밀반인 3세반 축소 운영하도록 2019년부터 2개소씩 인건비 차액분을 지원하여 현재 8개소 운영함.

#### 나.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 2008년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하는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320개소의 가정어린이집이 대상임.
  - 추가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반 운영비,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함

#### 다. 인천시의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96개소 운영 중임.
  - 지원내용은 운영비(인건비)와 현판 및 지정서 제작비, 환경 개선비임.

- 사업 성과로는 영유아의 개별적 돌봄, 교사의 직무만족도 증가 및 스트레스 감소, 부모의 신뢰감 제고 등임.

## 라. 대전시 0세 전용 어린이집 지원사업

- 2019년부터 0세 전용 어린이집 건립과 선정을 위해 40개소를 목표로 함.
  - 0세반을 구성한 어린이집(직장 및 부모협동어린이집 제외)을 대상으로 교사의 인건비,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함.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2:3으로 조정함.

## 마. 광양시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 0세아 및 1세아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으로 영아 밀착 보육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 현재 85개소가 참여하고 있음
  - 장애아반, 0세반, 1세반을 대상으로 영아반 우선 시행 후 순차적으로 유아반까지 연차적 시행하며 어린이집 유형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장애아반은 1:3  $\Rightarrow$  1:2, 만 0세반은 1:3  $\Rightarrow$  1:2, 만 1세반 1:5  $\Rightarrow$  1:4임.
  - 담임교사 1인당 보육료 지원단가를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에 지원함.
  - 시범사업의 성과로는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고, 특히 교사의 만족도가 높아 보육서비스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그 외 행정업무 소요 시간의 변화, 안전 관리, 부모와 소통, 아이의 건강 관리, 기관 운영에의 신뢰성 등임.

## 바. 진주시 구슬모듬어린이집 사업

- 진주시 원도심(중앙, 성북, 상봉, 천정동)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묶어 진주형 공유어린이집을 구성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로 이용률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2022년에 시작하여 4개소 7개반을 운영하여 장애반, 0세반은 1:3에서 1:2로, 만 3세반은 1:15에서 1:10으로 운영함.
  - 반별 보조교사 1인 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을 지원함.

## 4.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인식과 요구

### 가. 보육 현장에 대한 인식

#### □ 아이들과 부모들의 변화를 인식함

- 등원 시의 아이들의 모습과 부모들의 태도가 변화되었음; 아이들의 발달수준이 예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으며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많지만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마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훈육과 아이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혼동함.

#### □ 질 높은 보육 제공에 대한 의무감

- 아이 중심과 놀이 중심을 강조하면서 아이에 대한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고 아동 인권이 바탕이 되는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함.
- 아이를 중심으로 보육 과정을 이끌어 가지만,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들의 경험을 확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모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함.

### 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 인식

#### □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질 제고와 빈도 증가

-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개선은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빈도를 증가시킴.
- 아동과의 스킨십의 빈도, 눈맞춤 등의 빈도가 증가하며 교사와 부모와 아동 간의 애착에도 기여하고 아동의 놀이 형태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 □ 안전과 개별적 요구에의 부응

-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낮아진다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경계선상의 아이들을 보살피는데도 기여할 수 있음.
- 안전한 환경을 토대로 아이들 중심의 보육 과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임.
- 교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

### □ 보육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정책 수립 과정의 검토를 통한 재평가가 필요함.
-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효과적으로 정부 정책 홍보를 할 수 있는 주제이자 국정과제 46의 주요 과제로서 아동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임.

###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

- 지자체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또는 조정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음
-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에는 동의하나 연령대와 대상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었음; 0세와 3세에의 타당성 근거를 논의함.

### □ 시범사업의 지역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인식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지역과 대상 및 지원 내용에의 제안은 다양함.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은 보육환경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설비 등 공간, 학급 크기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함.
- 시범사업의 사전, 사후 효과를 볼 수 있는 지표의 추가가 필요함.
- 시범사업의 운영을 위한 시설 유형과 지원 항목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

## 라.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인식

### □ 원장과 교사의 만족도가 높음.

- 교사들의 만족도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점, 아이들과 밀도 있는 상호작용, 아이들에게 반응적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 부모들의 만족도와 공간 인식이 변화함.

- 부모들도 다른 어린이집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만족도가 높음.
- 공간이 좁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축소되면서 보육실이 쾌적해지고 상호작용이 원활해졌다고 함.

## 마.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모형 개발

□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논의함.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보육의 질 개선에 가장 중요하고 아동의 인권과 직결된다고 인식함
- 시범사업의 대상은 영아 중 0세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유아에서는 3세임.
-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현행 기준보다 낮은 0세는 2명, 1세는 4명, 2세는 6명, 3세는 10명, 4세 이상은 15명임을 제시함.
- 시범사업의 모형 중 1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정부지원에 상관없이 전국 평균 이상의 정원충족률을 만족하는 어린이집 300여 개소를 제안함.

## 5.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 가. 시범사업 모형개발의 기본 방향 및 쟁점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

- 저출생으로 인한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의 감소, 발달 지체 또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들의 증가 등의 보육 현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함: 영아는 기존보다 1명 감원, 유아는 기존보다 5명 감원하는 방안임.

〈표 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제안

| 구 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이상 |
|-----|----|----|----|-----|-------|
| 현행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 개선  | 2명 | 4명 | 6명 | 10명 | 15명   |

□ 시범사업을 위한 지원 방식

- 어린이집의 인가 연도와 일부 소규모 어린이집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와 교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면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아동의 감소나 추가 교사의 고용 문제를 가져

음; 정원충족률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기관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지자체의 시범사업은 두 가지의 접근을 시사함.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면서 추가반을 구성하느냐 아니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면서 반을 그대로 유지하느냐의 문제
  - 추가된 반의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느냐, 감소한 영유아의 수만큼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느냐의 문제

## 나. 시범사업 실시 추진 계획

### □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과 근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4개 권역 전국의 어린이집 대상 300개소를 대상(정부지원어린이집 150개소, 정부미지원어린이집 150개소) 대도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시, 군, 구 단위를 대상으로 함.
- 시범사업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평가제 B 등급 이상, 또는 평가인증 90점 이상, 최근 3개월간 정원충족률 평균 70% 이상이며 행정처분 진행 사항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함.
- 선정방식은 일반 공모로 진행하고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음.
- 비용지원은 2023년 기준 비용 지원방식(안)을 준용하되 반 운영비를 지원함.
- 시범사업의 전 과정의 모니터링을 위해 원장, 교사와 부모에게 사전과 사후 설문 및 평가를 실시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

## 다. 시범사업 모형과 추정 예산

### □ 시범사업은 향후 3년간에 걸쳐 모든 연령으로 확대를 계획하고자 함.

- 장애아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시범사업에서 가장 많았던 0세아와 현장에서 가장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요구가 많았던 3세반의 동시 추진하는 1안으로 제안함.
- 감소한 아동의 수 보육료 단가 상당 금액을 반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함.

- 예산은 반당 연령별 정원 개선 인원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지원으로 2022년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를 중심으로 산출함.

[그림 1] 모형개발 제안

| 1안                                                                                        | 2안                                                                                   | 3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0, 3세반</li><li>• 장애아반</li><li>• 두 연령 동시</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0세반</li><li>• 장애아반</li><li>• 영아 먼저</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3세반</li><li>• 장애아반</li><li>• 유아 먼저</li></ul> |

□ 시범사업 모형 1안과 예산 추정

- 만0세반 3반, 만3세반 1반, 장애반 1반을 개선함.
- 1안의 시범사업 1년 예산은 21,540,600,000원이 될 것임.

<표 2> 시범사업 모형 1안

| 현행 |      | 모형 내용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0세 | 1:3  | 1:2   | 1:2  | 1:3  |
| 1세 | 1:5  | 1:5   | 1:4  | 1:5  |
| 2세 | 1:7  | 1:7   | 1:7  | 1:6  |
| 3세 | 1:15 | 1:10  | 1:12 | 1:12 |
| 4세 | 1:20 | 1:20  | 1:15 | 1:15 |
| 5세 | 1:20 | 1:20  | 1:20 | 1:15 |

□ 시범사업 모형 2안과 예산 추정

- 만0세반 3반, 장애반 1반을 개선함
- 모형 2안의 시범사업 1년은 9,372,600,000원으로 추정됨.

<표 3> 시범사업 모형 2안

| 현행 |     | 모형 내용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0세 | 1:3 | 1:2   | 1:2 | 1:3 |
| 1세 | 1:5 | 1:5   | 1:4 | 1:5 |
| 2세 | 1:7 | 1:7   | 1:7 | 1:6 |

□ 시범사업 모형 3안과 예산 추정

- 만3세반 1반, 장애반 1반을 개선함
- 모형 3안의 1년 예산은 13,122,000,000원으로 추정됨.

〈표 4〉 시범사업 모형 3안

| 현행 |      | 모형 내용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3세 | 1:15 | <b>1:10</b> | 1:12        | 1:12        |
| 4세 | 1:20 | 1:20        | <b>1:15</b> | 1:15        |
| 5세 | 1:20 | 1:20        | 1:20        | <b>1:15</b> |

□ 시범사업 1년 예산 추정

- 현재 추정된 예산은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이 같은 비율 (150개소씩)로 구성한다는 전제이나 실제 시범사업 실시의 경우는 각 모형별로 정부지원시설 여부에 따라 소요예산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임.
- 사업추진비, 현장점검 비용, 홍보비 등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I

## 서론

-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 내용
- 03 연구 방법
- 04 용어 범위 및 제한점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국공립어린이집 40% 달성 등 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학부모들이 공공보육의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은 2021년 12월말 기준 33,246개소(보건복지부, 2021)로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영유아 수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도 가속화되고 있다. 영유아의 인구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수 감소와 폐원 증가, 정원 충족률 등의 변화로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린이집 내 안전, 건강, 아동학대 등 사건 사고로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보육교사 업무부담 완화 요구 등이 늘어나면서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으나 국제적인 수준에 부응하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보육서비스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이전의 연구와 조사(김은설, 이재희, 박은영, 김정숙, 2016; 이윤진, 이민희, 2017)에서 교사와 아동 간의 접촉점을 높여 보육의 질을 향상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에 대해 개선을 약속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흥미롭게도 일부 지자체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개별 어린이집의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 면적 기준, 필요 교사 수급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이에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여 각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시범사업 적절한 모형개발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시범사업의 비교를 통한 사업 내용, 지원기준, 및 지원 내용의 점검으로 향후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주요 준거의 파악이 중요하다.

이에 기존 시범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개발을 모색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이에 대한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준비함으로써 향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중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국내외 규정과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먼저 현재의 전반적인 보육 현황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살펴보고 국내외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제도와 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외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제도와 지침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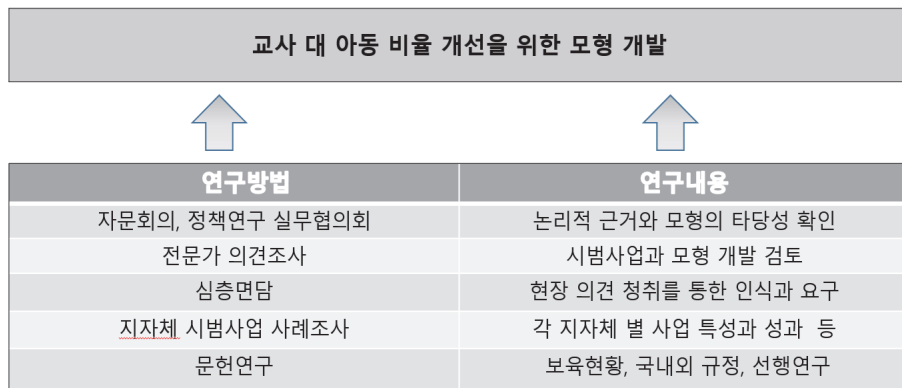
둘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 개발을 위해 이미 시행된 지자체 중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이나 축소 관련 사업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포함한 지자체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시범사업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 및 비교하였다. 특히, 시범사업의 목적과 내용, 선정 기준 및 성과 등을 알아보고 향후 시범사업 모형개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셋째,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육과 교육 전문가들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이슈들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지자체 시범사업을 수행한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의 전달체계와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사업의 청사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의 경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면담과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추출한 시사점을 기초로 관련

요구들을 파악하고 시범사업 모형개발의 주요 내용 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넷째, 앞서 진행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원장과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위한 지역 선정, 대상 등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필요한 주요 사항 등을 점검하여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도 추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림 I-1-1]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3. 연구 방법

#### 가. 문헌 연구

문헌연구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논리적 근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법과 제도 및 규정 등을 검토하고 보육사업 안내에서 제시하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어린이집 운영 관련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통계와 보육통계를 분석하고 보건복지부 내부 현황 자료를 통해 어린이집과 교직원의 10년간의 변화 및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변화 추이를 알아보았다.

## 나. 사례조사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서울과 경기 지역을 포함한 지자체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자체 담당자들과 면담 또는 줌 회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사업 계획 관련 내부자료와 보고서 등을 수합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한편 지자체 시범사업 담당자들과 면담하면서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1-1〉 사례조사 대상

| 구분 |              | 대상                                | 내용                      |
|----|--------------|-----------------------------------|-------------------------|
| 1  | 2022. 7. 20  | 노원구 여성가족과 공무원 2명                  | 시범사업 사례 공유              |
| 2  | 2022. 8. 4   | 부처 담당 과장, 사무관, 주무관 및 2개 지자체 담당자 등 |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 |
| 3  | 2022. 8. 5   | 부처 담당 과장, 사무관, 주무관 및 3개 지자체 담당자 등 |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 |
| 4  | 2022. 8. 16  | 광양시 교육보육과 공무원 2명                  | 시범사업 사례 공유              |
| 5  | 2022. 10. 20 |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원 1명                 | 지자체 시범사업 성과 논의          |

〈표 I-1-2〉 사례조사 내용

| 구분       | 조사 내용                       |
|----------|-----------------------------|
| 지역 특성    | 지역의 특성, 지역 내 어린이집 유형과 개소수 등 |
| 사업 시작 계기 |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관련 사업 추진 목적   |
| 사업 개요    | 사업의 내용, 지원 내용과 단가, 예산 편성 등  |
| 개선 사항    | 사업 진행 상 애로사항 등              |

## 다. 심층면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관련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운영 어려움,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실행가능하고 효율적인 모형을 모색을 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후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면담내용은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은 대상별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주요 질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1-3〉 심층면담 대상

| 구분 |              | 대상                                     | 내용             |
|----|--------------|----------------------------------------|----------------|
| 1  | 2022. 7. 20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원장 2인<br>(국공립, 가정)     | 시범사업 참여 경험     |
| 2  | 2022. 8. 16  | 어린이집 원장 3인<br>(사회복지법인, 가정, 민간)         | 시범사업 참여 경험     |
| 3  | 2022. 8. 17  | 어린이집 교사 3인<br>(국공립, 민간, 가정)            | 시범사업 참여 경험     |
| 4  | 2022. 8. 17  | 어린이집 원장 1인                             | 시범사업 어린이집 방문   |
| 5  | 2022. 9. 20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원장 4인<br>(국공립, 가정, 민간) | 시범사업 미참여 의견 청취 |
| 6  | 2022. 9. 21  | 어린이집 원장 2인(국공립)                        | 시범사업 미참여 의견 청취 |
| 7  | "            | 어린이집 교사 2인(국공립)                        | 시범사업 미참여 의견 청취 |
| 8  | 2022. 10. 20 | 어린이집 원장 1인과 교사 2인(가정)                  | 시범사업 미참여 의견 청취 |

〈표 I-1-4〉 심층면담 내용

| 구분       | 조사 내용                       |                       |
|----------|-----------------------------|-----------------------|
| 지역 특성    | 지역의 특성, 지역 내 어린이집 유형과 개소수 등 |                       |
| 보육 경험    | 전반적 보육 경력, 현 어린이집 경력        |                       |
| 사업 참여 여부 | 참여                          | 사업의 내용과 단가, 예산 편성 등   |
|          | 미참여                         | 사업 내용 인지 여부, 미참여 이유   |
| 개선 사항    | 참여                          | 사업 진행 상 애로사항과 개선 사항   |
|          | 미참여                         | 사업에 대한 보완 사항 또는 요구 사항 |

## 라. 전문가 의견 조사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형 개발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한 이유, 개선 필요 연령, 시범사업 필요성 여부, 시범사업 안의 내용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내용은 전문가 12명에게 11월 4일에서 10일까지 이메일로 전달하여 수집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교수 10명과 현장 전문가 2명이었다.

〈표 I-1-5〉 전문가 의견 조사

| 구분                  | 조사 내용                                              |
|---------------------|----------------------------------------------------|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관련 인식 | 필요성, 대상 연령, 대상 연령 선택 이유, 교사 1인당 아동 수와 집단 크기        |
| 시범사업 필요성 인식         | 필요 여부와 이유                                          |
| 시범사업 모형 인식          | 3가지 안 중 선택과 선택 이유                                  |
| 시범사업의 운영 방안         | 시범사업 실시 지역, 어린이집 유형과 개수, 어린이집 개수에 대한 이유, 효율적 운영 방안 |

#### 마.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관련 이론적 근거를 공고히 하며 현장 전문가들과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경험과 요구를 토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시범사업에 적절한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현가능한 모형개발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논의하여 시범사업(안)과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였다.

〈표 I-1-6〉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구분 | 대상                                                         | 내용                                |
|----|------------------------------------------------------------|-----------------------------------|
| 1  | 2022. 7. 4<br>부처 담당 사무관, 주무관 및 보육진흥원 국장, 지자체 시범사업 담당자 4명 등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 논의  |
| 2  | 2022. 8. 25<br>부처 담당 과장, 사무관, 주무관                          | 과제 진도 관련 논의                       |
| 3  | 2022. 9. 14<br>아동학과 교수 1인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 및 근거 논의        |
| 4  | 2022. 9. 15<br>아동심리학과 교수 1인, 유아교육과 1인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논리적 근거와 시범사업 모형 논의 |
| 5  | 2022. 9. 27<br>아동보육과, 유아교육과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논리적 근거와 시범사업 모형 논의 |

## 4. 용어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모형개발을 위한 것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은 본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



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안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뜻한다. 한편 시범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 또는 현행 교사 1인당 아동 배치 기준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 가능한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유형과 개수에 따라 예산은 변동 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리고자 한다. 현재는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 시설로 묶어서 한 어린이집에 만0세반 3반, 만3세반 1반, 장애아반 1반을 기준으로 월별 예산과 1년 예산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시범사업 예산은 반의 구성,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의 구성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 II

## 연구의 배경

- 01 전반적인 보육 환경
- 02 국내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제도 및 현황
- 03 국외 교사 대 아동 비율 현황
- 04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중요성
- 05 선행연구
- 06 소결



## II. 연구의 배경

본 장은 연구의 배경으로서 전반적인 보육 환경을 정리해보고 국내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제도와 규정, 국외의 교사 대 아동 비율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이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전반적인 보육 환경

2021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은 33,246개소로서 2010년에 비해 거의 5,000여 개(26%)정도 감소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증가 추세이나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등 그 외 어린이집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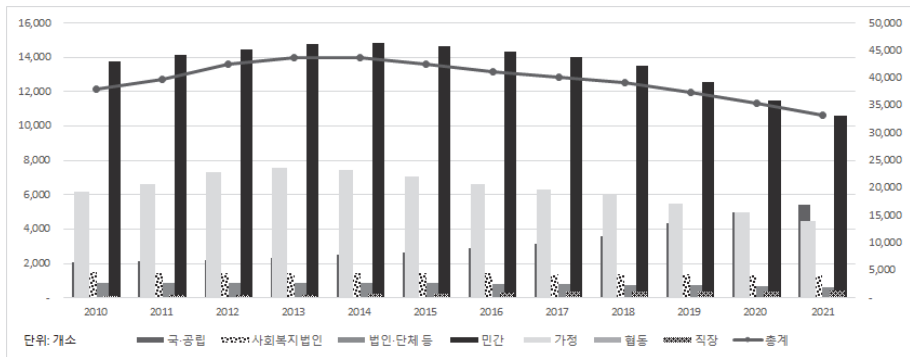
〈표 II-1-1〉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 총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2010 | 38,021 | 2,034 | 1,468  | 888     | 13,789 | 19,367 | 74  | 401   |
| 2011 | 39,842 | 2,116 | 1,462  | 870     | 14,134 | 20,722 | 89  | 449   |
| 2012 | 42,527 | 2,203 | 1,444  | 869     | 14,440 | 22,935 | 113 | 523   |
| 2013 | 43,770 | 2,332 | 1,439  | 868     | 14,751 | 23,632 | 129 | 619   |
| 2014 | 43,742 | 2,489 | 1,420  | 852     | 14,822 | 23,318 | 149 | 692   |
| 2015 | 42,517 | 2,629 | 1,414  | 834     | 14,626 | 22,074 | 155 | 785   |
| 2016 | 41,084 | 2,859 | 1,402  | 804     | 14,316 | 20,598 | 157 | 948   |
| 2017 | 40,238 | 3,157 | 1,392  | 771     | 14,045 | 19,656 | 164 | 1,053 |
| 2018 | 39,171 | 3,602 | 1,377  | 748     | 13,518 | 18,651 | 164 | 1,111 |
| 2019 | 37,371 | 4,324 | 1,343  | 707     | 12,568 | 17,117 | 159 | 1,153 |
| 2020 | 35,352 | 4,958 | 1,316  | 671     | 11,510 | 15,529 | 152 | 1,216 |
| 2021 | 33,246 | 5,437 | 1,285  | 640     | 10,603 | 13,891 | 142 | 1,248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 2022. 7. 19. 인출

[그림 II-1-1]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 2022. 7. 19. 인출

<표 II-1-2>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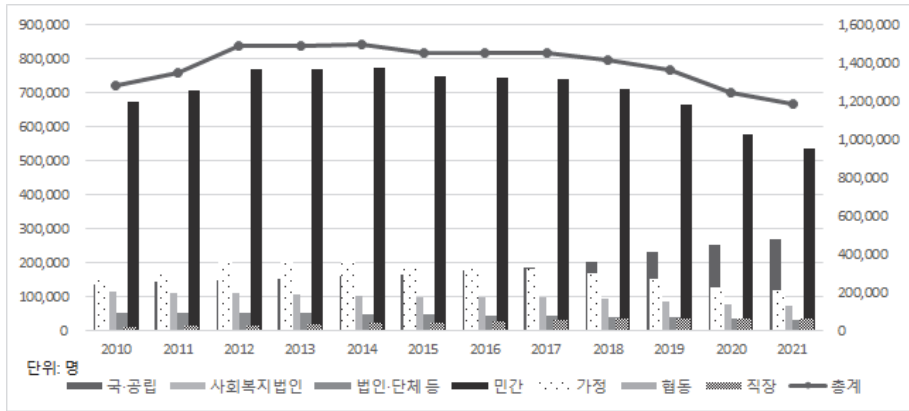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 총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2010 | 1,279,910 | 137,604 | 114,054 | 51,126  | 671,891 | 281,436 | 1898  | 21,901 |
| 2011 | 1,348,729 | 143,035 | 112,688 | 50,676  | 706,647 | 308,410 | 2,286 | 24,987 |
| 2012 | 1,487,361 | 149,677 | 113,049 | 51,914  | 768,256 | 371,671 | 2,913 | 29,881 |
| 2013 | 1,486,980 | 154,465 | 108,834 | 51,684  | 770,179 | 364,113 | 3,226 | 34,479 |
| 2014 | 1,496,671 | 159,241 | 104,552 | 49,175  | 775,414 | 365,250 | 3,774 | 39,265 |
| 2015 | 1,452,813 | 165,743 | 99,715  | 46,858  | 747,598 | 344,007 | 4,127 | 44,765 |
| 2016 | 1,451,215 | 175,929 | 99,113  | 45,374  | 745,663 | 328,594 | 4,240 | 52,302 |
| 2017 | 1,450,243 | 186,916 | 96,794  | 43,404  | 738,559 | 321,608 | 4,508 | 58,454 |
| 2018 | 1,415,742 | 200,783 | 92,787  | 41,298  | 711,209 | 302,674 | 4,360 | 62,631 |
| 2019 | 1,365,085 | 232,123 | 86,775  | 38,538  | 664,106 | 273,399 | 4,121 | 66,023 |
| 2020 | 1,244,396 | 253,251 | 78,322  | 34,066  | 578,196 | 230,444 | 3,716 | 66,401 |
| 2021 | 1,184,716 | 268,967 | 72,085  | 30,998  | 535,428 | 208,842 | 3,465 | 64,931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 2022. 7. 19. 인출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 아동을 살펴보면, 2010년 1,279,910명이던 영유아가 현재 1,184,716명으로 7.5%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아동은 증가세에 있다.

[그림 II-1-2]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 2022. 7. 19. 인출

〈표 II-1-3〉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교직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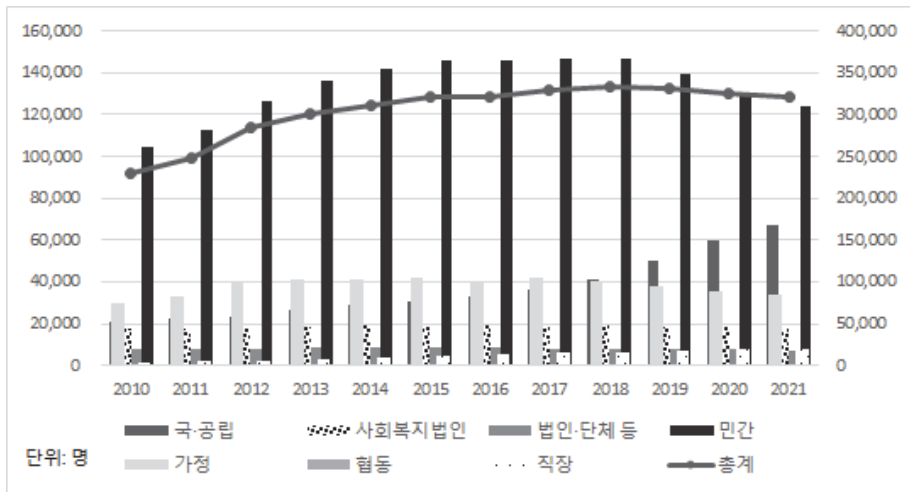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 총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2010 | 229,084 | 20,980 | 17,368 | 7,708   | 104,531 | 73,895  | 398   | 4,204  |
| 2011 | 248,635 | 22,229 | 17,491 | 7,724   | 112,779 | 82,911  | 485   | 5,016  |
| 2012 | 284,237 | 23,725 | 18,011 | 8,094   | 126,239 | 101,273 | 614   | 6,281  |
| 2013 | 301,719 | 26,750 | 18,765 | 8,703   | 136,180 | 102,731 | 730   | 7,860  |
| 2014 | 311,817 | 28,977 | 19,045 | 8,749   | 141,977 | 102,947 | 856   | 9,266  |
| 2015 | 321,067 | 30,823 | 18,933 | 8,637   | 145,724 | 105,124 | 970   | 10,856 |
| 2016 | 321,766 | 32,937 | 18,920 | 8,436   | 145,609 | 101,891 | 979   | 12,994 |
| 2017 | 330,217 | 36,098 | 18,845 | 8,254   | 146,920 | 104,176 | 1,066 | 14,858 |
| 2018 | 333,420 | 41,122 | 19,139 | 8,259   | 146,386 | 100,987 | 1,051 | 16,476 |
| 2019 | 331,444 | 50,436 | 18,835 | 8,062   | 139,344 | 95,763  | 1,043 | 17,961 |
| 2020 | 325,669 | 59,974 | 18,313 | 7,695   | 129,306 | 89,552  | 1,030 | 19,799 |
| 2021 | 321,116 | 67,191 | 17,673 | 7,351   | 123,655 | 83,758  | 1,009 | 20,479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 2022. 7. 19. 인출

한편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교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은 2010년에 비해서 증가하다가 주춤한 양상을 보인다. 앞서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 현황과 마찬가지로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교직원은 증가세에 있다.

[그림 II-1-3]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교직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 2022. 7. 19. 인출

앞서 기술한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 및 보육 교직원 현황을 토대로 어린이집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체 어린이집 33,246개소 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이 13,891개소, 41.8%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이 민간어린이집 31.9%, 그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16.4%로 나타났다. 아동 수에 있어서는 정원과 현원 모두 민간어린이집의 아동의 수가 많았다. 어린이집 이용률에 있어서는 전체 이용률이 76.1%인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82.5%로 가장 높고, 다음이 가정어린이집 80.4%, 민간어린이집 74.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교직원 수에 있어서는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높은 38.5%, 가정어린이집 비중이 26.1%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20.9%로 집계되었다.

〈표 II-1-4〉 어린이집 일반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어린이집 수 | 개소   | 33,246    | 5,437   | 1,285   | 640     | 10,603  | 13,891  | 142   | 1,248  |
|        | 비중   | 100.0     | 16.4    | 3.9     | 1.9     | 31.9    | 41.8    | 0.4   | 3.8    |
| 아동수    | 정원   | 1,557,496 | 326,210 | 113,294 | 46,084  | 715,671 | 259,901 | 4,636 | 91,700 |
|        | 정원비중 | 100.0     | 20.9    | 7.3     | 3.0     | 46.0    | 16.7    | 0.3   | 5.9    |
|        | 현원   | 1,184,716 | 268,967 | 72,085  | 30,998  | 535,428 | 208,842 | 3,465 | 64,931 |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 현원비중 | 100.0   | 22.7   | 6.1    | 2.6     | 45.2    | 17.6   | 0.3   | 5.5    |
|            | 이용률  | 76.1    | 82.5   | 63.6   | 67.3    | 74.8    | 80.4   | 74.7  | 70.8   |
| 보육<br>교직원수 | 인원   | 321,116 | 67,191 | 17,673 | 7,351   | 123,655 | 83,758 | 1,009 | 20,479 |
|            | 비중   | 100.0   | 20.9   | 5.5    | 2.3     | 38.5    | 26.1   | 0.3   | 6.4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 2022. 7. 19. 인출

다음은 보육통계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 수,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아동 수는 35.6명으로 집계되었으나 협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 수는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아동 수가 각각 56.1명, 52명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민간어린이집으로 50.5명이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평균 3.7명이었고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에서 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은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산출해보았는데,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평균은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보다 높게 나타난 5.0명이었다.

〈표 II-1-5〉 어린이집 1개당 아동 수,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

단위: %

| 구분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어린이집 1개당<br>아동 수  | 35.6 | 49.5 | 56.1   | 48.4    | 50.5 | 15.0 | 24.4 | 52.0 |
| 보육교직원 1인당<br>아동 수 | 3.7  | 4.0  | 4.1    | 4.2     | 4.3  | 2.5  | 3.4  | 3.2  |
| 보육교사 1인당<br>아동 수  | 5.0  | 1.1  | 0.3    | 0.1     | 2.3  | 0.9  | 0.0  | 0.3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 2022. 7. 19. 인출

정원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과 현원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알아보았다. 먼저 정원 규모에 있어서는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이 14,648개소로 전체의 약 4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008개소인 21~39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약 15.1%, 그

다음이 50~80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14.7%였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정  
원 50~80명 규모가 가장 많았고 민간어린이집은 21~39명 규모가 가장 많았다.

〈표 II-1-6〉 정원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            | 계      | 20명<br>이하 | 21~<br>39명 | 40~<br>49명 | 50~<br>80명 | 81~<br>99명 | 100~<br>160명 | 161~<br>200명 | 201~<br>240명 | 241~<br>300명 | 300명<br>초과 |
|--------|------------|--------|-----------|------------|------------|------------|------------|--------------|--------------|--------------|--------------|------------|
| 합<br>계 | 소계         | 33,246 | 14,648    | 5,008      | 3,300      | 4,892      | 2,807      | 1,879        | 404          | 159          | 141          | 8          |
|        | 국공립        | 5,437  | 554       | 992        | 918        | 1,818      | 777        | 326          | 39           | 9            | 4            | 0          |
|        | 사회복지<br>법인 | 1,285  | 3         | 96         | 153        | 355        | 368        | 242          | 46           | 13           | 8            | 1          |
|        | 법인<br>단체 등 | 640    | 9         | 114        | 110        | 216        | 104        | 62           | 19           | 3            | 2            | 1          |
|        | 민간         | 10,603 | 8         | 3,585      | 1,802      | 2,187      | 1,422      | 1,128        | 259          | 113          | 93           | 6          |
|        | 가정         | 13,891 | 13,89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협동         | 142    | 72        | 43         | 15         | 7          | 2          | 0            | 0            | 0            | 0            | 0          |
|        | 직장         | 1,248  | 111       | 178        | 302        | 309        | 134        | 118          | 41           | 21           | 34           | 0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 2022. 7. 19. 인출

한편, 현원 규모별로 어린이집을 보았을 때도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이 16,880  
개소로 5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1~39명 규모의 어린이집으로서 6,331  
개소이고 19.0%였다. 그리고 50~80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그 다음으로 13.6%였  
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원 50~80명 규모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1~39명도  
상당한 비중이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은 21~39명 규모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80명 규모였다.

〈표 II-1-7〉 현원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            | 계      | 20명<br>이하 | 21~<br>39명 | 40~<br>49명 | 50~<br>80명 | 81~<br>99명 | 100~<br>160명 | 161~<br>200명 | 201~<br>240명 | 241~<br>300명 | 300명<br>초과 |
|--------|------------|--------|-----------|------------|------------|------------|------------|--------------|--------------|--------------|--------------|------------|
| 합<br>계 | 소계         | 33,246 | 16,880    | 6,331      | 2,543      | 4,509      | 1,475      | 1,186        | 196          | 70           | 54           | 2          |
|        | 국공립        | 5,437  | 803       | 1,523      | 810        | 1,618      | 436        | 225          | 16           | 5            | 1            | 0          |
|        | 사회복지<br>법인 | 1,285  | 151       | 318        | 166        | 393        | 148        | 91           | 12           | 4            | 2            | 0          |
|        | 법인<br>단체 등 | 640    | 100       | 225        | 86         | 135        | 47         | 40           | 6            | 1            | 0            | 0          |
|        | 민간         | 10,603 | 1,554     | 3,854      | 1,347      | 2,121      | 763        | 745          | 139          | 46           | 32           | 0          |
|        | 가정         | 13,891 | 13,891    | 0          | 0          | 0          | 0          | 0            | 0            | 0            | 0            | 2          |
|        | 협동         | 142    | 84        | 48         | 4          | 2          | 2          | 2            | 0            | 0            | 0            | 0          |
|        | 직장         | 1,248  | 297       | 363        | 130        | 240        | 79         | 83           | 23           | 14           | 19           | 0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 2022. 7. 19. 인출

〈표 II-1-8〉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         | 총계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br>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전<br>국 | 총계      | 1,184,716 | 268,967 | 72,085     | 30,998     | 535,428 | 208,842 | 142 | 64,931 |
|        | 만 0세    | 119,621   | 16,924  | 3,300      | 1,251      | 36,657  | 58,751  | 86  | 2,652  |
|        | 만 1세    | 252,542   | 50,600  | 10,259     | 4,017      | 94,521  | 80,327  | 433 | 12,385 |
|        | 만 2세    | 301,914   | 65,259  | 15,313     | 6,171      | 131,567 | 68,293  | 723 | 14,588 |
|        | 만 3세    | 190,393   | 50,339  | 14,972     | 6,562      | 103,331 | 856     | 751 | 13,582 |
|        | 만 4세    | 161,020   | 43,182  | 13,532     | 6,188      | 85,844  | 327     | 711 | 11,236 |
|        | 만 5세    | 154,363   | 41,643  | 12,865     | 6,115      | 82,354  | 260     | 736 | 10,390 |
|        | 만 6세 이상 | 4,863     | 1,020   | 1,844      | 694        | 1,154   | 28      | 25  | 98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 2022. 7. 19. 인출

연령별 보육 아동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수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만 2세아와 만 1세아가 가장 많아 보였다. 만 0세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보육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민간어린이집이었다. 만 1세의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순이었다. 만 2세의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정어린이집의 2배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만 2세 보육 정도도 많은 편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이 보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항목            | 수       | 소계      | 계        |
|------|---------------|---------|---------|----------|
| 원장   | 20인 이하        | 14,596  | 33,087  | 321,1116 |
|      | 40인 미만        | 4,967   |         |          |
|      | 40인 이상        | 13,534  |         |          |
| 보육교사 | 담임교사          | 171.102 | 236,085 |          |
|      | 방과 후 보육교사     | 235     |         |          |
|      | 24시간 보육교사     | 147     |         |          |
|      | 야간연장교사(월급여형)  | 4,598   |         |          |
|      | 야간연장교사(단시간형)  | 126     |         |          |
|      | 보조교사          | 30,458  |         |          |
|      | 보조교사(30시간 이상) | 1,974   |         |          |

| 구분   | 항목            | 수      | 소계     | 계 |
|------|---------------|--------|--------|---|
|      | 보조교사(30시간 미만) | 7,076  |        |   |
|      | 대체교직원         | 20     |        |   |
|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 18,163 |        |   |
|      | 대체교사          | 2,186  |        |   |
| 간호사  | 간호사           | 419    | 985    |   |
|      | 간호조무사         | 566    |        |   |
| 영양사  | -             | 1,040  | 1,040  |   |
| 조리원  | -             | 29,575 | 29,575 |   |
| 기타   | -             | 18,660 | 18,660 |   |
| 특수교사 | -             | 1,684  | 1,684  |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 2022. 7. 19. 인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앞서 현원 규모와 보육아동 수와 관련하여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40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이 많았다. 보육교사의 경우는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가 많았고 연장보육반 전담교사의 수도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는 100인 이상의 급식인원 수에 따라 고용하고 조리원은 40인 이상의 경우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영양사와 조리원은 전체 어린이집의 고용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었다.

〈표 II-1-10〉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 계       | 원장     | 보육교사    | 간호사 | 영양사   | 조리원    | 기타     | 특수<br>교사 |
|-----------|------------|---------|--------|---------|-----|-------|--------|--------|----------|
| 계<br>(전국) | 소계         | 321,116 | 33,087 | 236,085 | 985 | 1,040 | 29,575 | 18,660 | 1,684    |
|           | 국공립        | 67,191  | 5,373  | 51,071  | 204 | 176   | 6,489  | 3,041  | 837      |
|           | 사회복지<br>법인 | 17,673  | 1,282  | 11,963  | 68  | 73    | 1,595  | 2,076  | 616      |
|           | 법인<br>단체 등 | 7,351   | 637    | 5,037   | 46  | 39    | 737    | 796    | 59       |
|           | 민간         | 123,655 | 10,566 | 92,908  | 454 | 528   | 10,690 | 8,342  | 167      |
|           | 가정         | 83,758  | 13,849 | 58,800  | 0   | 0     | 7,791  | 3,317  | 1        |
|           | 협동         | 1,009   | 143    | 686     | 1   | 0     | 134    | 44     | 1        |
|           | 직장         | 20,479  | 1,237  | 15,620  | 121 | 224   | 2,139  | 1,044  | 3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 2022. 7. 19. 인출

한편,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보육교직원의 수가 가장 많은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서 123,655명으로 전체 보육교직원의 38.5% 정도였다. 다음은 가정어린이집으로 83,758명(26.1%), 국공립어린이집 67,191명(20.9%) 순이었다. 보육교사의 수도 전체 보육교직원 수의 비중과 유사한 것으로 보였으며 가정과 협동어린이집의 간호사와 영양사 및 특수교사의 배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 2. 국내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제도 및 현황<sup>1)</sup>

### 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 1) 일반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원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교직원 이외에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 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은 1명으로 제한한다.

〈표 II-2-1〉 보육교사 배치기준

| 구분   | 배치기준                                                                                                                                                                                                               | 자격기준                                                                                                                                                             | 비고   |
|------|--------------------------------------------------------------------------------------------------------------------------------------------------------------------------------------------------------------------|------------------------------------------------------------------------------------------------------------------------------------------------------------------|------|
| 보육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li> <li>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li> <li>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li> <li>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li> <li>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li> </ul> | 영유아보육법<br>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현원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학아동 ⇒ 20인당 1인</li> <li>장애아 3인당 1인</li> <li>연장반 만3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li> <li>연장반 만3세 이상 ⇒ 유아 15인당 1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li> <li>※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li> <li>※ 연장반의 만1세 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li> </ul> |      |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사 배치기준 내용 중 보육교사 부분만 발췌하여 재구성함. p. 210

1)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내용 중 보육교사의 배치기준 및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발췌·정리함.

〈표 II-2-2〉 교사 대 아동 비율 일반기준 적용예시

| 구분    | 교사 1인당 아동 수 |                |
|-------|-------------|----------------|
|       | 일반기준        |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 예외 |
| 0세    | 3명          | 최대 6명          |
| 1세    | 5명          | 최대 10명         |
| 2세    | 7명          | 최대 14명         |
| 3세    | 15명         | 최대 30명         |
| 4세 이상 | 20명         | 최대 40명         |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p. 21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 시간(낮잠시간 등) 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아래의 배치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담임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예외 적용한 경우에도 성인 1인당 아동 수는 가급적 일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에 순환 근무하여 영유아를 관찰·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인정

「영유아보육법」은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sup>2)</sup>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직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표 II-2-3〉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 적용예시

| 구분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이상  |
|----------|------|----------------------|-------|-------|--------|--------|
| 원칙       |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 특례 인정 범위 | 기본보육 | 4명 이내                | 7명 이내 | 9명 이내 | 19명 이내 | 24명 이내 |
|          | 연장보육 | 7명 이내(0세 포함 시 5명 이내) |       |       | 20명 이내 |        |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p. 212

2)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범위는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3.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함.

특례인정 범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 원칙의 예외)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특례인정 조건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이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인정 범위를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례인정 조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인정 세부절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계획을 확정한다. 그리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의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도록 하였다.

〈표 II-2-4〉 유예대상과 기간

| 구분   | 내용                                                                                    |
|------|---------------------------------------------------------------------------------------|
| 유예대상 |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
| 유예기간 | 반편성(3월) 이후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최대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반편성 이전(1월~2월)에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당해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p. 213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시·도지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 인정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승인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특례 인정 범위 및 지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만일, 농어촌특례를 인정받던 지역이 행정구역 변경(읍→동으로 변경) 등으로 인해 농어촌 특례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특례인정 제외

에 대한 유예가 요구되면 반편성 등이 확정된 년도 중 특례인정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결정하도록 한다.

### 3)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에 관한 일반원칙은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sup>3)</sup>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특례인정 기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대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인정 세부절차와 같이 원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 1) 연령별 반편성

연령별 반편성 기준은 동년도 출생아<sup>4)</sup>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 2세 미만 영아반, 만 2세 영아반과 만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며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3)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p. 213. 코로나 19 관련 한시 특례로서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료 시기는 별도 안내할 예정임. 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

4) 동년도 출생아: 동년도 1. 1.~동년도 12. 31.출생아



〈표 II-2-5〉연령별 반편성 출생일 기준

|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
| 만 0세반 | '21. 1. 1. 이후 출생          |
| 만 1세반 | '20. 1. 1. ~ '20. 12. 31. |
| 만 2세반 | '19. 1. 1. ~ '19. 12. 31. |
| 만 3세반 | '18. 1. 1. ~ '18. 12. 31. |
| 만 4세반 | '17. 1. 1. ~ '17. 12. 31. |
| 만 5세반 | '16. 1. 1. ~ '16. 12. 31. |

주: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p. 63

한편, 연령별 반편성 시 반별 정원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은 아래와 같다. 정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해야 한다.

〈표 II-2-6〉연령별 반편성 정원 기준

단위: 명

| 반별 정원기준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
| 원칙      | 3    | 5    | 7    | 15   | 20      |

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p. 64

## 2) 상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영유아가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 연령반<sup>5)</sup>에 편성 허용할 수 있다. 만 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 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 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5를 넘지 못함)하다.

5) 상위 연령반: 전년도 1. 1.~전년도 12. 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 3) 하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한편,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15. 1. 1.~’15. 12. 31.)은 만 5세아 반으로 편성 가능하며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 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 반 희망 아동이 있는 경우 하위 연령반<sup>6)</sup>에 편성을 허용할 수 있다.

### 4) 연령혼합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한다. 단, 기관보육료 지원시설은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 2세와 만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 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다.

〈표 II-2-7〉 연령혼합 반편성 정원 기준

(단위: 명)

| 혼합반 운영     | 만 0세와<br>만 1세 | 만 1세와<br>만 2세 | 만 0세와<br>만 2세 | 만 2세 이하와<br>만 3세 이상 | 만 3세와<br>만 4세 이상 |
|------------|---------------|---------------|---------------|---------------------|------------------|
| 원칙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 교사 대 아동 비율 | 1:3           | 1:5           | -             | -                   | 1:15             |

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022년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정운영 시행지침에 따름. 다만, 농촌지역 현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혼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p. 67

### 5)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

6) 하위 연령반: 익년도 1.1.~익년도 12.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다.

〈표 II-2-8〉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단위: 명

| 반별 정원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
| 원칙         | 3    | 5    | 7    | 15   | 20      |
| 탄력편성 가능 인원 | -    | 1    | 2    | 3    | 3       |

주: 1)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2) 만 1세반 2개, 만 2세반 1개인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아동 10명 모두가 만 2세반으로 승급 시 반별 정원을 3명 초과. 이 경우 만 2세반 탄력편성 가능인원인 2명까지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p. 67

또한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한다.

## 6) 연장보육 반편성

연장반의 편성은 연령별 또는 연령 혼합으로 편성(연령혼합 반편성 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각각의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한다. 그리고 기본보육 시간에 상위 연령반 또는 하위 연령반으로 편성된 아동의 연령은 기본보육 시간에 편성된 반의 연령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연장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제1호 나목8)에 따라 영아반의 경우 5명, 유아반의 경우 15명, 장애아 포함 시 3명을 원칙으로 한다. 즉, 0세반 아동으로만 구성된 반은 3명이 원칙이며, 탄력편성이 불가하고

0세반 아동이 포함된 영아반은 1개 반에 한해 3명까지 가능하며, 탄력편성은 2명까지 가능, 그 외는 다른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5명 원칙이며 탄력편성은 2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연중 장애아·0세반 아동의 퇴소·반이동 등으로 해당 반이 장애

아·0세반 아동을 포함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2개월 내에 영아반은 5명, 유아반은 15명으로 새롭게 반 구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연장보육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아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표 II-2-9〉 연장보육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단위: 명

| 반별 정원      | 영아반 | 유아반 | 장애아 포함<br>또는 0세반 |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 |     |
|------------|-----|-----|------------------|---------------|-----|
|            |     |     |                  | 1개반           | 그 외 |
| 원칙         | 5   | 15  | 3                | 3             | 5   |
| 탄력편성 가능 인원 | 2   | 5   | 0                | 2             | 2   |

주: 1)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은 1개 어린이집당 1개반에 한해 정원 3명 가능  
2) 탄력편성 아동은 시스템 상 연장반에 등록하지 않으며, 보육일지를 통해 관리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p.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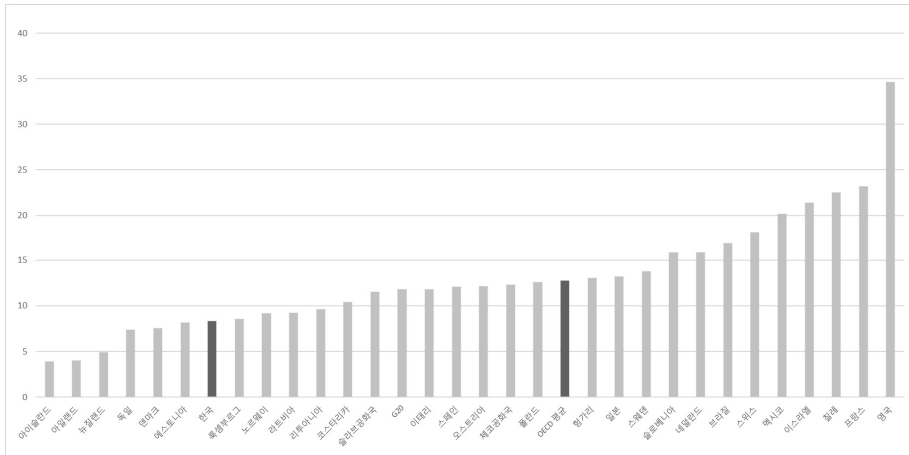
### 3. 국외 교사 대 아동 비율 현황

앞서 국내 교사 대 아동 비율 현황 관련 법 기준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국외 교사 대 아동 비율 현황을 살펴보고 동일성과 차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가. OECD 국가

OECD 회원국의 경우 ECEC 서비스와 교직원의 질 모니터링과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수 자료를 확보하여 공유하고 있다. 「Education at a glance」는 가장 널리 알려진 교육통계로,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2020년 자료에 의하면 회원국의 평균은 교사 1명당 유아 12.7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브라질, 칠레, 프랑스 및 이스라엘 등에서는 20명 이상인 반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및 아이슬란드 등은 10명 미만이다. 한편 최소 비율은 아일랜드(3.97명), 최대 비율은 영국(34.6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22). 보조교사 및 보조인력을 제외한 정교사 기준의 수치인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8명으로, 2017년 13.3명에 비해 급격하게 낮아졌는데(OECD, 2019), 이는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아수로 인해 과소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3-1] OECD 국가의 ECEC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수 (2020)



자료: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student-teacher ratio and average class size.

출처: OECD. (2022). Students per teaching staff (indicator). doi: 10.1787/3df7c0a6-en. <https://data.oecd.org/teachers/students-per-teaching-staff.htm>

## 나. 유럽연합 국가

유럽연합 국가에서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서 ECEC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규정은 다음의 <표 II-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국가의 교사에 대한 교육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8/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사를 포함한 성인 1인당 최대 아동수를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교사에 해당하는 core practitioner의 배치 기준은 유아의 경우 적게는 노르웨이가 6명, 아일랜드와 헝가리와 같이 8명인 경우도 있으나, 20명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보조인력 등 성인 대 유아 비율은 주교사 대 유아 비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도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아에 대한 교사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0세의 경우 교사 1명 또는 성인 1명이 담당하는 최대 인원이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이며, 2세는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와 같이 성인 1명이 담당하는 최대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국가 또한 상당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 별 차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1〉 유럽연합 국가의 교사/성인 대 아동 비율 (2018/2019)

단위: 세, 명

| 국가명        | 0   |      | 1   |      | 2   |      | 3     |       | 4     |       | 5     |       |
|------------|-----|------|-----|------|-----|------|-------|-------|-------|-------|-------|-------|
|            | sm  | cp   | sm  | cp   | sm  | cp   | sm    | cp    | sm    | cp    | sm    | cp    |
| 벨기에(불어)    | 7   | 7    | 7   | 7    | 7   | 7    | 20    | 20    | 20    | 20    | 20    | 20    |
| 벨기에(독일어)   | 6   | 6    | 6   | 6    | 6   | 6    | 10    | 19    | 10    | 19    | 10    | 19    |
| 벨기에(네덜란드어) | 9   | 9    | 9   | 9    | 9   | 9    | ●     | ●     | ●     | ●     | ●     | ●     |
| 불가리아       | 9   | 9    | 9   | 9    | 9   | 9    | 23    | 23    | 23    | 23    | 23    | 23    |
| 체코         | ○   | ○    | 8   | 8    | 12  | 12   | 24    | 24    | 24    | 24    | 24    | 24    |
| 덴마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독일         | 4-8 | 4-8  | 4-8 | 4-8  | 4-8 | 4-8  | 9-20  | 9-20  | 9-20  | 9-20  | 9-20  | 9-20  |
| 에스토니아      | ○   | ○    | 8   | 16   | 8   | 16   | 12    | 24    | 12    | 24    | 12    | 24    |
| 아일랜드       | 3   | 3    | 5   | 5    | 6   | 6    | 8     | 8     | 8     | 8     | 8     | 8     |
| 그리스        | 4   | 6    | 4   | 6    | 4   | 6    | 13    | 25    | 25    | 25    | 25    | 25    |
| 스페인        | 8   | 8    | 13  | 13   | 18  | 18   | 25    | 25    | 25    | 25    | 25    | 25    |
| 프랑스        | 5   | ●    | 5   | ●    | 8   | ●    | ●     | ●     | ●     | ●     | ●     | ●     |
| 크로아티아      | 5   | 5    | 8   | 8    | 14  | 14   | 18    | 18    | 20    | 20    | 23    | 23    |
| 이탈리아       | ●   | ●    | ●   | ●    | ●   | ●    | 26    | 26    | 26    | 26    | 26    | 26    |
| 키프로스       | 6   | 6    | 6   | 6    | 16  | 16   | 25    | 25    | 25    | 25    | 25    | 25    |
| 라트비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투아니아      | 6   | 6    | 10  | 10   | 15  | 15   | 20    | 20    | 20    | 20    | 20    | 20    |
| 룩셈부르크      | 6   | 6    | 6   | 6    | 8   | 8    | 10    | 20    | 24    | 24    | 24    | 24    |
| 헝가리        | 4   | 6    | 4   | 6    | 4   | 6    | 8     | 12    | 8     | 12    | 8     | 12    |
| 몰타         | 3   | 3    | 5   | 5    | 6   | 6    | 14    | 14    | 19    | 19    | ○     | ○     |
| 네덜란드       | 3   | 6    | 5   | 16   | 8   | 16   | 8     | 16    | ●     | ●     | ●     | ●     |
| 오스트리아      | 4-5 | 8-10 | 4-8 | 8-15 | 4-8 | 8-15 | 10-13 | 20-25 | 10-13 | 20-25 | 10-13 | 20-25 |
| 폴란드        | 5   | 5    | 8   | 8    | 8   | 8    | 25    | 25    | 25    | 25    | 25    | 25    |
| 포르투갈       | 5   | 10   | 7   | 14   | 9   | 18   | 13    | 25    | 13    | 25    | 13    | 25    |
| 루마니아       | 4   | 4    | 5   | 5    | 6   | 6    | 20    | 20    | 20    | 20    | 20    | 20    |
| 슬로베니아      | 6   | 12   | 6   | 12   | 6   | 12   | 9     | 17    | 11    | 22    | 11    | 22    |
| 슬로바키아      | 5   | 5    | 5   | 5    | 5   | 5    | 20    | 20    | 21    | 21    | 22    | 22    |
| 핀란드        | 4   | 12   | 4   | 12   | 4   | 12   | 8     | 24    | 8     | 24    | 8     | 24    |
| 스웨덴        | ○   | ○    | ●   | ●    | ●   | ●    | ●     | ●     | ●     | ●     | ●     | ●     |
| 잉글랜드       | 3   | ●    | 3   | ●    | 4   | ●    | 13    | 26    | 30    | 30    | ○     | ○     |
| 영국(웨일스)    | 3   | ●    | 3   | ●    | 4   | ●    | 13    | 26    | 30    | 30    | ○     | ○     |
| 영국(북아일랜드)  | 3   | ●    | 3   | ●    | 4   | ●    | 13    | 26    | ○     | ○     | ○     | ○     |
| 영국(스코틀랜드)  | 3   | ●    | 3   | ●    | 5   | ●    | 8     | ●     | 8     | ●     | ○     | ○     |
| 알바니아       | ●   | ●    | ●   | ●    | ●   | ●    | 25    | 25    | 25    | 25    | 25    | 25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3   | 6    | 6   | 12   | 8   | 15   | 11    | 21    | 12    | 24    | 13    | 25    |
| 스위스        | 3-6 | ●    | 3-6 | ●    | 4-8 | ●    | 4-8   | ●     | 22-26 | 22-26 | 22-26 | 22-26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명    | 0  |    | 1  |    | 2  |    | 3  |    | 4  |    | 5  |    |
|--------|----|----|----|----|----|----|----|----|----|----|----|----|
|        | sm | cp | sm | cp | sm | cp | sm | cp | sm | cp | sm | cp |
| 리히텐슈타인 | 3  | 8  | 3  | 8  | 5  | 12 | 5  | 12 | 20 | 20 | 20 | 20 |
| 몬테네그로  | 3  | 6  | 3  | 6  | 3  | 6  | 14 | 14 | 20 | 20 | 25 | 25 |
| 북마케도니아 | 4  | 4  | 6  | 6  | 8  | 8  | 9  | 18 | 10 | 20 | 13 | 25 |
| 노르웨이   | ○  | ○  | 3  | 7  | 3  | 7  | 6  | 14 | 6  | 14 | 6  | 14 |
| 세르비아   | 7  | 7  | 12 | 12 | 16 | 16 | 20 | 20 | 24 | 24 | 26 | 26 |
| 터키     | 5  | 10 | 5  | 10 | 5  | 10 | 10 | 20 | 10 | 20 | 10 | 20 |

주: 1) sm(per staff member)은 보조인력 등 포함하는 직원당 아동수, cp(per core practitioner)는 주교사당 아동수를 의미함.

2) ●는 관련 기준 없음, ○는 해당 연령에 대한 ECEC 제공이 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 (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 2019 Edition*, p. 154. Eurydice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다. 북아메리카

연방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이며, 주에 따라 규정 여부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 영유아교육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및 정책결정자의 가장 큰 협회인 전미유아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AEYC)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증제도(Early Learning Program Accreditation)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staff-to-child ratio)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인증평가 시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기준이므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더라도 북미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합의된 기준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NAEYC의 인증제도는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는 협회의 제도로, 최근 NAEYC에서는 취학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10개의 표준(standard)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인증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즉,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0가지 표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성인 대 아동 비율은 “기준 10. 리더십과 운영”에 해당하는 지표이다(NAEYC, 2022: 6).

“리더십과 운영” 기준은 기관 내에서 안정적인 교사와 유능한 직원을 두고 재정 및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적절한 집단의 크기와 성인 대 아동 비율 유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2세 미만의 영아는 4명, 걸음마기 2세는 6명, 소위 preschool로 통칭되는 3-4세 유아 반은 10명, 5세가 주요 대상이 되는 유치원(kindergarten)은 12명으로 제시하고 있다(NAEYC, 2022: 99).

〈표 II-3-2〉 NAEYC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반 규모 (2022)

단위: 명

| 구분                           | 비율   | 반당 최대 인원수 |
|------------------------------|------|-----------|
| 영아 (infant classrooms)       | 1:4  | 8         |
| 걸음마기/2세 (toddler classrooms) | 1:6  | 12        |
| 유아 (preschool classrooms)    | 1:10 | 20        |
| 유치원 (kindergarten classroom) | 1:12 | 24        |

주: 1) 본 기준은 NAEYC 인증위원회(NAEYC Council on the Accreditation of Early Learning Programs)가 2022년 승인한 매뉴얼에서 발췌한 것임.  
2) 상기 기준은 교실/보육실 및 여타 실내 공간에 해당하며, 실외놀이터에는 적용되지 않음.  
3) 혼합연령반은 반을 구성하는 영유아 중 낮은 연령 영유아의 기준을 적용함.  
자료: NAEYC. (2022). NAEYC early learning program accreditation standards and assessment items, p. 99. Washington, DC: NAEYC.

주목할 만 한 점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함께 최대 집단 크기를 함께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사 대 아동 비율 지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명의 교사가 영아를 4명 담당해도 무방하나, 2명의 교사가 영아는 8명을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NAEYC는 무조건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작은 크기의 집단보다는 0-2세의 경우 8명, 2세는 12명, 3-4세는 20명, 5세는 24명까지의 인원을 하나의 반으로 구성하고, 2명의 교사가 함께 담당하는 것이 발달에 적합한 기준으로 제시한다.

라. 오세아니아

1) 호주

호주는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각종 정책과 지침, 자료 등을 관장하고 있다. ACECQA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2012년부터 시행된 호주의 National



Quality Framework(NQF)를 유아교육 및 보육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NQF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ECEC 서비스에 대한 지침으로, 1) 관련 법령 및 규정, 2) 품질 관리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s), 3) 평가 및 품질 평정 과정(Assessment and quality rating process), 4) 교육과정(National learning framework)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3-3〉 호주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 구분                            | 교사 대 아동 비율   | 적용 주 및 준주                                           | 비고                           |
|-------------------------------|--------------|-----------------------------------------------------|------------------------------|
| 출생-24개월                       | 1:4          | 모든 주 및 준주                                           | -                            |
| 24개월 초과 ~ 36개월 미만             | 1:4          | 빅토리아주                                               | -                            |
|                               | 1:5          | 그 외 모든 주 및 준주                                       | -                            |
| 36개월 이상 유아                    | 1:10         | 뉴사우스웨일스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태즈메이니아주                      | 태즈메이니아주는 유아반 재원아에 한해 2:25 적용 |
|                               | 1:11         |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노던 준주, 퀸즐랜드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빅토리아주     | -                            |
| 5세 이상<br>(Over preschool age) | 1:15         | 노던 준주, 퀸즐랜드주, 빅토리아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태즈메이니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 -                            |
|                               | 1:11         |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 -                            |
|                               | 1:10 또는 1:13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 1:10은 처음 12명의 유아에 한해 적용      |

자료: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2020).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 p. 429. <https://www.acecqa.gov.au/sites/default/files/2022-05/Guide-to-the-NQF-220511-compressed.pdf>, 2022. 8. 14. 인출

교사 대 아동 비율 또한 NQF에서 정하고 있는데,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의 경우 유아 연령 이하는 1:4, 그 이상은 1:7로 비교적 단순하게 정하고 있는 반면, 기관보육의 경우 연령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교하게 기준을 두고 있다. 기관보육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2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1:4이며, 이 비율은 빅토리아주를 제외하면 36개월 영아까지 동일하다. 한편 교사 대 유아 비율은 6개의 주와 2개의 준주에서 다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3-4세 유아는 교사 1인당 10명 또는 11명을, 5세 유아는 교사 1인당 10명 또는 11명이 기준인 주도 있으나, 대부분 1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 또한 교육부로 유아교육 및 보육이 1986년부터 교육부로 통합된 국가로 영아와 유아 모두에 대해 일정 아동 수에 대해 배치되어야 하는 성인 1인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2011년 제정된 것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즉 기관과 가정(home-based education and care service)에 따라 성인의 배치 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중 기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이 아닌 기관의 재원아 수에 따라 성인의 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정하고 있다. 먼저, 2세 미만의 영아는 성인 1인이 최대 5명까지 담당할 수 있다. 반면 2세 이상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성인 1인이 최대 10명까지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단, 재원아 수가 10인 미만일 경우는 6명 미만의 원아에 성인 1명, 7명 이상인 경우는 2명을 배치해야 한다. 이때 성인은 정교사와 17세 이상의 보육 서비스 제공 인력을 모두 포함한다.<sup>7)</sup>

〈표 II-3-4〉 뉴질랜드의 성인 대 아동 비율 기준

단위: 명

| 구분    | 아동수   | 최소 성인 수 |
|-------|-------|---------|
| 2세 미만 | 1-5   | 1       |
|       | 6-10  | 2       |
|       | 11-15 | 3       |
|       | 16-20 | 4       |
|       | 21-25 | 5       |
| 2세 이상 | 1-6   | 1       |
|       | 7-20  | 2       |
|       | 21-30 | 3       |
|       | 31-40 | 4       |
|       | 41-50 | 5       |
|       | 51-60 | 6       |
|       | 61-70 | 7       |
|       | 71-80 | 8       |
|       | 81-90 | 9       |

7) 서비스 제공 인력에 급간식 준비 또는 배식을 위한 인력이나 행정인력은 포함되지 않음.

| 구분 | 아동수     | 최소 성인 수 |
|----|---------|---------|
|    | 91-100  | 10      |
|    | 101-110 | 11      |
|    | 111-120 | 12      |
|    | 121-130 | 13      |
|    | 131-140 | 14      |
|    | 141-150 | 15      |

자료: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2022. 6. 1). Education (Early Childhood Services) Regulations 2008 (SR 2008/204), p. 45. Wellington, New Zealand: The Parliamentary Counsel Office.

## 마. 일본

일본의 보육소는 아동복지시설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 직원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육사의 배치는 영유아의 연령과 수에 의해 정하고 있다. 일본의 보육사 배치 기준은 0세 이하의 경우는 영유아 3명에 보육사 1명, 2세 이하의 경우는 6명, 3세 이하는 20명, 4세 이상은 30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신제도에 도입에 맞추어 재원을 확보하여 1세아의 경우 6:1에서 5:1로, 5세아의 경우 30:1에서 25:1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표 II-3-5〉 일본의 보육소 보육사 배치기준(최저기준)

| 구분       | 영유아 수 | 보육교사 수 |
|----------|-------|--------|
| 0세 이하    | 3 명   | 1명     |
| 1~2세 어린이 | 6 명   | 1명     |
| 3세 이하    | 20 명  | 1명     |
| 4세 이상    | 30 명  | 1명     |

자료: 후생노동성(2022).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82069000&dataType=0&pageNo=1](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82069000&dataType=0&pageNo=1), 2022. 8. 7 인출

## 4.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중요성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양성이나 자격, 재교육, 근무여건, 처우 등 보육교사와 관련한 정책을 정비함으로써 보육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교사 배치 기준에 따라 좌

우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예산 소요가 가장 크기 때문에, 2005년 개정된 이래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 요구에 앞서, 보육사업에서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구조적 특성 지표

서비스 질에 대한 정의는 가치 및 문화 기반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품질에 대한 정의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의 경우 국가나 시대에 무관하게, 서비스 질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일관되게 구조적 특성과 과정적 특성으로 구분지어 논의되어왔다(Kamerman, 2001; OECD, 2018). 특히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질을 좌우하는 특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구조적 특성과 과정적 특성에 해당하는 보육의 질 관련 지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조해연·유선영·박선휘, 2014).

일반적으로 구조적 특성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 크기, 교사의 학력, 임금 및 직업 안정성, 시설 설비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의 적절성이 해당한다. 반면 과정적 요인은 교사-아동 간 상호작용, 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 교사와 부모 및 교사 간 긍정적 의사소통,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과 경험 제공 등으로 대표된다(이기숙·강기연, 2012). 특히 구간 구조적 질 수준이 높을수록 과정적 질 또한 제고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밝혀짐에 따라(Kontos, Hsu, & Dunn, 1994; NICHD ECCRN, 1996, 1997, 1998, 1999; Phillips, Howes & Whitebook, 1992; Rosenthal, 1990), 구조적 질은 과정적 질 못지않게 강조되어 왔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Ceglowski & Bacigalupa, 2002; Howes, 1983, NICHD ECCRN, 1996, 2000, 2002; Vermeer, van IJzendoorn, Cárcamo, & Harrison, 2016). 특히 Bigras 등(2010)은 영아를 대상으로 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과 같은 환경뿐만 아니라 기관 맥락에서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질 제고에 결정적인 특성으로 역할을 함을 밝혀, 기관의 유형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은 경우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높아짐을 시사한 바 있다.

이같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을수록 보육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이유는 개별 영유아에게 주의를 더 집중하여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고 주도성을 증진

시키는 지원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정서 표현이 증가하는 반면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De Schipper, Riksen-Walraven, & Geurts, 2006; Dowsett, Huston & Imes, 2008). 이러한 관점은 ECEC 외에 각급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지지되는 특성으로,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학급에서 교사는 학생별로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어,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담당하는 아동수가 적은 경우, 교사는 일과 중 안전 관리와 기본생활 지원 중심의 소극적인 상호작용보다 놀이 중심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조막래·김송이·이지현·서경희, 2021). 특히, 학급 내 산만하거나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가 있는 경우 학급 운영이 훨씬 용이할 수 있다. 최근 시범사업을 실시한 조막래 등(2021)은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개선되는 경우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 부담 감소로 다양한 교육활동 준비와 부모와의 상담에도 상대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은 보육의 질 제고라는 보육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양육 가치관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교사 배치기준에 대한 기대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Rosenthal(2003)에 따르면, 집단의 크기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ECEC의 목표나 실제와는 무관하게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특성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 사회가 개인주의적인지 또는 집단주의적인지에 따라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사가 개별 아동과 친밀하고 민감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여건에 해당하므로, 미국과 같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특성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나 중국 또는 러시아와 같이 상호 의존을 장려하고 집단 결속을 사회화의 중요한 과제로 보는 사회에서는 큰 집단 크기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교사를 더 선호하게 된다(Rosenthal, 2003).

물론 이러한 관점은 20여 년 전에 제시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Rosenthal이 언급한 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집단주의적인 사회에 해당하는지를 논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음은 명백하다(나은영·차유리, 2010; 한규석·신수진, 1999). 특히 글로벌 위기를 경험한 X세대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족하지만 실업, 거주 비용, 부양 부담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성장한 MZ세대가 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자명하다(최은희, 2021).

최근 언론 등에서 MZ세대가 과도하게 소비되는 경향을 보이며, 학계에서도 소비, 인사, 조직 등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의는 아직 형성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박지성·양지윤·전상길, 2022). 그러나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이 갖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 재미 추구, 맞춤형을 선호하는 자신만의 스타일 추구 성향과 끈끈한 유대보다는 느슨한 연대를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음은 현상적 측면에서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안소영, 2021. 5. 31; 황혜진, 2021. 6. 30).

밀레니얼 세대가 현재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 세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세대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교사의 상호작용을 이전 세대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은 예상 가능한 변화이다. 더욱이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은 발달과 교육의 어떤 측면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성미영·정현심·이서경, 2018), 1인의 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더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정책 방향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다. 국제 비교를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지표

OECD의 통계업무는 통계국(Statistics Directorate)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연구 및 정책 분석을 담당하는 각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대외정책연구원, n.d.). 「Education at a Glance」는 국제 교육통계 중 가장 대표적인 자료로서, OECD가 1992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OECD 「교육지표사업(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 INES)」의 주요 산출물 중 하나이다(OECD, 2019). 우리나라에서는 「OECD 교육지표」로 연간 발간되는 「Education at a Glance」는 국가별 교육체제의 기능과 역할 및 성과에 대한 비교와 이해를 돕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OECD는 교육 데이터의 수집과 공표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국제 비교가 가능한 교육통계를 위한 OECD 핸드북을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대외정책연구원, n.d.), 우리나라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를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위한 교육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OECD 교육통계 핸드북」(한국교육개발원, 2019)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교육통계 조사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크게 1) 학생과 졸업생, 2) 교직원, 3) 학교조직과 교육과정, 4) 교육기관, 5) 교육지출의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Ratio of students to teaching staff)는 학교조직과 교육과정 영역에서 학생의 학습환경 및 교사의 근무환경에 해당하는 지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ECEC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중요성은 핸드북에서 다루는 비중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ECEC부터 중등교육까지 공히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전일제 환산치 교사수 대비 전일제 환산치 학생수를 산식으로 한다. 이때 전일제 교사수는 한 학년도 동안 동일 직무나 역할 수행을 위해 일반적 또는 법적 근무시간의 90%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학교 급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학생수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전일제가 대부분이나, ECEC의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가 혼재되어 있다. 다만 통계자료 생산 시 전일제와 시간제 이용 영유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국가가 많으므로, ECEC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모든 재원생 수를 전일제로 간주하여 자료를 생산하도록 권장하는 등 관련 통계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되어 있다.

한편, OECD는 2015년부터 교사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유아 교원 실태조사인 The Starting Strong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1주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비교연구에 참여하여 2017년 예비조사와 2018년 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도 교직원의 직무에 따른 교사 수와 유아 수를 파악하고, 유아 1인당 교사 수를 산출하여 국제 비교를 실시하고 있다(김은설·박진아·이솔미, 2019).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각국의 ECEC 현황을 드러내는 데 빠지지 않는 핵심 지표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 지표를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표를 국제적인 비교 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라. 보육교사의 권리존중과 적절한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2006년 발표된 「새싹플랜」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과제로 포함되어 왔으며, 다양한 처우개선 관련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인권상황의 실태를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2013b)는 같은 해 연간보고서를 통해 보육교사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3a). 해당 보고서에서는 보육 현장에서 교사의 노동인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로환경 개선 방안으로 교사실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현실화, 노동인권 교육 실시와 같은 권고안 외에 아동수 대비 보육교사 배치 기준 조정에 대한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3b).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일부 지자체의 실태조사에서도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 바 있다(김송이·김명순·김하나, 2020). 이는 교사의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핵심적인 요소인 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적은 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이 보육실에서의 노동 강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직무상의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경우 담당하는 보육업무 외 청소나 행사준비 등의 업무가 추가되며, 문서와 관련한 업무 비중 또한 높으며, 보조 인력의 배치도 제한적이다(양미선·최은영·김보미, 2020). 더욱이 학교 교사와는 달리 ECEC 교사는 특정한 수업 시간이 별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학생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즉, 보육교사의 직무 특성상 아동 수가 많을수록 보육업무 이외의 업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육교사의 업무 과중에 따른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무 특성의 고려 없이 법제도를 개정해 온 측면이 있어, 보육교사의 경우 법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로서 법적 권리



를 합당하게 보장받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김아름·김은설·조혜주·양성은, 2020).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된 경우 1주간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1주에 52시간이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양미선 등, 2021)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 중 38.3%가 초과근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비율은 2015년 73.1%, 2018년 49.5%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수치이나, 영유아의 현원이 많을수록, 유아반을 담당하는 경우에 초과근무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여전히 근로시간 연장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된 것은 보조교사 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그간 큰 폭으로 증가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한 보조교사의 배치 양상이 보조교사가 종전의 누리과정반의 업무보조보다는 영아반 지원 위주로 바뀐 점이다(김아름 등, 2020). 즉, 보조교사 배치는 지원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어린이집 반 구성과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진아(2019)는 보육교사의 장시간 보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무의 보조교사 지원보다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고려한 교사 배치 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 서울시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조막래 등, 2021), 시범사업 후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은 시범사업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인원 충원으로 인해 업무 분담이 가능해져 행정업무가 감소하여 초과근무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보육교사 조사 결과 업무 감소로 인한 일-생활균형 등이 시범사업의 긍정적 효과 1순위로 보고된 점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더욱이 보육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영유아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바,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특성으로는 휴게시간을 들 수 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중 휴게시간이 의무화되어,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양미선 등, 2021),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평균 휴게시간은 42분으로 보고되어, 2015년 18분, 2018년 37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휴게시간 이용이 현장에서 보편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법으로 정한 시간 동안 충분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육 업무를 대체할 교사가 없기 때문이거나(이현옥·윤혜주, 2021), 업무 과중으로 휴식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김종두·김선아·박성심, 2018), 보조교사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관계로 보육실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불안하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수빈·김낙홍, 2019). 이에 일과 중 보육교사가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조막래 등(2021)에 따르면 서울시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참여 전에는 휴게시간 동안 보육일지를 작성하거나 행정업무를 했지만, 시범사업 이후 휴게시간을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휴게시간 의무화에 따른 보조교사 지원, 보육지원 체계개편 이후 연장반 교사 배치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인건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 5. 선행연구

### 가. 교사 대 아동 비율

양미선·최은영·김보미(2020)는 초저출산의 지속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수, 보육의 공급과 이용, 어린이집 폐원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장래 어린이집 수와 담임 수를 추정하여 반당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어린이집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의 예산 변동

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강화, 일부 연령반의 구성 개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대신 보조교사 등의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세 가지 안을 제안하였다.

김은영 등(2018)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교사 자격 및 양성, 교사 임용 및 배치, 신분 및 신분 보장, 교사 직무 및 역할, 교사 처우 및 복지, 교사 연구 및 전문성 제고의 6가지 측면에서 향후 정책 방향과 정책 로드맵을 제공하였다. 특히, 교사 임용 및 배치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성인) 대 유아 비율을 연령별로 일원화하고, 기관 규모별 교직원 배치 기준 또한 일원화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의 구조적 질의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교사(성인) 2인 배치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과 보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과 보육 준비시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윤진·이민희(2017)는 연령별 반편성 원칙 규정의 예외를 허용한 경우들 중에서 “반별 정원 탄력편성(탄력보육)”과 “반별최대정원제(투담임제)”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탄력보육과 투담임제 관련 조사를 통해 탄력보육의 단점으로는 교사의 업무 과중과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제시하였고, 투담임제의 장점으로 교사에게 휴식 제공과 보육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반편성 개선방안으로서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되 보조교사 배정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 조정과 정원 내 자율적 반편성 운영을 제안하였다. 특히, 만 3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은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에 따라 교수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횟수와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내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국가 수준에서 규정되어 일괄 적용되고 있는데,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0~5세 모두 현행보다 낮은 비율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 대 유아 비율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고 직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의 개선이 아닌, 최대 집단(유치원에서는 학급) 규모를 정하고 교사를 추가 투입하여 교사 또는 성인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령 구분의 재구성과 다인교사의 집단(학급) 담당

을 제안하고 3세반 인원의 기준 개선 어린이집의 경우 2세반은 교사 대 영유아가 1:7 비율로 준수되고 있으나 3세가 되면 1:15 로 2배 이상의 수를 감당해야 되므로 교사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하여 3세반 인원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백선희(2016)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안전과 위생 기준, 직원 수, 집단 크기, 직원의 자질, 부모참여, 정책 규정 준수 등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OECD 는 그 중에서도 교사 대 아동 비율(child-to-staff ratios)과 ECEC교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의 하나이며,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육은 보육교사 업무강도를 증가시키고 보육공간을 축소하는 등 보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보육의 질을 보육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특히, 1명이 15~20명을 돌봐야 하는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높다고 하였다.

〈표 II-4-1〉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선행연구

| 구분                                   | 연구 내용                                                                                                                                                                  | 시사점                                                                                                                                                                               |
|--------------------------------------|------------------------------------------------------------------------------------------------------------------------------------------------------------------------|-----------------------------------------------------------------------------------------------------------------------------------------------------------------------------------|
| 양미선·최은영·김보미 (2020) <sup>1)</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지역 격차와 재원 절감분을 활용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 방안 제시</li> <li>인구 및 보육 통계 수집 분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방안 제시</li> <li>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합리화 방안 제시</li> <li>지역별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 제시</li> </ul>                                            |
| 김은영·박창현·김수정·김혜진 (2018) <sup>2)</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의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고,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 로드맵을 제공</li> <li>국민 참여워크숍,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 등 수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연령별로 일원화, 기관 규모별로 교직원 배치 기준 일원화를 제안</li> <li>학급당 교사 2인 배치를 통한 교육과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li> </ul>                    |
| 이윤진·이민희 (2017) <sup>3)</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력보육과 투담임제 운영 실태 파악과 합리적인 반편성 기준 모색</li> <li>원장, 교사, 학부모 면담 조사와 설문조사 등 진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교사 배정, 정원 내 자율적인 반편성 운영</li> <li>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으며 특히, 만 3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함</li> </ul>                                         |
|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 (2016) <sup>4)</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서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현황을 확인하여 연령별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영유아 발달을 고려한 최적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고찰하고자 함</li> <li>전문가 조사와 사례조사 실시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대 유아 비율 기준 개선 필요함</li> <li>학급 최대 규모 규정과 교사 추가 배치</li> <li>연령 구분의 재구성 '다인교사의 집단 (학급) 담당</li> <li>현행 기준의 수정으로 3세반 인원을 중심으로 개선함</li> </ul> |

| 구분                          | 연구 내용                                                                                                                                                                                  | 시사점                                                                                                                                                                                                            |
|-----------------------------|----------------------------------------------------------------------------------------------------------------------------------------------------------------------------------------|----------------------------------------------------------------------------------------------------------------------------------------------------------------------------------------------------------------|
| 백선희<br>(2016) <sup>5)</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대 아동 비율이 보육의 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탐색</li> <li>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초과보육 인정방침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중앙정부 방침의 변경과 지방정부 대응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함.</li> <li>초과보육의 또 다른 이름인 반별 탄력 편성을 금지시켜야 함.</li> <li>보육의 질을 보육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함</li> </ul> |

자료: 1) 양미선·최은영·김보미(2020). 영유아 수 변동에 따른 어린이집 인적·물적 자원 이용 합리화 방안. 세종: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 김은영·박창현·김수정·김혜진(2018).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Ⅰ): 교사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3) 이윤진·이민희(2017).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4)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보육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5) 백선희(2016). 보육시설에서의 초과보육 허용 정책에 대한 비판 및 대안의 모색: 보육의 질적 측면에서의 접근. 비판사회정책, 51, 133-174.

## 나. 교사-아동 상호작용

### 1) 교사를 둘러싼 외적 요인과 교사-아동 상호작용

보육환경에서 교사-아동의 상호작용은 보육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사-아동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교사를 둘러싼 외적 요인을 파악하였다.

강란과 장유진(2021)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휴게시간이 적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없는 근무환경에서 보육교사의 소진이 높았으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많을수록 교사와 영유아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란·장유진, 2021).

심도현(2021)은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82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소진(직무스트레스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갈 현상)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의 소진이 클수록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 질이 낮았다(심도현, 2021). 보육교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갈되는 환경에서는 교사-영유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근무소진을 연구한 조우미(2018) 연구에서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지각한 교사가 근무소진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영유아와

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근무환경이 좋다고 지각할수록 영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였다.

이완정(1999)은 14~4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질에 따라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보육시설의 질이 좋을수록 영유아는 또래와 접촉하는 빈도가 높았고, 보육교사와 이야기하거나 놀이를 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교사를 둘러싼 외적 요인인 휴게시간, 근무환경, 근무소진, 보육시설의 질은 교사-아동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아동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를 둘러싼 다양한 외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II-4-2〉 교사-아동 상호작용 외적 요인 관련 선행연구

| 구분                             | 연구 내용                                                                                                                                                                                                                                                     | 시사점                                                                                                                                                                                      |
|--------------------------------|-----------------------------------------------------------------------------------------------------------------------------------------------------------------------------------------------------------------------------------------------------------|------------------------------------------------------------------------------------------------------------------------------------------------------------------------------------------|
| 강란·장유진<br>(2021) <sup>1)</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 300명</li> <li>설문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을 하였음.</li> <li>-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등과 같은 근무환경이 보육교사의 소진,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같은 보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li> </ul>   |
| 심도현<br>(2021) <sup>2)</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82명</li> <li>설문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의 소진이 클수록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 질이 낮았음.</li> </ul>                                                                                                     |
| 조우미<br>(2018) <sup>3)</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경기 지역 내 직장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 188명</li> <li>설문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가 지각한 근무환경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정적 영향을 미쳤음.</li> <li>• 근무환경이 열악한 보육교사는 근무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음.</li> <li>• 근무소진을 경험한 보육교사는 영유아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었음.</li> </ul> |
| 이완정<br>(1999) <sup>4)</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 소재 전일제 보육시설 18개소에서 표집된 영유아 33명</li> <li>- 영유아 연령: 14~41개월 (평균 월령: 29개월)</li> <li>• 관찰연구</li> <li>- 보육시설의 질 평정척도 하위영역: 영유아를 위한 시설 및 배치, 개별 영유아를 위한 규칙적인 양육활동, 듣고 말하기, 학습활동,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구조, 성인의 요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시설의 질이 우수할수록 영유아는 또래와 접촉하는 빈도가 높았고, 보육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경우도 많았음.</li> </ul>                                                                            |

자료: 1) 강란·장유진(2021).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보육효능감, 소진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교사 휴게시간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를 중심으로. p. 37, pp. 46~47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2) 심도현(2021). 보육교사의 소진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원장과 동료교사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p. 8, p. 13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3) 조우미(2018). 영유아 보육교사가 지각한 근무환경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서 근무소진의 매개효과. p. 255, p. 259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4) 이완정(1999). 보육시설의 질과 아동의 기질에 따른 걸음마기 영유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p. 179, p. 181, p. 190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2) 교사-아동 상호작용과 아동발달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질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OECD, 2018). 선행연구를 통해 교사-아동 상호작용의 질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오수정과 김명순(2019)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만 2세반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과 영아의 놀이행동 및 상징놀이 수준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높은 놀이실의 영아들은 자유놀이에서 놀이행동을 더 많이 하면서 단순히 사물만 탐색하는 행동을 적게 하였으며, 더 높은 수준의 상징놀이를 하였다.

황윤세와 김연진(2017)은 어린이집 만 2세반 영아 180명을 대상으로 교사-영아 상호작용과 영아의 사회인지 놀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영아의 긍정적 상호작용, 승인·의존적 상호작용, 애정·신체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사회인지놀이와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교사-영아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사회인지놀이와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실과 김영실(2015)의 연구에서는 10~21개월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질에 따라 영아의 공동주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공동주의는 언어를 사용하기 전 영아가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이후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사-영아의 상호작용 질이 높을수록 영아의 지지적 공동주의(영아-교사 간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협응적 공동주의를 위해 선행되는 행동)와 협응적 공동주의(영아가 주의 집중하는 대상을 교사가 함께 바라보는 것)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기 공동주의에 밀접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지연과 황혜정(2015)은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영아의 민감성과 효능감이 높

고, 영아-교사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아교사의 민감성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은 영아 사회정서발달의 53%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이었다.

조해연과 이기숙(2014)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2세반의 물리적, 인적 환경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교실의 물리적 환경의 질과 보육과정의 질은 영아의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교사의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상호작용도 영아의 개별 활동과 긍정행동을 촉진하면서 비놀이와 부정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숙(2014)은 24시간 어린이집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이 영유아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4시간 어린이집 교사-영유아가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영유아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조절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3〉 교사-아동 상호작용과 아동발달 관련 선행연구

| 구분                              | 연구 내용                                                                                                                                                                                                                         | 시사점                                                                                                                                                                                  |
|---------------------------------|-------------------------------------------------------------------------------------------------------------------------------------------------------------------------------------------------------------------------------|--------------------------------------------------------------------------------------------------------------------------------------------------------------------------------------|
| 오수정·김명순<br>(2019) <sup>1)</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경기, 인천 소재 어린이집 만 2세반 담임교사 40명, 영아 126명</li> <li>관찰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 평가, 영아의 놀이행동 및 상징놀이 수준 분석</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높은 영아들은 자유놀이 시간에 놀이행동을 더 많이 하였음.</li> <li>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높은 반 영아가 더 높은 수준의 상징놀이를 하였음.</li> </ul>                       |
| 황윤세·김언진<br>(2017) <sup>2)</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만2세반 영아 180명</li> <li>설문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영아의 긍정적 상호작용, 승인·의존적 상호작용, 애정·신체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사회인지놀이와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음.</li> <li>교사-영아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사회인지놀이와 부적상관관계가 있었음.</li> </ul>             |
| 정영실·김영실<br>(2015) <sup>3)</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에 소재한 어린이집 교사 157명과 영아 102명</li> <li>설문조사 및 시간표집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의 범주: 사물에 주의, 사람에 주의, 지지적 공동주의, 협응적 공동주의, 방관, 무관여</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영아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의 지지적 공동주의, 협응적 공동주의(영아가 주의 집중하는 대상을 교사가 함께 바라보는 것)가 높게 나타났음.</li> </ul>                                                |
| 유지연·황혜정<br>(2015) <sup>4)</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경기 지역 어린이집 교사 169명과 이들이 담임하는 영아 169명</li> <li>설문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교사의 민감성과 효능감이 높고, 영아-교사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li> <li>영아교사의 민감성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은 영아 사회정서발달의 53%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이었음.</li> </ul> |



| 구분                              | 연구 내용                                                                                                                             | 시사점                                                                                                                                                          |
|---------------------------------|-----------------------------------------------------------------------------------------------------------------------------------|--------------------------------------------------------------------------------------------------------------------------------------------------------------|
| 조해연·이기숙<br>(2014) <sup>5)</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소재 어린이집 재원 2세 영아 100명과 이들의 교사 14명</li> <li>• 설문조사 및 관찰연구<br/>- 영아의 놀이행동 관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환경의 질은 영아의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쳤음.</li> <li>• 보육과정의 질은 영아의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쳤음. 보육과정의 질이 높으면 유아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했음.</li> </ul> |
| 박희숙<br>(2014) <sup>6)</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경기도 24시간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268명과 이들의 교사 29명</li> <li>• 설문조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어린이집 교사-영유아의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정서지능(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조절)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음.</li> </ul>                          |

자료: 1) 오수정·김명순(2019). 어린이집 만 2세반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과 영아의 놀이행동 및 상징놀이 수준 간의 관계. p. 129, pp. 136-137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황윤세·김연진(2017). 영아 교사의 민감성 및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사회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 pp. 166-167, p. 169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정영실·김영실(2015).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질에 따른 10~21개월 영아의 공동주의. p. 140, p. 142, pp. 150-151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4) 유지연·황혜정(2015).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p. 1, p. 4, p. 15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5) 조해연·이기숙(2014).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pp. 119-120, pp. 131-132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6) 박희숙(2014). 24시간 어린이집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이 영유아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p. 271, p. 274, p. 279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교사-아동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인지발달, 사회 정서발달, 놀이행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발달 측면에서도 교사-아동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위한 보육환경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6. 소결

연구의 배경인 본 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왜 중요한가, 국내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지침, 국외의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관련 선행연구들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모색해본다.

첫째, 전반적인 보육 현황을 고려할 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높았으나 보육 아동의 이용률은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순이었다. 현재 어린이집 수와 아동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뚜렷함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은 주로 이러한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둘째,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의 중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특성 지표이다. 즉,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아동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도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는 밀레니얼 부모 세대에 부합하는 교사 배치 기준으로서 이들은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바라고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1인 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수의 적음을 선호한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국제 비교를 위한 핵심 지표로서 ECEC 현황을 잘 보여주므로 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권리 존중과 근무 여건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셋째, 국내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육사업안내에 있듯이 영유아보육법(법 제 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이 명시되고 연령 별 최대 인원까지 최근에 제시하고 있지만, 특례 인정과 탄력 편성으로 인해 실질적 배치기준이 초과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법령과 지침의 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국외의 교사 대 아동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결코 높지 않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물론 전체 보육교직원 또는 성인 대 아동이나, 주교사(담임) 대 아동이나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교사 1명당 최대 몇 명의 아동을 돌보게 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월령이나 좀 더 구체적인 연령 별 교사(성인) 대 아동 비율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외의 기준에 의한 비교나 정책변화보다는 영유아 수 감소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실현될 수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축소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다섯째,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중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선행연구의 검토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행연구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는 교사의 업무 강도를 줄이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III

## 지자체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시범사업 사례

- 01 서울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 02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 03 인천시의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 04 대전시 0세 전용 어린이집 지원사업
- 05 광양시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 06 진주시 구슬모음어린이집 사업
- 07 소결



### Ⅲ. 지자체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시범사업 사례

지자체들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제공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관련 사업을 이미 시작했거나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자체의 보육 상황과 진행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사업들의 목표와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 1. 서울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sup>8)</sup>

##### 가. 서울시 보육 현황

서울시의 전반적인 보육현황을 보기 위해서 보육통계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어린이집 현황을 정리해보았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이용률은 평균 77.6%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이용률은 국공립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순이었다. 어린이집 평균 아동 수는 36.2명, 보육교직원 1인 당 아동 수 3.5명,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4.8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어린이집 수 | 개소    | 5,049   | 1,811   | 23     | 92    | 1,162  | 1,637  | 28   | 296    |
|        | 비중    | 100.0   | 35.9    | 0.5    | 1.8   | 23.0   | 32.4   | 0.6  | 5.9    |
| 아동 수   | 정원    | 235,682 | 103,922 | 1,690  | 5,427 | 73,175 | 29,967 | 859  | 20,642 |
|        | 정원 비중 | 100     | 44.1    | 0.7    | 2.3   | 31.0   | 12.7   | 0.4  | 8.8    |
|        | 현원    | 182,922 | 85,501  | 1,187  | 3,873 | 54,604 | 23,846 | 661  | 13,250 |
|        | 현원 비중 | 100.0   | 46.7    | 0.6    | 2.1   | 29.9   | 13.0   | 0.4  | 7.2    |
|        | 이용률   | 77.6    | 82.3    | 70.2   | 71.4  | 74.6   | 79.6   | 76.9 | 64.2   |

8) 서울특별시(202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확대」 내부자료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br>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보육<br>교직원 수  | 인원 | 52,263 | 22,513 | 275        | 935       | 13,555 | 9,935 | 239  | 4,811 |
|              | 비중 | 100.0  | 43.1   | 0.5        | 1.8       | 25.9   | 19.0  | 0.5  | 9.2   |
| 어린이집1개당 아동수  |    | 36.2   | 47.2   | 51.6       | 42.1      | 47.0   | 14.6  | 23.6 | 44.8  |
| 보육교직원1인당 아동수 |    | 3.5    | 3.8    | 4.3        | 4.1       | 4.0    | 2.4   | 2.8  | 2.8   |
| 보육교사1인당 아동수  |    | 4.8    | 2.2    | 0.0        | 0.1       | 1.4    | 0.6   | 0.0  | 0.3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p. 8), 보육아동 현황(p. 91), 보육교직원 현황(p. 174)의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 나. 시범사업 개요

시범사업의 추진목표는 만0세 반, 만3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 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 7월에서 2023년 2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사업의 추진방안은 어린이집 0세 반, 3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 현행 1:3, 1:15에서 1:2, 1:10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국공립 및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개 모집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신규 반을 신설하고, 새로 채용된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편 사업대상은 국공립 및 서울형 정부지원어린이집 160개소(0세, 3세반)였다. 사업 초기인 2021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시 우수 보육정책 추진 및 21년 하반기 개원 국공립)와 2022년에는 서울형 민간과 가정 50개소(22년 3월 보육실 전용면적 우수 보육환경 어린이집)를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사업에 참여한 개소수는 만 0세반 80개소가 1:3 은 1:2로, 만 3세반 80개소는 1:15를 1:10으로 운영하였다.

지원내용은 시설별 신규채용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여 1명당 본봉,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는데 총 소요예산은 시비 100%로 6,516백만원이다.

## 다. 선정기준 및 절차

시범사업의 신청기준(반 구성 기준)은 정부 평가제 A, B등급 또는 평가인증 80

점 이상으로 신청기간 현재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진행 사항이 없는 어린이집으로 하였다.

선정절차 및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구 심사 및 추천으로 자치구별로 4개소로 선정 심사 기준에 의거 배점 부여 후 우선순위를 추천한다. 심사 기준은 운영현황(70점), 전문성(30점), 가산점(6), 감점(-5)으로 최저점수 70점 이상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으로 신청서, 정량 평가점수 및 운영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서울시가 시범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시범사업 반영성 공동 기준은 연령별 신규 반(추가반)이 편성되어야 한다. 연령별 현원 기준을 보면, 0세반 또는 0세~만 1세 혼합반 2개반(6명) 이상 운영 어린이집(신규 반 현원이 반드시 2명), 3세반 또는 만 3~4세 혼합반 1개반(15명) 이상 운영 어린이집(신규 반 현원 반드시 7명 이상)으로 한다. 공동담임제 운영 기준은 1 보육실 최대 3개반까지 공동담임제를 허용하고 기존 운영반 인건비 지원기준은 복지부 국비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시비 추가지원 신규반 등록 시 반 명칭을 '○○반\_○세 시범반'으로 표기하고 0, 3세 현원이 이미 감소되어 있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 대상반 보육아동 수가 시범사업 기간 중 불가피하게 감소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인 0세반(2명 유지), 3세반(6명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고 0세반(1명), 3세반(5명 이하)의 경우는 해당 월까지만 지원하도록 하였다.

## 라.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서울시는 2021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국공립어린이집 총 110개소(0세, 3세) 반에 대해 영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변화, 보육교사의 양적, 질적 변화, 양육자-어린이집 가정 연계 및 소통의 변화 등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첫째로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었는데, 민감성이 증가하고 개별 요구에 충실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안전 중심의 소극적 상호작용에서 놀이 중심 영유아 중심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둘째로 보육교사의 근로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및 피로도 감소, 휴게 및 휴가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셋째로 양육자와의 소통의 양적, 질적 개선효과가

나타났다(조막래·류임량·김태은, 2022: 25-26).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인력배치에 따른 영향의 상이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한 점, 교사의 추가 배치로 인한 근무 여건 개선과 조직 문화 개선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 양육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아동 발달 지원 사례 수집 등을 통한 성과를 드러내지 못한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조막래 외, 2022: 25-26).

## 가. 노원구 안심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sup>9)</sup>

### 1) 노원구 보육 현황

노원구의 안심어린이집 사업을 소개하기 전에 노원구의 전반적인 보육 현황을 알아보았다. 노원구는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순으로 여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률은 평균 77.3%로 꽤 높은 편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80.5%이고, 가정어린이집은 77.2%, 민간어린이집이 74.6%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61% 이상이였다. 한편, 어린이집 평균 아동 수는 25.9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서울시 노원구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어린이집 수      | 개소    | 332    | 93    | 2      | 0     | 41    | 188   | 1    | 7    |
|             | 비중    | 100.0  | 28.0  | 0.6    | 0.0   | 12.3  | 56.6  | 0.3  | 2.1  |
| 아동 수        | 정원(B) | 11,123 | 4,892 | 148    | 0     | 2,716 | 2,987 | 20   | 360  |
|             | 정원 비중 | 100.0  | 44.0  | 1.3    | 0.0   | 24.4  | 26.9  | 0.2  | 3.2  |
|             | 현원(C) | 8,593  | 3,936 | 98     | 0     | 2,026 | 2,306 | 7    | 220  |
|             | 현원 비중 | 100.0  | 45.8  | 1.1    | 0.0   | 23.6  | 26.8  | 0.1  | 2.6  |
|             | 이용률   | 77.3   | 80.5  | 66.2   | 0.0   | 74.6  | 77.2  | 35.0 | 61.1 |
| 어린이집1개당 아동수 |       | 25.9   | 42.3  | 49.0   | 0.0   | 49.4  | 12.3  | 7.0  | 31.4 |

주: 노원구의 보육교직원 현황 통계 부재로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와 보육교사 1인당 수는 산출하지 못했음.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보육아동 현황, 보육교직원 현황을 발췌 하여 재구성함.

9) 노원구(2021). 「노원 안심어린이집 선정·운영 추진계획」 내부자료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 2) 사업 개요

노원구 안심어린이집의 추진목표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축소하여 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영유아의 놀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육 품질을 향상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사업 운영 기간은 2022년 3월에서 2023년 2월까지이다.

본 사업의 추진방안은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0세반과 장애반은 1:3에서 1:2로, 3세반은 1:15에서 1:12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도록 하였다.

〈표 III-1-3〉 노원안심어린이집 유형별 개소수 및 연령별 반수

단위: 개소, 반

| 구분  | 만 0세반     | 만 3세반     | 장애아반     | 합 계        |
|-----|-----------|-----------|----------|------------|
| 국공립 | 19개소(35반) | 8개소( 9반)  | 7개소(12반) | 34개소(56반)  |
| 민 간 | 6개소(10반)  | 8개소(11반)  | 1개소( 3반) | 15개소(24반)  |
| 가 정 | 30개소(46반) | -         | -        | 30개소(46반)  |
| 합 계 | 55개소(91반) | 16개소(20반) | 8개소(15반) | 79개소(126반) |

자료: 노원구(2022).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기준」 내부자료.

1차와 3차에 걸쳐서 선정되었던 사업대상은 만 0세반 63개소(105반), 만 3세반 25개소(30반), 장애아반 9개소(16반)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 97개소(151반)였으나 실제 79개소가 운영되었다.

지원내용은 시설별 반 운영비로, 반 운영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소요 예산은 사무관리비 포함하여 1,045,690천원으로 전액 구비이다.

〈표 III-1-4〉 노원안심어린이집 시설별 반 운영비 지원 단가

단위: 천원/인원

| 구분     | 만 0세반     | 만 3세반     | 장애아반    |
|--------|-----------|-----------|---------|
| 정부 지원  | 490(1인)   | 840(3인)   | 530(1인) |
| 정부 미지원 | 1,060(1인) | 1,350(3인) | -       |

자료: 노원구(2022).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기준」 내부자료.

### 3) 선정기준 및 절차

노원구 안심어린이집의 신청대상은 만 0세반, 장애반, 만 3세반 아동 비율 축소 어린이집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정원 많이 차는 달 11, 12월)간 정원 충족률 평균 60%(처음 80% 시작하여 하향) 이상, 정부 평가제 B등급 이상 또는 평가인증 90점 이상인(다른 지자체 통상적 기준 반영) 어린이집이다. 또한 신청기간 현재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진행 사항이 없는 어린이집에 해당된다. 단, 202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의 경우는 신청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절차 및 내용을 보면, 자치구 내에서 모집 및 신청을 안내하고 구청에서 심사 및 선정을 한 후 구청에서 어린이집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를 위한 세부 선정 기준표를 가지고 있다.

안심어린이집 반편성 기준을 보면 만0세반과 장애아반(1:2), 만 3세반(1:12)을 기준으로 혼합 연령은 불가하며(장애아반 제외), 동일 보육실 내 동일 연령만 구성(가정어린이집 연령 구분, 교사 역할 구분)하도록 하였다. 즉, 반 운영비 지원시설의 경우 총 현원 축소를 유지하도록 하여 20명 정원 어린이집이 만 0세 2반 운영 시에는 총현원 18명, 40명 정원 어린이집이 만 3세 2반 운영 시에는 총 현원 34명, 40명 정원 어린이집이 장애반 1반, 만 3세 1반 운영 시는 총 현원 36명 등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동일 보육실 내 복수반을 운영하는 경우는 만 0세반은 3개반까지 허용하고 만 3세반 은 2개 반까지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 선정 당시 담임교사의 배치 계획을 사업 운영기간 내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 담임교사 100% 배치 계획으로 선정된 경우 원장 겸직으로 변경이 불가하도록 하고 2개반으로 선정되었으나 1개 반으로 축소 운영 시는 반드시 담임교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노원안심어린이집 선정 시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반 현원 미충족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22년의 경우는 3월~4월을 유예기간으로 하여 반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원기준은 1개소 당 최대 2개반만 지원(한정된 예산으로 반 한정)하며 반당 11일 이상 현원 100% 충족 시 지원하고 현원 최소기준 미만 시, 감소된 달부터 3개월까지만 지원하도록 하였다. 단, 현원 최소기준은 만 0세반 및 장애반은 2명, 만 3세반은 8명이다.

## 나. 서초구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사업<sup>10)</sup>

### 1) 서초구 보육 현황

서초구의 전반적인 보육 현황을 알아보았다. 서초구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이 민간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률은 평균 75.0%로 이용률이 높았고 가정어린이집이 이 가장 높은 88.8%였고 국공립어린이집은 79.5%, 법인·단체와 협동어린이집이 그 다음으로 74.3%였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7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어린이집 평균 아동 수는 43.9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서울시 서초구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어린이집 수      | 개소    | 179    | 88    | 0      | 1     | 28    | 39   | 2    | 21    |
|             | 비중    | 100.0  | 49.2  | 0.0    | 0.6   | 15.6  | 21.8 | 1.1  | 11.7  |
| 아동 수        | 정원(B) | 10,474 | 5,509 | 0      | 237   | 1,731 | 747  | 74   | 2,176 |
|             | 정원 비중 | 100.0  | 52.6  | 0.0    | 2.3   | 16.5  | 7.1  | 0.7  | 20.8  |
|             | 현원(C) | 7,851  | 4,382 | 0      | 176   | 1,255 | 663  | 55   | 1,320 |
|             | 현원 비중 | 100.0  | 55.8  | 0.0    | 2.2   | 16.0  | 8.4  | 0.7  | 16.8  |
|             | 이용률   | 75.0   | 79.5  | 0.0    | 74.3  | 72.5  | 88.8 | 74.3 | 60.7  |
| 어린이집1개당 아동수 |       | 43.9   | 49.8  | 0.0    | 176.0 | 44.8  | 17.0 | 27.5 | 62.9  |

주: 서초구의 보육교직원 현황 통계 부재로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와 보육교사 1인당 수는 산출하지 못했음.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보육아동 현황, 보육교직원 현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 2) 사업 개요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의 추진목표는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주요사업(유아전담,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보육품질 향상 및 학부모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고,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시작되어 2023년 2월까지이다.

추진방향으로서 먼저, 영아반(만 0세)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만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1:3 ⇒ 1:2)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정원

10) 서초구(2022). 「2022년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지원」 내부자료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20인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의 교사 비겸직 전환 사업에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은 유아반 보육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로서 유아전담 어린이집의 권역별 확대를 추진하고자 담임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만 3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1:15  $\Rightarrow$  1:10)을 축소하고자 담임 및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공유어린이집 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1:3  $\Rightarrow$  1:2) 축소를 위해 22년 3월 만 0세반 2반 이상과 현원 6명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 30개소에 보조교사 1명을 1,025,000원을 지원한다. 단, 4대 보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소요 예산은 369,000천원이다. 두 번째, 만 3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1:15  $\Rightarrow$  1:10) 축소를 위해 두 가지 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만 3세반 2개반 이상 운영(개별 공간에서 각 반 운영)을 하는 경우로 담임교사 인건비를 80% 지원하는데, 21년 3개소에서 22년 8개소이다. 소요 예산은 240,000천원이다. 한편, 지원Ⅱ 대상 및 내용을 살펴보면, 만 3세반 1개반 현원 11~15명 이상 운영하는 경우인데, 보조교사 1명 지원에 1,025,000원(단, 4대 보험 비용 미포함)이다. 현재 총 22개소인데, 소요예산은 270,600천원이다. 그리하여 서초 공유어린이집 사업의 영아와 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사업에 소요예산은 879,600천원으로 구비 100%지원이다. 이는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전체 사업 예산 1,341,120천원 중 교사 대 아동 비율 사업비용이다.

## 다. 동작구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sup>11)</sup>

### 1) 동작구 보육 현황

동작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사업을 소개하기 전에 동작구의 전반적인 보육 현황을 알아보았다. 동작구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이 민간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률은 평균 81.0%로 매우 높았고 협동어린이집이 가장 높은 85.7%, 국공립어린이집이 84.5%, 가정어린이집은 81.9% 순이었고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등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였다. 어린이집 평균 아동 수는 36.5명으로 나타났다.

11) 동작구(2022).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 사업」 내부자료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표 III-1-6〉 서울시 동작구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어린이집 수      | 개소    | 186   | 70    | 1      | 2     | 42    | 62    | 1    | 8    |
|             | 비중    | 100.0 | 37.6  | 0.5    | 1.1   | 22.6  | 33.3  | 0.5  | 4.3  |
| 아동 수        | 정원    | 8,377 | 4,327 | 63     | 101   | 2,346 | 1,172 | 49   | 319  |
|             | 정원 비중 | 100.0 | 51.7  | 0.8    | 1.2   | 28.0  | 14.0  | 0.6  | 3.8  |
|             | 현원    | 6,782 | 3,656 | 17     | 56    | 1,834 | 960   | 42   | 217  |
|             | 현원 비중 | 100.0 | 53.9  | 0.3    | 0.8   | 27.0  | 14.2  | 0.6  | 3.2  |
|             | 이용률   | 81.0  | 84.5  | 27.0   | 55.4  | 78.2  | 81.9  | 85.7 | 68.0 |
| 어린이집1개당 아동수 |       | 36.5  | 52.2  | 17.0   | 28.0  | 43.7  | 15.5  | 42.0 | 27.1 |

주: 동작구의 보육교직원 현황 통계 부재로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와 보육교사 1인당 수는 산출하지 못했음.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보육아동 현황, 보육교직원 현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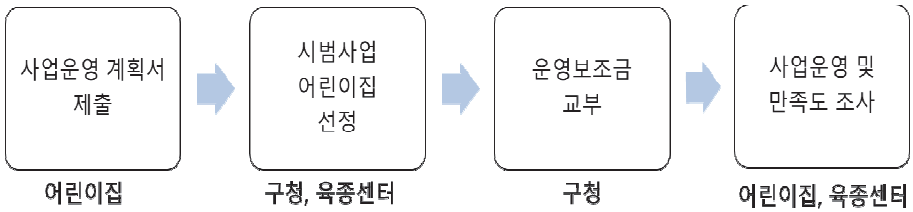
## 2) 사업 개요

동작구의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은 구내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로서 주요 내용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0세반과 과밀반인 3세반을 축소 운영하는 것이다. 추가 개설된 1개반 보육교사 인건비(기본급(보조급 차액), 제수당, 기관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3) 신청기준 및 절차

동작구는 영국의 교사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현행 한국의 보육교사 배치기준 보다 나은 0세 1:2, 3세 1:10 으로 비율을 선정하였다. 동작구는 2019년 2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4개소, 2021년에는 6개소, 2022년에는 8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개소당 1반에 대한 인건비 차액(0세반 20%, 3세반 70%)을 지원한다. 인건비는 평균 12호봉 기준으로 소요예산은 155,200천원으로 0세반 39,200원, 3세반 116,000천원이 소요되었다. 선정 시 수요조사 후 시설여건(보육실면적 영유아 1인당 2.64㎡ 이상 등) 및 사업 취지 적합 여부 등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I-1-1] 동작구 시범사업 추진절차



자료: 동작구(2019). 「2019년 추진계획」 내부자료의 내용을 발췌함.

한편, 동작구 시범사업의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7〉 동작구 시범사업 소요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 산식                              | 금액      |
|-----|---------------------------------|---------|
| 0세반 | 9,800천원(기본급 20%, 제수당, 기관부담금)×4  | 39,200  |
| 3세반 | 29,000천원(기본급 20%, 제수당, 기관부담금)×4 | 116,000 |

주: 보육교사 평균 12호봉 기준

자료: 동작구(2022).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 사업」 내부자료의 내용을 발췌함.

## 2.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sup>12)</sup>

### 가. 경기도 보육 현황

경기도의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소개하기 전 경기도의 전반적인 보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집의 이용률은 평균 79.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도내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어린이집 유형별 비중과는 달리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86.2%이고 가정어린이집이 그 다음으로 83.3%였다. 그 다음은 협동과 민간어린이집 순이었다. 한편, 어린이집 평균 아동 수는 34.5명, 보육교직원 1인 당 아동 수 3.8명, 보육교사 1인 당 아동 수는 5.1명으로 나타났다.

12) 경기도(2022). 2022년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p. 34-40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표 III-2-1〉 경기도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어린이집 수       | 개소    | 10,136  | 1,220  | 59     | 102   | 3,236   | 5,163  | 65    | 291    |
|              | 비중    | 100.0   | 12.0   | 0.6    | 1.0   | 31.9    | 50.9   | 0.6   | 2.9    |
| 아동 수         | 정원    | 441,927 | 81,686 | 4,960  | 8,339 | 226,315 | 96,942 | 1,974 | 21,711 |
|              | 정원 비중 | 100.0   | 18.5   | 1.1    | 1.9   | 51.2    | 21.9   | 0.4   | 4.9    |
|              | 현원    | 350,117 | 70,403 | 3,512  | 5,724 | 172,486 | 80,731 | 1,557 | 15,704 |
|              | 현원 비중 | 100.0   | 20.1   | 1.0    | 1.6   | 49.3    | 23.1   | 0.4   | 4.5    |
|              | 이용률   | 79.2    | 86.2   | 70.8   | 68.6  | 76.2    | 83.3   | 78.9  | 72.3   |
| 보육교직원 수      | 인원    | 92,320  | 16,062 | 797    | 1,252 | 36,998  | 31,806 | 420   | 4,985  |
|              | 비중    | 100.0   | 17.4   | 0.9    | 1.4   | 40.1    | 34.5   | 0.5   | 5.4    |
| 어린이집1개당 아동수  |       | 34.5    | 57.7   | 59.5   | 56.1  | 53.3    | 15.6   | 24.0  | 54.0   |
| 보육교직원1인당 아동수 |       | 3.8     | 4.4    | 4.4    | 4.6   | 4.7     | 2.5    | 3.7   | 3.2    |
| 보육교사1인당 아동수  |       | 5.1     | 1.0    | 0.1    | 0.1   | 2.5     | 1.2    | 0.0   | 0.2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보육아동 현황, 보육교직원 현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 나. 사업 개요

경기도 사업의 추진목표는 0세아 보육의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부응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8년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하는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였고 2022년 12월 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320개소(0, 1세반)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가정어린이집(정부 인건비 미지원)이며 공공형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만0세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 ⇒ 1:2로 하고 반별 개소수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 또한 만1세반의 경우에는 기존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5 ⇒ 1:3으로 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추가반 보육교사의 인건비로 1인당 월 2,000천원 지원하고 추가반 운영비로 1반당 월 600천원을 지원한다. 또한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으로 1인당 월 461천원, 그 외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을 지원한다. 총 소요예산은 28,858백만 원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된다.

## 다. 선정기준 및 절차

신청기준은 대략 다섯 가지로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평가등급이 A등급,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결과 A등급,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60% 이상(농어촌 50% 이상)으로 특히, 정원충족률은 2021년, 2022년 한시적용(기준: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 농어촌 50% 이상)이다. 또한 보호자와 담임교사 동의를 각각 80% 이상,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의 제외 대상은 공고일이 속한 월 전월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진행, 예정) 어린이집(원장), 또는 원장이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 운영자가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이다.

선정절차 및 내용을 보면 경기도청에서 물량 배정 및 지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에 신청 공고 및 심사를 거쳐 결과 보고를 받은 후 경기도청에서 지정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게 되며 세부선정 기준표와 자료에 근거한다.

세부 선정대상은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 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총 합계 점수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이다. 신규 지정 시 공고일 기준 신규 신청 해당 읍면동의 주민등록 통계의 0~1세 아동수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지정된 어린이집의 반 편성 기준을 알아보았다. 0세반은 1:2, 1세반 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 시 1:3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편성한다. 구체적으로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을 인정하고 혼합반(0세, 1세) 1개반으로 구성 가능하며, 1세반이 7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2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가능,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가능하다. 한편 야간연장반은 다른 어린이집 0세반, 1세반 영아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아동도 이용가능하고 0세반, 1세반 영아의 형제자매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원기준을 보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 받고 0세반 3명 이상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보육하여 추가반이 실제로 구성되는 월부터 지원하며 1세·2세 혼합반 구성 시 해당 월부터 1세 추가반의 지원을 중단하고, 1세반만으로 구성된



월부터 지원을 다시 하도록 한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중 아동의 퇴소 등으로 추가반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익월까지 재직 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야간연장반 이용 아동이 0세아 포함 총 4명 이상일 때 반드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1:5  $\Rightarrow$  1:3)하고 운영하며 0세아가 없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한다. 운영기준을 위반한 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재지원하며, 운영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의 경우 익월 및 익익월까지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3. 인천시의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sup>13)</sup>

#### 가. 인천시 보육 현황

인천시의 전반적인 보육현황을 보기 위해서 인천시의 어린이집 현황을 알아보았다. 인천시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비중이 높았고, 이용률은 평균 77.4%였다. 이용률은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순이었는데,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어린이집 평균 아동 수는 36.4명, 보육교직원 1인 당 아동 수 3.7명,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4.9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인천시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어린이집 수 | 개소    | 1,803  | 256    | 11     | 10    | 637    | 809    | 4    | 76    |
|        | 비중    | 100.0  | 14.2   | 0.6    | 0.6   | 35.3   | 44.9   | 0.2  | 4.2   |
| 아동 수   | 정원    | 84,877 | 14,823 | 1,106  | 990   | 47,352 | 15,306 | 180  | 5,120 |
|        | 정원 비중 | 100.0  | 17.5   | 1.3    | 1.2   | 55.8   | 18.0   | 0.2  | 6.0   |
|        | 현원    | 65,663 | 12,299 | 728    | 733   | 35,332 | 12,713 | 82   | 3,776 |
|        | 현원 비중 | 100.0  | 18.7   | 1.1    | 1.1   | 53.8   | 19.4   | 0.1  | 5.8   |
|        | 이용률   | 77.4   | 83.0   | 65.8   | 74.0  | 74.6   | 83.1   | 45.6 | 73.8  |

13) 인천광역시(2022). 「인천형 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계획」 내부자료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br>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보육<br>교직원 수  | 인원 | 17,563 | 3,247 | 189        | 172       | 7,791 | 4,977 | 25   | 1,162 |
|              | 비중 | 100.0  | 18.5  | 1.1        | 1.0       | 44.4  | 28.3  | 0.1  | 6.6   |
| 어린이집1개당 아동수  |    | 36.4   | 48.0  | 66.2       | 73.3      | 55.5  | 15.7  | 20.5 | 49.7  |
| 보육교직원1인당 아동수 |    | 3.7    | 3.8   | 3.9        | 4.3       | 4.5   | 2.6   | 3.3  | 3.2   |
| 보육교사1인당 아동수  |    | 4.9    | 0.9   | 0.1        | 0.1       | 2.7   | 1.0   | 0.0  | 0.3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보육아동 현황, 보육교직원 현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 나. 시범사업 개요

인천형 어린이집의 추진목표는 영아 대 교사의 비율을 낮춰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인천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영유아보육료 인상,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미수납보육료를 보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은 2016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22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도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영아 안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을 낮춰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업대상은 정원 39인 이하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21년도 176개소 선정하였고 2022년도 20개소 신규 선정 예정으로 196개소(0세, 1세반)인데 2022년 6월 기준으로 182개소라고 하였다. 영아반은 2개 이상인데, 만 0세 2개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1:3 ⇒ 1:2)은 71개소, 만 0세, 만 1세반(1:5 ⇒ 1:4)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25개소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2022년 6월 기준 만0세 2개반은 64개소, 만 0세, 만 1세반은 118개소로 영아 수 변동에 따른 개소수 변동이 있었다.

지원내용을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지원은 만 0세 2개반은 월 2,648천원이고, 만 0세 1개반, 1세반 1개반의 경우는 월 2,354천원이다. 그 외 현판 및 지정서 제작에 5,200천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데, 개소당 4,000천원을 배정하였다. 그리하여 총 소요예산은 5,979,600천원으로 도비 2,947,200천원(약 49.3%)와 시비 3,032,400천원(약 50.7%)로 지원하였다.

## 다. 선정기준 및 절차

2022년에는 매우 많은 선정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계획 공공일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이전 1년 이내 행정 처분(처벌절차) 등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이어야 한다. 둘째, 신청일 현재 평가 최상위등급 또는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이어야 한다. 셋째, 신청일 현재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 안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다. 넷째,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1년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60% 이상을 유지하고, 평균 현원이 1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어야 한다. 다섯째, 원장 및 대표자 1인 1시설 운영 우선이다. 여섯째, 신청일 어린이집의 현재 맞벌이 가정 현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비율, 어린이집 정보 공시,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 가입 등 다양한 기준이 있다.

한편, 제외대상도 언급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공고일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이전 1년 이내 행정 처분(처벌절차)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중인 어린이집과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정원 40인 이상 민간, 직장, 협동어린이집 등은 제외 대상이다.

선정절차 및 내용을 보면, 인천시청이 선정 계획 및 공고를 제시하고 구와 군에서 접수 및 선정 요건 확인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후 인천시청에서 2차 심사 및 선정을 하도록 하였다. 세부 선정기준으로 참여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세부 평가항목 선정기준에 의거 총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동점일 경우 1순위 인천형어린이집이 적은 구·군 소재인 경우, 2순위 1급 보육교사 비율, 3순위 보육교사 근속률, 4순위 맞벌이 가정 자녀 재원율, 5순위 기타 정책참여도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반 편성 및 지원기준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2개 반 이상 낮추어야 하는데, 0세반은 1:3  $\Rightarrow$  1:2, 1세반은 1:5  $\Rightarrow$  1:4, 혼합반은 대상이 아니다. 그리하여 0세반 2개반 이상 또는 0세반 1개반과 1세반으로 2개반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0세반 1개반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 영아반 담임교사는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도록 하며(단, 학기 초 2022년 3월~5월 3개월간 인천형반이 충원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담임점임을 제한적 허용) 기타반 중 1세반, 1~2세 혼합반 혹은 탄력반을 편성할 수 없다.

## 라.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인천형 어린이집의 성과는 네 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유아의 입장에서 개별적 영아의 특성을 존중하고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세세한 돌봄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전·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관리, 건강 및 안전관리, 보육과정, 보육품질, 보육환경의 점수들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둘째, 교사의 입장에서는 직무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는 낮아졌으며 보육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한다. 셋째, 부모의 입장에서는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인식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신뢰감을 보였고 이는 어린이집과 가정의 긴밀한 연계의 기반이 되었다. 실제 보육서비스의 질, 부모 만족도, 교사 만족도, 재정 운영에서 어린이집이 평가가 높았다. 특히, 인천형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계획되어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이예진·홍현재, 2020)

## 4. 대전시 0세 전용 어린이집 지원사업<sup>14)</sup>

### 가. 대전시 보육 현황

대전시의 전반적인 보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어린이집 현황을 알아보았다. 대전시는 가정어린이집이 비중(56.3%)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고, 그 다음이 민간어린이집(25.2%), 국공립어린이집(8.1%) 순이었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률은 평균 73.9%로 이용률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순이었는데,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어린이집 평균 아동 수는 28.3명, 보육교직원 1인 당 아동 수 3.1명,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4.2명이었다.

14) 대전광역시(2022). 「0세 전용 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내부자료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표 III-4-1〉 대전시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어린이집 수       | 개소    | 1,101  | 89    | 39     | 9     | 278    | 620    | 5    | 61    |
|              | 비중    | 100.0  | 8.1   | 3.5    | 0.8   | 25.2   | 56.3   | 0.5  | 5.5   |
| 아동 수         | 정원    | 42,171 | 5,104 | 3,593  | 502   | 15,943 | 11,869 | 187  | 4,973 |
|              | 정원 비중 | 100.0  | 12.1  | 8.5    | 1.2   | 37.8   | 28.1   | 0.4  | 11.8  |
|              | 현원    | 31,177 | 4,201 | 2,262  | 396   | 11,203 | 9,285  | 117  | 3,713 |
|              | 현원 비중 | 100.0  | 13.5  | 7.3    | 1.3   | 35.9   | 29.8   | 0.4  | 11.9  |
|              | 이용률   | 73.9   | 82.3  | 63.0   | 78.9  | 70.3   | 78.2   | 62.6 | 74.7  |
| 보육교직원 수      | 인원    | 10,109 | 1,242 | 606    | 115   | 2,986  | 3,930  | 41   | 1,189 |
|              | 비중    | 100.0  | 12.3  | 6.0    | 1.1   | 29.5   | 38.9   | 0.4  | 11.8  |
| 어린이집1개당 아동수  |       | 28.3   | 47.2  | 58.0   | 44.0  | 40.3   | 15.0   | 23.4 | 60.9  |
| 보육교직원1인당 아동수 |       | 3.1    | 3.4   | 3.7    | 3.4   | 3.8    | 2.4    | 2.9  | 3.1   |
| 보육교사1인당 아동수  |       | 4.2    | 0.6   | 0.3    | 0.1   | 1.5    | 1.2    | 0.0  | 0.5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보육아동 현황, 보육교직원 현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 나. 사업 개요

추진목표는 0세 전용 어린이집 건립 및 0세 전용 어린이집 선정·운영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대전형 영아 돌봄 환경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만0세 부모의 보육 욕구를 만족시키고 자영업과 맞벌이 가구의 육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이다.

추진방안으로는 0세 전용 어린이집 건립 및 선정하여 40개소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선정된 38개소에 2개소(신축 1개소, 증축 및 리모델링 1개소)를 더 건립하여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그 간의 현황을 보면, 2019년에 11개소가 지정되었고, 2020년에 9개소 지정, 2021년에 9개소 지정(1개소 개원 증축), 2022년에 11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1개소 개원 신축, 22.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는 0세반을 구성한 어린이집(직장 및 부모협동어린이집 제외)으로서 생후 3~8개월 이내 영아가 입소하고 있거나 입소 예정(2개월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만0세 39개반 39개소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2:3로 아동 3명에 교사 2명이 되도록 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0세반 교사 1명 추가지원(인건비, 처우개선 수당)하는 것으로

인건비의 경우 0세반 1인당 월 2,469,170원(4호봉 기준 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을 지원하고 운영비로 반별 월 10만원(0세아반 소모용품 기저귀 등, 친환경유기농 식재료)을 지원한다. 그 외 전담교사 처우 개선 수당도 재직 중인 교직원에 지급한다. 총 소요예산은 1,489,320천원으로 전액 시비이다

## 다. 선정기준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기준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생후 3~8개월 영아 입소 중이며 0세반으로 현원이 3명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현원이 2명이며 향후 2개월 이내 3~8개월 영아가 입소 예정인 경우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간 내의 평가인증 등급이 A등급 또는 90점 이상인 경우, 셋째, 공고일 기준 정원 충족률 70% 이상 유지하고 넷째, 공고일 기준 어린이집 운영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관리시스템(행정회계) 등록 중인 어린이집이 이에 해당된다.

사업신청의 제외대상은 공고일이 속한 월부터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진행 중) 어린이집과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다.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전시에서 계획수립 후 공고 이후 접수한 대상을 자치구에서 신청대상의 적격 여부 확인 및 관리시스템(행정회계) 사용기간, 0세아 보육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확인을 검토하여 자치구 배정 개소 수 대비 2배수를 추천한다. 이후 대전시는 0세아반 현황 및 사전적격심사표, 운영계획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거쳐 사전적격(60%) + 현장실사(40%)로 총 75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심사한 후 선정한다. 선정기간은 보통 3년으로 한다.

반 편성 및 지원기준은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2:3으로 조정하고 교사 인건비를 0세 3명을 실제 보육하는 월에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생후 3개월에서 8개월 영유아가 입소 후 18개월까지이며, 생후 3~8개월 영아 퇴소 후 익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 외 0세아 전담교사가 0세 전용반 1년 미만 근무 후 다른 반 이동할 경우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은 반납하도록 한다.

## 5. 광양시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사업<sup>15)</sup>

### 가. 광양시 보육 현황

광양시의 전반적인 보육 현황을 알아보았다. 광양시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비중이 높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율도 꽤 좋은 수준이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률은 평균 71.6%로 법인·단체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높은 각각 83.5%, 82.0%로 나타났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순이었다.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어린이집의 평균 아동 수는 44.2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전라남도 광양시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br>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어린이집<br>수   | 개소    | 117   | 29    | 9          | 1         | 44    | 32   | 0   | 2     |
|             | 비중    | 100.0 | 24.8  | 7.7        | 0.9       | 37.6  | 27.4 | 0.0 | 1.7   |
| 아동 수        | 정원    | 7,221 | 1,893 | 921        | 79        | 3,482 | 530  | 0   | 316   |
|             | 정원 비중 | 100.0 | 26.2  | 12.8       | 1.1       | 48.2  | 7.3  | 0.0 | 4.4   |
|             | 현원    | 5,168 | 1,389 | 559        | 66        | 2,545 | 377  | 0   | 259   |
|             | 현원 비중 | 100.0 | 26.9  | 10.8       | 1.3       | 49.2  | 7.3  | 0.0 | 5.0   |
|             | 이용률   | 71.6  | 73.4  | 60.7       | 83.5      | 73.1  | 71.1 | 0.0 | 82.0  |
| 어린이집1개당 아동수 |       | 44.2  | 47.9  | 62.1       | 66.0      | 57.8  | 11.8 | 0.0 | 129.5 |

주: 광양시의 보육교직원 현황 통계 부재로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와 보육교사 1인당 수는 산출하지 못했음.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보육아동 현황, 보육교직원 현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 나. 사업 개요

광양시 사업의 추진목표는 0세아 및 1세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여 영아 밀착 보육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2020년 3월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2월까지 예정되어 있다. 2022년(3년차)에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세, 1세 반 정원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방안으로서 어린이집 담임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영아반의 정원 조정을 우

15) 광양시(2022).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계획」 내부자료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선 시행한 후 유아반까지 연차적 전면 시행하되, 정부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개선’ 시기 및 방침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87개소 275개반(장애아반, 만 0세반, 만 1세반)으로 장애아반(1:3  $\Rightarrow$  1:2), 만 0세반(1:3  $\Rightarrow$  1:2)은 72개소 125개반, 만 1세반(1:5  $\Rightarrow$  1:4)은 78개소 150개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현재 85개소 304개반이 참여하고 있는데, 장애아반은 없고, 만 0세반 149개반, 만 1세반 155개반이 참여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시설의 경우, 해당 반 담임교사 1인당 보육료 지원단가는 장애아반은 532천원, 만 0세반은 499천원, 만 1세반은 439천원이다. 미지원시설의 경우는 장애아반은 1,154천원, 만 0세반은 1,069천원, 만 1세반은 749천원이다. 그리하여 총 소요예산은 3,238,900천원으로 전액 시비이다.

## 다. 선정기준 및 절차

광양시 시범사업의 신청기준은 전체 어린이집(단, 희망 시설에 한함)이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형 구분 없이 2022. 3. 10.자로 구성된 반의 정원 조정이 이루어진다. 3월부터 보조금 신청일(12일) 전까지 반을 구성하고 매월 반 추가 또는 감소 시 반드시 보고 후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선정의 제외 대상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 정원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정원 19인 이하 어린이집 중 3월 정원충족률이 85% 이상인 시설, 공공형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등 신규지정을 준비 중인 시설 등이다.

지원절차 및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매월 12일까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어린이집에 매월 25일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광양시 전체 어린이집 113개소 대상(어린이집 사정 불가피한 경우 제외)이다. 19년도 사업 시작 시 기준, 20년, 21년도 선정 우선순위를 1순위(가정), 2순위(민간), 3순위(국공립 등)로 두었으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22년도 순위를 변경하였다.

반 편성 및 지원기준은 지원 반 수만큼 총 정원이 감원한 경우, 0세반, 1세반 전체를 대상으로 반 정원을 조정하거나 0세반은 현원 2명, 1세반 현원 4명으로 조정을 시작한 경우이다. 0세반, 1세반 전체를 대상으로 반 정원을 조정한 어린이집



은 0세, 1세 두 연령 모두 반 정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0세반 미참여, 1세반 반 정원 조정에 참여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0세반은 현원 2명, 1세반 현원 4명으로 조정을 시작한 경우는 0세반 현원 2명까지 지원, 1세반 현원 3명까지 지원한다.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감소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의 중간퇴소로 반 유지가 어렵고 혼합반 편성이 불가능하면 해당반은 추가모집 시까지 반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라.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광양시 반 조정 인건비 지원사업의 성과는 전체적인 만족도에서 알 수 있다. 총 점 7점 만점에 원장 6.11점, 교사 6.38점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교사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은 보육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원장과 교사의 시범사업 전후 평가를 보면 행정업무의 소요 시간이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많은데 이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안전관리, 부모와 소통, 아이의 건강 관리, 기관 운영에의 신뢰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임동호·박경아, 2020). 광양시의 성과 분석은 사전·사후 조사 설계에 의한 진행을 평가라기보다는 사후 조사에 의한 성과 보고 성격을 가질 수 있어 한계를 지니지만, 현장 방문과 인터뷰에서의 원장들과 교사들의 반응은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 6. 진주시 구슬모음어린이집 사업<sup>16)</sup>

### 가. 진주시 보육 현황

진주시의 전반적인 보육 현황을 알아보았다. 진주시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비중이 높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률은 평균 72.4%로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순이었는데,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어린이집이 다른

16) 진주시(2022). 「구슬모음어린이집 추진 계획」 내부자료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약간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진주시의 어린이집 1개당 아동수는 38.6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6-1〉 경상남도 진주시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br>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어린이집<br>수   | 개소    | 241    | 23    | 7          | 3         | 110   | 91    | 0   | 7    |
|             | 비중    | 100.0  | 9.5   | 2.9        | 1.2       | 45.6  | 37.8  | 0.0 | 2.9  |
| 아동 수        | 정원(B) | 12,840 | 1,557 | 593        | 224       | 8,050 | 1,737 | 0   | 679  |
|             | 정원 비중 | 100.0  | 12.1  | 4.6        | 1.7       | 62.7  | 13.5  | 0.0 | 5.3  |
|             | 현원(C) | 9,302  | 1,221 | 411        | 175       | 5,602 | 1,359 | 0   | 534  |
|             | 현원 비중 | 100.0  | 13.1  | 4.4        | 1.9       | 60.2  | 14.6  | 0.0 | 5.7  |
|             | 이용률   | 72.4   | 78.4  | 69.3       | 78.1      | 69.6  | 78.2  | 0.0 | 78.6 |
| 어린이집1개당 아동수 |       | 38.6   | 53.1  | 58.7       | 58.3      | 50.9  | 14.9  | 0.0 | 76.3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보육아동 현황, 보육교직원 현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 나. 사업 개요

구슬모음어린이집 사업의 추진목표는 진주시 원도심(중앙, 성북, 상봉, 천정동)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묶어 진주형 공유어린이집을 추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로 이용률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2년 3월에 시작하여 2023년 2월까지이다.

사업의 추진방안은 구슬모음어린이집을 구성하는 것으로 원도심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인근 10분 이내) 4개(상봉, 수정, 옥봉, 칠암어린이집)를 묶어 1개의 공유어린이집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장 회의를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이를 공유하며 교사 간 자율 학습 모임도 한다. 공동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여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부모교육도 지원하여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간 입소 조정, 교사 대 돌봄 아동 비율 축소 등을 도모한다.

교사 대 돌봄 아동 비율 축소 대상은 진주시 국공립 상봉, 수정, 옥봉, 칠암어린이집 4개소(7개반)로 운영하도록 하고 장애아반 1개소 2개반을 1:3 ⇒ 1:2로, 만 0세반 1개소 1개반도 1:3 ⇒ 1:2로, 만 3세반 3개소 4개반은 1:15 ⇒ 1:10으로

구성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반별 보조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어린이집당 지원기준 충족 시 반 구분 없이 최대 2명까지 지원하고 월 인건비 1,025,000원, 사용자 부담금 56,220원을 지원한다. 기준 미충족 시는 미충족하는 달 포함하여 2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총 소요예산은 143,000천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 다. 신청기준 및 절차

구슬모음어린이집은 진주시 원도심의 국공립 어린이집 상봉, 수정, 옥봉, 칠암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절차는 진주시가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하여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구슬모음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반과 장애아반 각 1:2, 만 3세반은 1:10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0세반, 장애반 2개반(정원 6명) 운영 시에는 담임교사 2명과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한다. 3세반 1개반(정원 15명)의 현원이 10명 이상 시설인 경우는 담임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하도록 한다.

## 7. 소결

본 장에서는 지자체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사업들의 개요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지자체의 사업들의 주요 내용과 유사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자체의 사업들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사업 대부분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둘째,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주요 사업 대상의 연령은 0세가 공통적이라는 점이다. 지자체는 0세, 장애아, 1세, 3세 등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연령에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모든 지자체가 0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0세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축소되어야 하는 공통의 인식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셋째,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선정기준의 여부와 이에 대한 선정 심사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 공통적인 선정기준으로 평가 등급 또는 점수와 정원 충족률 및 어린이집 운영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어떤 지자체는 대상을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자 모두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시범사업 진행 시의 선정 기준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동점일 경우 무엇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의 두 가지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둘 다를 지원하거나 그 외 기타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건비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데, 담임교사나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목적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지원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다섯째, 예산의 근거와 적정성이다. 많은 지자체가 자체 시비나 구비 등으로 전액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도비와 매칭하는 지자체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과 내용이 다르므로 지원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앞서 논한 지원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지원 대상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표 III-7-1〉 국내 지자체 시범사업 비교표

| 구분    | 서울시                                                                                | 인천시                                                                                                                    | 광양시                                                                  | 대전시                                                                                 | 경기도                                                                                                                                       | 노원구                                                                                       | 서초구                                              | 동작구                                                                         | 진주시                                |
|-------|------------------------------------------------------------------------------------|------------------------------------------------------------------------------------------------------------------------|----------------------------------------------------------------------|-------------------------------------------------------------------------------------|-------------------------------------------------------------------------------------------------------------------------------------------|-------------------------------------------------------------------------------------------|--------------------------------------------------|-----------------------------------------------------------------------------|------------------------------------|
| 사업규모  | 160개소                                                                              | 196개소                                                                                                                  | 87개소                                                                 | 40개소                                                                                | 320개소                                                                                                                                     | 97개소                                                                                      | 60개소                                             | 8개소                                                                         | 4개소                                |
| 참여유형  | 국공립 및<br>서울형<br>민간·가정                                                              | 민간·가정<br>(정원 39인<br>이하)                                                                                                | 전체                                                                   | 국공립, 민간,<br>가정                                                                      | 가정<br>(정부 안전비<br>미지원)                                                                                                                     | 국공립<br>(사회복지법인)<br>민간, 가정                                                                 | 국공립, 민간,<br>가정                                   | 국공립                                                                         | 원도심 국공립                            |
| 아동 비율 | 0세반(1:2)<br>3세반(1:10)                                                              | 0세반(1:2)<br>1세반(1:4)                                                                                                   | 장애아반(1:2)<br>0세반(1:2)<br>1세반(1:4)                                    | 0세반(2:3)                                                                            | 0세반(1:2)<br>1세반(1:3)                                                                                                                      | 장애아반(1:2)<br>0세반(1:2)<br>3세반(1:12)                                                        | 0세반(1:2)<br>3세반(1:10)                            | 0세반(1:2)<br>3세반(1:10)                                                       | 장애아반(1:2)<br>0세반(1:2)<br>3세반(1:10) |
| 신창기준  | 1. 시범사업<br>기준<br>2. 평가등급<br>A, B 또는<br>평가인증<br>80점 이상<br>3. 법령 위반<br>행정처분<br>없는 기관 | 1. 1년 이내<br>법령 위반<br>행정 처분<br>없는 기관<br>2. 평가인증<br>90점 이상<br>3. 정원<br>총족률80%<br>이상, 현원<br>10명 이상<br>4. 맞벌이 가정<br>30% 이상 | 1. 광양시 전체<br>어린이집<br>113개소<br>대상<br>2. 어린이집<br>사정으로<br>불가피한<br>경우 제외 | 1. 평가인증 A<br>또는 90점<br>이상<br>2. 정원 총족률<br>70% 이상<br>유지<br>3. 어린이집<br>운영 기간<br>1년 이상 | 1. 평가인증,<br>평가 등급<br>A<br>2. 정원 총족률<br>60% 이상<br>(농어촌<br>50% 이상)<br>3. 보호자,<br>담임교사<br>동의를 각각<br>80% 이상<br>4. 영유아<br>보육법령,<br>지침 따라<br>운영 | 1. 정원 총족률<br>60% 이상<br>2. 평가 등급<br>B 이상 또는<br>평가인증<br>90점 이상<br>3. 법령 위반<br>행정처분<br>없는 기관 | 1. 기 지원시설<br>(‘21년)<br>2. 반 개소수<br>3. 현원 많은<br>순 | 수요조사 후<br>시설여건(보육<br>실 면적 영유아<br>1인당 2.64㎡<br>이상 등) 및<br>사업추진 적합<br>여부 등 고려 | 진주시 원도심<br>국공립<br>어린이집<br>4개소 대상   |
| 지원기준  | 1. 연령별<br>신규반 편성<br>2. 연령별 현원                                                      | 1. 영아반<br>2개반 이상<br>편성                                                                                                 | 1. 지원 반<br>수만큼 총<br>정원 감원                                            | 1. 0세아<br>전용반 교사<br>추가지원                                                            | 1. 0세반(3명<br>이상) 또는<br>1세반 (4명<br>이상)                                                                                                     | 1. 0세반,<br>장애아반,<br>3세반 아동                                                                | 1. 만 0세반<br>27개반<br>이상+현원                        | 1. 0세반<br>개소당 1반<br>2. 3세반                                                  | 1. 어린이집당<br>반 구분없이<br>최대 2명        |

| 구분            | 서울시                                                                                     | 인천시                                                           | 광양시                                                                                                     | 대전시                                                             | 경기도                                                                                       | 노원구                                                                                      | 서초구                                                                    | 동작구                                        | 진주시                                                                                        |
|---------------|-----------------------------------------------------------------------------------------|---------------------------------------------------------------|---------------------------------------------------------------------------------------------------------|-----------------------------------------------------------------|-------------------------------------------------------------------------------------------|------------------------------------------------------------------------------------------|------------------------------------------------------------------------|--------------------------------------------|--------------------------------------------------------------------------------------------|
|               | 기준<br>• 0세반 또는 0세~1세 혼합반<br>2개반(6명)<br>이상 운영<br>• 3세반 또는 3세~4세 혼합반<br>1개반(15명)<br>이상 운영 | • 0세 2개반 이상<br>• 0세 1개반과 1세 1개반으로 2개반 이상                      | 2. 0세, 1세반 전체 대상 반 정원 조정<br>3. 0세반 (현원2명), 1세반(현원 4명)으로 조정                                              | 2. 교사 대 아동 비율 2:3                                               | 이상)<br>추가반 구성<br>2. 아간 이용 아동 4명 이상 비율 1:3                                                 | 비율 축소<br>2. 혼합 연령 불가(장애아 반 제외), 동일 보육실 내 동일 연령만 구성<br>3. 반운영비 지원시설의 경우 총 정원 축소 유지        | 6명 이상 어린이집<br>2. 1) 만3세반 2개반 이상 운영<br>2) 만3세반 1개반 현원 11~15명 운영         | 개소당 1반                                     | 지원                                                                                         |
| 지원내용          | 인건비                                                                                     | 운영비(인건비) 및 환경개선비                                              | 운영비 (보육료)                                                                                               | 인건비 및 운영비                                                       | 인건비 및 운영비                                                                                 | 운영비 (보육료)                                                                                | 인건비                                                                    | 인건비(12호봉 기준)                               | 인건비 (보조교사)                                                                                 |
| 지원단가 (단위: 천원) | • 인건비 - 교사 호봉별 지원(7호봉 기준)<br>• 환경개선비 - 개소별 (4,000)                                      | • 운영비 - 0세반 (1,324)<br>- 1세반 (1,030)<br>• 환경개선비 - 개소별 (4,000) | • 지원 - 0세반(499)<br>- 1세반(439)<br>- 장애아반 (532)<br>• 미지원<br>- 0세반 (1,069)<br>- 1세반(749)<br>- 장애아반 (1,154) | • 인건비 - 4호봉 기준 (2,469)<br>• 운영비 - 기저귀, 유아용 식재료(10) 등<br>• 차우개선수 | • 인건비 - 0세반 (2,000)<br>- 1세반 (2,000)<br>• 운영비 - 0세반(600)<br>- 1세반(600)<br>• 조리원 인건비 - 개소별 | • 지원 - 0세반(490)<br>- 3세반(840)<br>- 장애아반 (530)<br>• 미지원<br>- 0세반 (1,060)<br>- 3세반 (1,350) | • 지원 - 0세반 (1,025)<br>보조교사 1명 지원<br>- 3세반 1 유형 (담당교사 인건비 80%)<br>- 3세반 | • 지원 - 0세반 (9,800) 4명<br>- 3세반 (29,000) 4명 | • 인건비 - 0세반 (1,025)<br>- 3세반 (1,025)<br>- 장애아반 (1,025)<br>• 사용자 부담금 - 0세반(56)<br>- 3세반(56) |

| 구분               | 서울시                    | 인천시                              | 광양시                    | 대전시                    | 경기도                                | 노원구                    | 서초구                              | 동작구       | 진주시                  |
|------------------|------------------------|----------------------------------|------------------------|------------------------|------------------------------------|------------------------|----------------------------------|-----------|----------------------|
|                  |                        |                                  |                        |                        | (462)                              |                        | II유형<br>(1,025)<br>보조교사<br>1명 지원 |           | - 장애아반<br>(56)       |
| 소요예산<br>(단위: 천원) | 6,516,000<br>(시비 100%) | 5,979,600<br>(도비 50%,<br>시비 50%) | 3,238,900<br>(시비 100%) | 1,489,320<br>(시비 100%) | 28,858,000<br>(도비 30%,<br>시군비 70%) | 1,045,690<br>(구비 100%) | 879,600<br>(구비 100%)             | 1,667,600 | 143,000<br>(시비 100%) |

자료: 1) 서울특별시(202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확대」 내부자료.  
2) 인천광역시(2022). 「인천형 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계획」 내부자료.  
3) 광양시(2022).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계획」 내부자료.  
4) 대전광역시(2022). 「0세 전용 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내부자료.  
5) 경기도(2022). 2022년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p. 34-40.  
6) 노원구(2021). 「노원 안심어린이집 선정·운영 추진계획」 내부자료.  
7) 서초구(2022). 「2022년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지원」 내부자료.  
8) 동작구(2022).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 사업」 내부자료.  
9) 진주시(2022). 「구슬모음어린이집 추진 계획」 내부자료.





# IV

##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인식과 요구

- 01 보육 현장에 대한 인식
- 0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
- 03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
- 04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의 효과 인식
- 05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모형개발
- 06 소결



## IV.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인식과 요구

본 장에서는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보육의 현장에 대한 인식,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에 대한 필요성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에 대해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 1. 보육 현장에 대한 인식

#### 가. 아이들과 부모들의 변화

전문가들과 현장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이전과 비교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등원하지만 이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한다. 부모들은 이전에 비하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이들의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한 양육조차 어린이집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 사항이 늘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예전보다 아이들의 발달이 더딘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마스크며 뭐며 들고 보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발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통도 잘 안 되고 아이들의 기본 생활 습관도 잘 안 들어져 있고...(육아종합지원센터장 A)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거를 저희 어머님들도 사실 그렇게 크게 와 닿지를 않으시고 와 닿을 때가 뭐냐면 초등학교 보낼 때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들만 보내야 되니까 불안하셔가지고 그때만 하시지 그전에는 선생님이 그냥 해 주셨으면 아예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사업 미참여 교사 D)

아무래도 원래 같은 경우에는 더더 너무 울어서 1 대 1로 가야 될 상황이니깐요. 네 근데 또 부모님의 성향은 어린이집에서는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본인들도 그 아기 2명이 6월 7월달까지 적응을 했는데 이제 부모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 이렇게 친구들도 집에 데리고 와서 조금 또래 친구들도 좀 불러다가 이렇게 조금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우리 누구누구처럼 이럴 때는 조금 해보셔요 하지만.(사업 미참여 원장 F)

부모님들은요 제 기준에서는 하루 종일 아이를 보지 못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지내는 것을 보고 그 시간에 시간적인 베네핏을 가진 엄마들은... 기본적으로는 코로나가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애를 데리고 있어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해서 어떻게든 어린이집 가려고.(사업 미참여 원장 J)

교사도 투입이 돼야 되고 아이도 줄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시대가 변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의 성향도 달라지고...가족 형태도 너무 다르고...이혼가정, 다문화 가정....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요거가 10년 사이에 네 굉장히 선생님 디테일해졌고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그냥 저희가 긍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해 그냥 우리를 너무 믿는다고 생각하자 그냥 우리가 베테랑이라서 그냥 우리를 의지한다고 생각하자 그거 제가 그냥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에요.(사업 미참여 교사 E)

엄마들이 어떻게 선생님과 관계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 교육도 없었고 그리고 포스터는 나오죠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포스터가 작년 재작년 계속 시군구에 만들어져가지고 앞에 붙여 있긴 해요.(사업 미참여 교사 F)

부모님들과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발달시켜 나가야 하는데,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많으면서도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마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였다. 그리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혼동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저희가 어머니 가정에서 먼저 해주셔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일정 부분 양육을 이제 분담하자는 운영 방식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시면 그때 우리는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우리가 중요한 입자는 아니다. 그러니 함께하자 이건데.....아예 시도를 안 하세요...(사업 미참여 원장 J)

선생님 애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 이거 괜찮으세요/. 네 아이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해요. /어머니 이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아니에요/. 아이가 해야 되는 거고 유치원 가면 신발 신는 거 이런 거 도와주지 않아서 어머니 여기서 연습하고 있어요.(사업 미참여 교사 F)

본인이 기다려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신발을 저희가 제일 많이 부모님들한테 있는 말이 기다려주세요. 애가 신발 10분씩 할 수도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차라리 마음 편하게 ... 그냥 조금 일찍 나오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1차적인 게 기다리는 게 안 되시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개념보다는 너는 너 나는 나의 개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걸 침범받는 거 자체가 너무 싫으신 거예요.(사업 미참여 원장 J)

## 나. 질 높은 보육 제공

전문가들과 현장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어린이집의 보육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유아의 교육에도 보육이 전제 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정된 누리과정에서 아이, 놀이 중심의 보육을 강조하면서 더욱 더 아이에 대한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고 아동 인권이 바탕이 되는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생각했을 때 케어와 교육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하고 특히나 교육도 우리가 집단 교육이 아니라 놀이 중심이라면서요. 아이의 개별 특성을 맞추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연령적인 특성을 봤을 때 교사 한 명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누리 과정을 운영할 때 누리 보조를 넣는 것도 이런 이론적 근거로 했던 건데.....(아동학과 교수 A)

저는 아동 권리 존중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것의 첫 번째 원칙이 학대가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보육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확실한 이론적 근거는 없다고 봐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지금 현재 존중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환경이 아니잖아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건 개개인의 아동의 욕구를 일단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아동학과 교수 A)

아이 중심으로 봤을 때 놀이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낮아야 되지만, 놀이 이전에 개인의 일상생활로 기본적인 신체적인 욕구라든지 심리적인 욕구가 해결돼야 잘 놀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놀아요. 이게 해결이 돼야 놀면서 원가를 배우죠. 근데 지금 원가 불편하고 아니면 너무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놀 수는 없거든요.(아동학과 교수 A)

아이가 중심한 보육에 있어 교사와 학부모의 파트너십은 필수요소이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이들의 경험을 확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부모와 어린이집의 보육에 대한 방향성이 같지 않다면 어린이집 운영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가 놀이 과정에서 아이 중심 놀이 중심이라고 그래서 예전 같은 액티비티보다는 아이들의 관심사를 해서 하게 되잖아요. 관계 중심이 어렵기는 어려워요...애들의 개별성 욕구를 따라가기가 사실....그리고 일단 저희는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학부모도 사실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 사항을 아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가 활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업 미참여 교사 D)

15명 되는 아이들은 선생님 혼자서 이제 특히 이제 신발을 신고 벗으려면 실내에 바깥 놀이를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신발도 못 신고 있는 애 하나에 매달리고 있다 보면은 먼저 신

고 나가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뛰어 나가는 애들이지 그것 때문에도 이제 좀 걱정이 되  
게...(사업 미참여 교사 D)

한편, 교사들은 아이들 관찰일지 등 각종 서류 작성을 비롯하여 아이들 돌보는  
것 이외의 업무가 과중하다. 특히 학기 초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아들과, 유아  
혼합반의 경우 여러 연령의 아이들을 한 반에서 상대해야 하는 등 많은 요소들로  
교사들의 피로도가 증가하며 때로는 이들을 번아웃에 이르게 한다.

솔직히 만 0세 반 선생님들이 육체적으로 정말 많이 힘드시거든요. 만 1~2세 반 선생님들  
은 좀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만 0세반은) 많이 안아주고 보채니까 아이들이 아직 언어 표  
현이 안 되니까.....그리고 한 아이한테 필요한 서류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처음에 오면 신임  
적응 일지 써야 되죠. 매달 관찰 일지 써야 되죠....(사업 참여 교사 A)

다른 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학기 초 같은 3명이 다 물어버리면 앞으로 안고 뒤로  
안고 약간 앞으로 두며 안고 뒤로 업어서 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  
더라고요....(사업 미참여 교사 D)

만 3세를 하게 된다면 지금 만 3세 3세 오히려 7세까지 전체 혼합을 하는 민간 어린이집  
제가 아는 가정은 모르겠지만 민간 어린이집에서 제 주변에는 3 4 5세 반을 그전에는 67세  
반 이렇게 됐다고 치지만 지금은 3 4 5세 반이 혼합이 엄청 많아요.(사업 미참여 원장 F)

일단 아이들이 예민하고 까다로워졌고 개별적인 욕구가 높아지는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  
에 적절한 교사 대 아동의 비율로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동학  
대 예방이 안 된다고 봐요. 아동 학대하는 교사가 처음부터 학대했을까? 물론 그런 교사도  
있지만 계속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방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도 안 통하는데 내가 지쳤는데 너무 지쳐서 몸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 방임도  
학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번 아웃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예요.(아동학과 교수 A)

3살 때부터 1대 15, 4세 1대 20.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아무리 만 3세지만 교사 한 명  
이 15명을 본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만 3세가 0세보다 비교가 큰 애지만, 만 3세도 굉장히 어린 연령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보  
육과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개별적인 케어와 보육이 어떻게 교사 1명이 15명을 해요. 왜냐  
하면 이게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영유아다 보니까 개인적인 욕구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아동학과 교수 A)

보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적인 보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아이와의 상호  
작용을 높일 수 있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저귀 가는 것도 한 명당 따지면 아이들한테 원래 이제 평가제 같은 경우도 기저귀를 그냥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갈아줄 때도 아이랑 눈만 지침을 해야 되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소독도 해야 되고 뭐를 하다 보면 한 명한테 들어가는 시간이 적어도 좀 느슨하게 한다고 아니까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1분 30초에서 거의 2분 정도 막 이렇게 되고 중간에 또 불러서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을 하다 보면...영아반은 돌발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세 명이랑 한 사람당 3명 한 사람당 2명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원가 개월 수 차이 나는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놀이터를 나가도 다섯 명은 한 사람이 데리고 다니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잡더라도 짝수가 맞으면 좋겠다.(사업 미참여 교사 D)

코로나 시기에요...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일단 아이가 뭘 요구하는 지나 이런 것도 되게 눈에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이를 관찰하는 좀 바라보는 시선이 더 세밀해지는 건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다 왔을 경우에 다른 결석 같은 아이들보다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의 행동이 되게 눈에 잘 들어오고...(사업 미참여 교사 D)

## 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

### 가.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질 제고와 빈도 증가

전문가들과 교사들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낮을수록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지고 빈도를 증가한다는 데 동의한다. 특히, 아동과의 스킨십, 눈맞춤 등의 빈도가 높아져 부모 및 교사와 아동 간의 애착관계에 기여하고 아동의 놀이 형태에도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를 찾아봤는데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낮을수록 아이의 놀이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으면 아이들이 주로 혼자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놀지 않는 행동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떨어지면, 유아 아이들끼리 놀이한다거나 교사랑 놀이하는 상호작용 빈도가 올라가고 놀이에 참여하는 빈도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교육의 질이라고 질적으로 많이 이거를 측정을 하잖아요.(아동학과 교수 A)

영아 특히 0세인 경우에는 놀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케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이의 상호작용보다는 케어의 어떤 한계에서도 교사가 훨씬 더....한 명 기저귀 갈고 있을 때, 두 명의 아이를 선생님이 눈으로 보면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낫잖아요. 특히, 영아는 개월수에 따라 너무 다른데 근데 그 개월 수에 갑자기 다 넣어 놓으니까 4개월에 들어오고 갑자기 12개월, 그러면 이 선생님이 부담이 훨씬 커지는 연령별로... 이제 저희도 맞춘다고 맞추는데 잘 안 돼요.(사업 미참여 원장 J)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줘야지만 되는 또 이유가 있다면...아동 발달을 유심히 잘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 아동에 대해서 놀이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아주 짧게 놀이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짧은 놀이 순간에도 저희가 어떻게 이 아이가 하겠지만 그 놀이에 저희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반응 시간이 3분인 거랑 10분인 거랑은 다르죠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사업 미참여 원장 J)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교사들의 비율이 아동 비율이 적어서 뭔가 가정과 소통이 잘 되고 좀 아이의 문제점을 좀 빨리 파악해서 그다음 연령으로 올려주고 이런다면 조금 그 다음 연령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파악을 해야 되는 애들 숫자가 적어지고....(사업 미참여 교사 E)

확실히 아이가 비율이 줄어든다면 교사들이 스킨십이든 말이든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적응 속도도 빨라지고 애착 형성도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조금 더 안심하고 적응 기간도 줄일 수도 있고 사실 연장 보육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왜냐면 완전히 육아휴직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라서 0세를 보내시면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거에 맞춰서 빨리 줄일 수가 있었어요. 적응 기간을 그래서 조금 만족도가 높으셨어요..(사업 미참여 교사 E)

## 나. 안전과 개별적 요구에의 부응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낮아진다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발달이 지체되거나 경계선상의 아이들을 보살피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한 환경을 토대로 아이 중심의 보육 과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근거가 위험 상황에서의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한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면 다른 거는 다 처치하고서라도 저는 사실은 문제 행동 부정 행동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확실히 10년 전보다 지금 아이들이 발달적으로 염려가 되는 아이들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경계선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계속 보고하고 있어서 그걸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아동학과 교수 A)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떤 여러 가지 지연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어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아동들이 또 낮아지는 게 필요하다 현장....(사업 미참여 원장 J)

안전사고는 안전사고는 이제 그냥 기본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아동들 비율이 축소가 돼야만...보면은 표준 보육 과정의 놀이 중심 아동 중심 하잖아요. 그런데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이 이 환경에서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사업 미참여 원장 G)



이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분명히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2020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신입 원아 적응을 저희들이 항상 10명 기존 애기 10명을 이제 지금 받고 시작하는데 이제 0세 3명은 신규에 0세에서 3명은 기존 재원했으니까 1세 7명 신규 영아 3명 기존 이제 저기 1세는 그대로 100% 이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제 1대 7로 하더라도 적응은 하는데 이거 뭐지 원래보다 너무 힘들었어요.(사업 미참여 원장 F)

90년대 미국 연수 갔는데 너무 환상적인 교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너무 부끄럽지만 너희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근거는 뭐니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1인 교사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런데 이거 되게 모호해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났을 때 대피시킬 수 있는 최대 인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그들이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유아교육과 교수 B)

교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 교사들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교사 한 명이 받을 혼자 책임을 지기보다는 교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보조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 수를 줄이면 1인당 공간이 늘어난다거나 아동 수를 조금 줄이면 교사의 근무 여건이 확 좋아져서 교사가 그걸 느낀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구해야 된다 설계를 1인당 공간이 늘 어가고 집단 크기가 줄고 교사의 근무 여건이 확 개선돼서 그가 상호작용해야 될 대상이 줄잖아요. 요것을 한두 명 맞췄을 때(비율조정을 했을 때) 다른 모든 질에 미치는 영향이 순차적으로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아동심리학과 교수 C)

부모랑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 잘 관찰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의 차이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낮을 때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사는 2인 체계 이상은 아니어야 해요. 2인은 보장해야 하지만 1인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린이집의 유아반은 다 1인 체계로 교실을 만들고 있어요. 2인 체계가 없어요. 한 명당 10명 이상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유아교육과 교수 B)

우리나라의 지금 교직원의 구조가 전문성을 요청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한 선생님 모든 걸 다 하잖아요. 티칭만 하고 양육만 하지 않아요. 아프면 돌봐야지 위험하면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질적인 요구는 있으면서 다 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됐거나와 그게 교과에서는 들었죠.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데 충분히 그걸 잘 훈련시켜주는 구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지도자도 없고.(유아교육과 교수 B)

....삼성이나 직장어린이집이 질을 조금 담보하는 게 뭐냐 하면 구조적으로 영양사 간호사 사무가 별도로 있던 말이에요. 안전 관리의 전문가가 있고 급식 관리의 전문가가 있고 그들

은 일과에서 지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실은 교직원의 구조 그리고 질적인 거를 관리하는 원장이 없어요.(유아교육과 교수 B)

보조교사 지원은 영아전담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나마만큼 안전이나 위험도에도 아이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국공립 시설로 더 많이 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정원이 채워진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어린이집에서는 그쪽에서 지원은 안 되는 거야.(사업 미참여 원장 J)

### 3.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

#### 가. 보육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전문가들은 현재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어떻게 형성, 유지되었는지, 특히, 3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배경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부모 급여 등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야말로 정부 정책의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주제로 보았다. 특히 이를 국정과제 46의 주요 과제로서 아동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틀을 내놔야 되는 때예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근데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해온 거에서 퀄리티를 꾸준히 개선시켜 오고 노력하고 물론 열심히 했지만 새로운 구조가 뭐가 필요한데...(아동심리학과 교수 C)

그래서 나라에서 법으로 뭔가를 이렇게 숫자로 낮춰놓지 않는 이상은 보육의 질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아이들의 영유아 수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감소된다고 해서 비율 개선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따로 지원이나 그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아동보육과 D)

우리가 보육의 질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구조적 조건, 과정적 조건 얘기하잖아요. 그럼 구조적 조건 3가지가 공간, 집단 크기, 교사 대 아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과정적 크기가 상호작용, 커리큘럼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의 순차적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핵심 요소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는 오히려 정책 홍보를 하는 거 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아동심리학과 교수 C)

‘씨를 뿌리면 싹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보육 정책에서 필요한 시대가 왔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보육 복지부가 유보통합이 나오면서.....(아동심리학과 교수 C)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안전에서 정말 안전한 어린이집 외적 환경을 만들고 싶다....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고 필요성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못했던 것들이 지금에서 이제 애도 줄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가 조금 움직임이 있는 거 같아요.(육아종합지원센터장 A)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정해진 역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논리에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우리나라가 그렇게 1 대 3, 1 대 5, 1 대 7, 1 대 15, 1 대 20으로 선정하게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경제적 논리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아동권리 이런 걸 존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동의 권리나 질을 논의하지 않고 그 보육 비용에 대한 썸(합계)을 그냥 나눈 거예요.(유아교육과 교수 B)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3세를 이렇게 15로 낮추자고 할 때 그때는 보육 비용을 부모들이 부담할 때였거든요.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제한했던 거는 저희들한테도 되게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발달의 연속 속상에 있으니까 1대 7에서 어떻게 1대 15로 점프를 하나 이거는 실은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혜택이 50% 줄었다고 물리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는데.....우리나라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의 출발점이 완전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질의 논의가 아니고 경제적 개념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논리였다는 거죠.(유아교육과 교수 B)

## 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변에 시범사업을 하는 지자체를 통해 사업 내용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대부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으나 어떤 연령대를 선정하는지, 사업의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기본적으로 0세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최근 발달이 늦은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3세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요구도 높았다.

그거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물론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데 찬성을 하기는 하는데 좋은 점이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교사들 비율 줄어들면 교사들이 일단 제일 좋아할 것이고 그다음에 엄마들도 교실 어떻게 보면 교실 좋아졌다고 하는 엄마들도 간혹 있거든요.(사업 미참여 원장 F)

0세반이 사실 2학기는 그런데 1학기에 처음에 올 때 이제 발달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0세의 발달이 차이가 많이 나는 1학기 그다음에 이제 3월 1일에 만 3세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0세가 급하다라는 거에 동의가 됐고요.(노원구 사업 참여 원장 A)

신경과학 연구 쪽에서도 1대 1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상호작용이 작용하

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누가 봐도 0세부터니까 그거를 줄여야 되지 않냐, 일대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본다면 첫 태어난 영아기에 사실 1대 3은 정말 높은 거죠.(아동학과 교수 A)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유아반이 더 시급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아반도 필요하지만, 유아반 3세, 만 3세 같아요.(사업 미참여 교사 D)

아이를 생각할 때 아이의 안전을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연령은 2세 만 2세죠 네 그리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나...보조교사가 있다면 네, 0세 셋은 보조가 있다면 네 그냥 가능해요.(사업 미참여 교사 F)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3세 발달 특성에서 시급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급한 거고 전 연령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올라가는 반에 대해서 비율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발달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리고 교사들의....(육아종합지원센터장 A)

예전에 20명에서 15명으로 준다고 하니까 선생님 유아반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그 반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손이 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사실 6, 7세만 돼도 대변 화장실 가서 닦는 거 옛날에는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7세도 닦는 게 안 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 3세에 있는 애들이 기저귀를 차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사업 미참여 교사 D)

## 다. 시범사업의 지역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인식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의 지역과 대상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역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기도를 선정지역으로, 가정,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 대상으로 제안하였다.

경기도를 할 것 같아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이 네 일단은 도시적인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 다 갖추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구역 나눠서 뽑기도 쉽고 이전에 가정만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경기도로 한정을 하고 0세로 간다는 그런 특성을 했을 때 설립 유형 자체를....(유아교육과 교수 E)

저는 어쨌든 가정이나 민간이 맞지 않을까 해요.(아동심리학과 교수 C)

어린이집 수를 그냥 믿을 만한 어린이집만 뽑아서 딱 몇 개만 하면 어떨까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니면 그냥 민간 어린이집 들이 대부분 영유아 모집이 안 돼요. 모집이 안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는 민간 어린이집이 있어요. 엄마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그래서 들여다보면 정말 원장님이 잘하세요. 달리 줄 서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은 정말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팅이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아동학과 교수 A)

그 지역에서 비교 집단처럼 그 지역에서 두 기관을 섭외를 하셔서 여기가 줄어야 되면 여기

에 준 인원이 이쪽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매칭해서 대상을 구하셔도 되지 않죠?...(아동학과 교수 A)

효과를 볼 때는 가장 조건이 안 좋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투입했을 때 효과가 잘 나와요. 그 정책의 처치 필요성 실효성이나 장단점을 빨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민간 가정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아동학과 교수 A)

또한 아이들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설비 등 공간, 학급 크기, 성인과 아동의 차이를 고려한 면적 극대화를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애네들이 어느 환경에 가서 사느냐가 질과 연결되는데 우리는 환경에 관한 논의가 너무 없어요.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환경이 전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사가 긴 시간 동안 아이들 데리고 있기 때문에 시설 설비에 대한 서포트를 완벽하게 해주지 않으면 피곤하고 힘든데 좋을 일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 산정은 정말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지는 거죠. 저는 늘 교사 대 아동의 비율하고 학급 크기하고 면적하고 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유아교육과 교수 B)

아이들을 교사들 아동 비율만 맞추시지 마시고 면적에 대한 거를 꼭 아이도 좀 덜어내고 교사도 좀 덜어내는 방식의 연구가 되셨으면 좋겠다. 현장은 그래야 보육실이 좀 쾌적하고 또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좀 확보되고 이런 좋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면적을 반드시 고려하고 사람을 덜어내야지 거기다 두고 보조교사 놓고 야간연장에 넣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노원구 사업 참여 원장 A)

교사에게 아동 비율이 좀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단점이 성인들이 20명 인 정원에 많이 들어와 버리면 공간이...한 번에 두 담임씩 선생님이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방이 3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 대 2로 내 아이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같은 교실에 들어가 있으니, 아이들의 공간에 성인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교사한테 아동 비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다니는데 이 공간이 더 작아지는 느낌 이거는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사업 미참여 원장 J)

그 외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 아동 권리 존중의 실행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시범사업의 실행이 교사의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아동 권리 존중의 필요성을 넣으실 거면 지표 중에 하나로 권리 존중 실행을 넣으셔도 돼요. 실행자가 자기 체크하는 실행 권리존중 실행에 대한 문항들이 있어요.....교사가 자기 판

단했을 때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줄이기 전에는 하루에 내가 느끼는 아동의 문제 행동 부정 행동의 빈도가 몇 번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이게 줄어들었을 때는 몇 번으로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런 범주로 지표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아동학과 교수 A)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교사들이 아동 비율이 낮아지면 그럼 현장에서 좀 오래 근무하면서 자기 전문성을 좀 높여가는 교사도 많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필요성을 가져온다면 유아 같은 경우는 개정 놀이 과정 되면서 교사가 좀 모자라다고 계속 보고서에서 1순위로, 어려움 1순위로 계속 뜨고 있고.(유아교육과 E)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주요 관심사인 운영의 어려움과 시범사업 운영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공립의 인건비 지원과 서울형의 인건비 지원 등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의 인건비와 운영비 추계를 해 온 원장도 있었다.

아동을 축소하는 게 찬성인데 교사를 투입 더 늘리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또 4대 보험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인건비 부분에서 그럼 인건비 부분에서 사대 보험이 들어가니까 원이 운영이 원이 적은 원들은 이런 부분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사업 참여 교사 A)

예를 들어서 0세 반을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인다고 하면은 항상 2 대 1이 차 있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연령이든지 그 반 정원이 항상 차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없어 갖고 되게 어렵잖아요. ....반 정원이 항상 안 차 있는데 반 정원을 찻다는 전제 하에 지자체가 사업을 피니까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항상 허덕인다는 거죠. 교사들은 늘어나고 아이들 전체 정원은 적어지고 이래서 운영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사업 미참여 원장 F)

20인 시설이라면 저희가 원장 겸 담임을 해야 되잖아요....그쵸 예 원장님 담임을 해야 되는데 담임을 안 하면 저희 인건비 지원이 안 돼요.(사업 미참여 원장 F)

인건비만 3명에 대해서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급간식부터 개한데 교재 교구비까지 포함된 그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사한테 그 비용이 모두 그냥 가는 그대로 그 인건비 지원이 교사한테로 호봉제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에 크게 거기에 급간식비 기타 운영비 그 외에 그 비용들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사업 미참여 원장 H)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인건비만 지원한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지금 민간이나 가정에는 반당 운영비가 있어요. 영아나 서울형은 없어요. 인건비 지원이라 반당 운영비가 있단 말이에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하고 구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어요. 거기 그 외에 지금 빠지는 한 명에 대한 그 보육료만큼의 반당 운영비가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총 정원에

대한 운영비로 총 정원의 현재 현원에 대한 운영비가 이 아이들한테 나오는 게 다...(사업 미참여 원장 H)

축소됐을 때는 운영비 지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이 추가됐을 때는 추가된 반에 대한 온전한 인건비 지원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 축소됐을 때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 얘기가 안 채워졌을 때 그 운영비...(사업 미참여 원장 G)

원아 모집을 덜 해도 교사를 채용해서 교사를 이제 사용해도 그쵸 이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채워지기 때문에 .... 그래서 인건비가 더 낮다라고 말씀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쪽에서는 네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운영지원금! 운영지원비에 인건비를 제출할 수 있으니.....(사업 미참여 원장 J)

온전한 운영비가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하는 게 맞고 축소돼서 보육교사도 1명 보육교사 지금 축소되더라도 보조 교사가 들어가면 더욱 이상적이지만 그거는 담당 지원도 플러스해서 축소됐을 때는 담당 지원 플러스 표준 보육료가 좀 최대한....한 아이가 원장 급여도 되고 임대료도 되고 뭐도 되고 그게 다 원 운영에 다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사업 미참여 원장 G).

결론은 저도 못 내고 그냥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인건비 80%를 이제 추가반에 대해서 지원받으면 153만 1552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1인 없어지는 하나의 당 1인 보육료 106만 9천원에 플러스 알파 150만 원 이상은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반수당을 인상을 하든지 원가 다른 부분에서 운영비에서 인상이 돼야...(사업 미참여 원장 F, H)

향후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자가 절차를 이해하기 쉽고, 간소화된 서류로 신청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아니 이게 너무 좀 저희 제가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데 서류를 준비하는데 원장의 철학 이런 연간 계획서 표준 아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서류를 왜 하는 거지 평가는 조금 바뀔 거라고 ..... 솔직히 그 기준 서류가 이 원에 지금 0세반을 세 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걸 봐야지 원장의 철학부터 표준보육과정.....그거를 시행하고 있음을 평가 인증을 받아서 A 등급을 받은 곳에서 평가인증 연간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게 너무 서류만 전 서류 보고 진짜.....(사업 미참여 원장 G)

0세아 전용은 저희가 지금 대표자랑 원장이랑 다른 상황이어 가지고 0세아 전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랑 원장이 동일해야 해서 근데 저희는 다른 상황이어서....그리고 시에서 0세아 전용을 내줄 테니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제 신청을 해라 요구서를 작성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그때 원장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굳이 이 복잡한 걸 내가 왜라고 하셔서 하시면서....(사업 미참여 원장 J)

## 4.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의 효과 인식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만족도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점, 아이들과 밀도 있는 상호작용,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아이들에게 반응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모들도 이를 지켜보면서 이용 중인 어린이집이 다른 기관과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간이 좁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축소되면서 보육실이 쾌적해지고 상호작용이 원활해졌음을 강조하였다.

교사로서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밀도 있는 상호작용, 밀도 있는 관찰, 아이들의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대처도 빠르고, 그런 학부모들 만족도가 높은 상황들...엄마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어느 원에 가면 3명을 보는데, OO어린이집은 2명을 보는데 다른 어린이집은 3명을 본다. 근데 또 다르겠죠. 두 명과 3명이 봤을 때, 보육 활동이라든지 부모 상담이라든지 아이를 케어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거예요.(광양시 사업 참여 원장 C)

무엇보다도 안전에서 안전 부분에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호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0세 친구들이랑 영아니까 물고 꼬집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같듯이 굉장히 많았어요.(사업 참여 교사 B)

부모는 비교 기준이 없어요. 내 아이가 왔을 때 2명이든 3명이든 선생님이 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느냐 선생님이 아이한테 어떻게 대화하면서 아이랑 라포를 형성하고 아이를 사랑해 주느냐 관계를 맺느냐 이런 거를 관심이 있어야지 두 명과 3명이 뭐가 달라를 몰라요....학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자기는 비교군이 없었는데 세 명인데 두 명이라는 거야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확 그거를 엄청나게 수용하더라는 거죠.(노원구 사업 참여 원장 A)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입소 대기서 받다 보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놀라세요. 그리고 더 이제 첫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은 1:3을 생각하다가 너무 “이 어린이들 세 명을 어떻게 봐” 이런 질문들은 제일 많이 하셨어요... 1:2로 가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타 지역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광양시 사업 참여 원장 D)

선생님 1명당 3명보는 거랑 선생님 1명당 2명 본다 그러면 거의 바로 입소 바로 하시는 정도로. 근데 자리가 없으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대신 많이 없잖아요.(사업 참여 교사 A)



이제 면적이 굉장히 쾌적해졌고요 교실에 보육실의 느낌이 굉장히 쾌적해졌어요. 느낌이 그냥 체감상으로 굉장히 쾌적해졌고 저희가 우연히 8월생 아가가 있거든요. 1~2월생과 8월생 아가가 한 교실에 있는데 이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잘 먹고 산책 가고 애는 안고 가야 되는데 전혀 문제를 못 느낄 만큼 선생님들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노원구 사업 참여 원장 A)

## 5.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모형개발

본 절의 내용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방안과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주요 이슈들에 관해 보육전문가 12명에게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과 이유, 시범사업의 대상 연령과 대상 연령 선정 이유, 집단 크기, 시범사업 필요 여부와 규모, 모형 선정과 이유 등에 대해 응답하였다.

### 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이유와 연령 등

#### 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한 이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문가 모두 1순위로 ‘보육의 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2순위는 ‘교사의 권리 존중과 근무 여건’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아동의 인권과 직결되어서’ 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IV-5-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 구분                     | 1순위       | 2순위     |
|------------------------|-----------|---------|
|                        | 빈도(%)     | 빈도(%)   |
| 전체                     | 12(100.0) | 0( 0.0) |
| 보육의 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 12(100.0) | 0( 0.0) |
| 아동의 인권과 직결되어서          | 0( 0.0)   | 5(41.7) |
| 영유아 인구 감소와 직결되므로       | 0( 0.0)   | 0( 0.0) |
| 교사의 권리 존중과 근무 여건을 위해서  | 0( 0.0)   | 7(58.3) |

## 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한 연령과 선택 이유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가장 먼저 필요한 연령과 세부 연령을 확인한 결과, 12명의 전문가 응답 중 영아가 68.8%로 가장 많았고 영아 중에서 0세에 대한 비율이 62.5%였다.

〈표 IV-5-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한 연령(다중응답)

단위: 명, %

| 구분 |    | 빈도 | 백분율   |
|----|----|----|-------|
| 전체 |    | 16 | 100.0 |
| 영아 | 0세 | 10 | 62.5  |
|    | 1세 | 1  | 6.3   |
|    | 2세 | 0  | 0.0   |
| 유아 | 3세 | 4  | 25.0  |
|    | 4세 | 1  | 6.3   |
|    | 5세 | 0  | 0.0   |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세부 연령 선택 이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7명의 전문가가 0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아인 0세를 선택한 이유를 보면 개인별 발달차가 클 뿐만 아니라 월령별 격차도 크므로 민감한 개별 보육이 요구되는 것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두 번째는 0세와 3세 동시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이었고 그 이유로는 0세의 이유는 앞서 기술한 내용과 유사한 이유가 많았고 3세가 추가로 해야 하는 이유는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이며 그에 따른 개별 요구도 증가하나 반별 인원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보육교사 업무 강도가 높다는 이유를 강조하였다. 한편 1세와 4세 동시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유는 실질적인 기관 이용이 1세부터 증가하고 4세 배치기준이 가장 비현실적이므로 두 연령의 시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3세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전 연령에 비해 급격히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지므로 양질의 보육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개선이 필요한 연령으로서 0세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3) 시범사업 시 교사 대 1인당 아동 수와 집단 크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아동 수와 집단 크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사 1인당 아동 수에 대해 연령별로 확인한 결과, 0세는 2명, 1세는 4명, 2세는 6명, 3세는 10명, 4세 이상은 1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 연령대에서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더 적게 배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3세 유아의 경우는 과도하게 집단이 커지지 않는 10명으로 제시하고 4세 이상은 현행보다 적은 15명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연령별 집단 크기에 대해서는 0세에서 2세까지는 현재 답한 교사 1인당 아동 수의 2배에 해당하는 4명, 8명, 12명으로 나타났는데, 3세는 20명, 4세 이상은 15명으로 나타나 유아의 집단 크기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IV-5-3〉 개선 시 교사 대 1인당 아동 수와 집단 크기

단위: 세, 명

|                           | 연령 구분 |   |   |    |    |    |                | 연령 구분 |    |    |    |    |    |
|---------------------------|-------|---|---|----|----|----|----------------|-------|----|----|----|----|----|
|                           | 0     | 1 | 2 | 3  | 4  | 5  |                | 0     | 1  | 2  | 3  | 4  | 5  |
| 교사<br>대<br>아동<br>적정<br>비율 | 2     | 4 | 6 | 10 | 15 | 15 | 최대<br>집단<br>크기 | 4     | 8  | 12 | 20 | 30 | 30 |
|                           | 2     | 3 | 5 | 10 | 15 | 15 |                | 6     | 6  | 10 | 20 | 30 | 30 |
|                           | 1     | 2 | 3 | 7  | 10 | 10 |                | 4     | 6  | 12 | 14 | 20 | 20 |
|                           | 2     | 4 | 7 | 10 | 15 | 15 |                | 4     | 8  | 14 | 10 | 15 | 15 |
|                           | 2     | 4 | 6 | 12 | 18 | 20 |                | 2     | 5  | 7  | 12 | 18 | 20 |
|                           | 2     | 4 | 6 | 10 | 16 | 18 |                | 4     | 8  | 12 | 10 | 16 | 18 |
|                           | 2     | 3 | 5 | 10 | 12 | 15 |                | 2     | 3  | 5  | 10 | 12 | 15 |
|                           | 2     | 4 | 6 | 8  | 15 | 15 |                | 4     | 8  | 12 | 16 | 15 | 15 |
|                           | 2     | 4 | 5 | 10 | 15 | 15 |                | 4     | 8  | 10 | 20 | 15 | 15 |
|                           | 2     | 4 | 7 | 10 | 10 | 10 |                | 5     | 10 | 15 | 20 | 20 | 20 |
| 최다<br>빈도                  | 2     | 4 | 6 | 10 | 15 | 15 | 최다<br>빈도       | 4     | 8  | 12 | 20 | 15 | 15 |
|                           | 2     | 3 | 5 | 10 | 12 | 12 |                | 4     | 8  | 10 | 20 | 24 | 24 |

## 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 1)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필요 이유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한 지를 질문한 결과, 12명의 전문가 중 9명(75.0%)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시범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3명이었다.

〈표 IV-5-4〉 시범사업의 필요 여부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
| 전체      | 12(100.0) |
| 필요함     | 9( 75.0)  |
| 필요하지 않음 | 3( 25.0)  |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시범사업이 필요한 이유로서 현장에서의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현장에서의 대응력, 적정 비율의 검토와 공간과의 문제, 적정성 파악과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필요 없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이미 시범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좋고 시범사업으로서의 목적이 다소 모호하다는 의견이었다.

## 2) 시범사업 안의 선택과 선택 이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세 가지 안 중에서 가장 필요한 시범사업 안을 선택하게 한 결과는 0세와 3세, 그리고 장애인 반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1안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5-5〉 시범사업 모형 선택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
| 전체                  | 12(100.0) |
| 1안(0/3세 동시, 장애아 시행) | 9( 75.0)  |
| 2안(0세만, 장애아 시행)     | 2( 16.7)  |
| 3안(3세만, 장애아 시행)     | 1( 8.3)   |

한편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가장 필요한 시범사업 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안에 대한 각각의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안의 경우, 모든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보편화, 시범사업의 평가, 영아와 유아의 대표적인 연령이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안의 경우는 0세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별 보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안의 선택 이유는 0세는 결원율이 높아 어느 정도 보살핌이 가능하나 발달 수준이 너무 다른 3세아의 갑작스런 인원 증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3) 시범사업 시 운영방안 예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교사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효율적인 고용안은 ‘2반을 유지하며 4명으로 축소하고 2명 감소분에 대한 보육료 보전’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반을 만들고 교사 1명을 추가하는 경우는 3명이 응답하여 25.0%였다. 또한 기타 안을 제시한 경우는 1/2안 중 어린이집 별 특성에 맞춰야 하고 2안의 경우 보육실이 여유가 없는 경우는 불가하고 1안은 2명이 퇴소하지 않으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표 IV-5-6〉 시범사업 시 운영 방안 예시 선택

| 단위: 명, %                             |           |
|--------------------------------------|-----------|
| 구분                                   | 빈도(%)     |
| 전체                                   | 12(100.0) |
| 2반을 유지하며 4명으로 축소하고 2명 감소분에 대한 보육료 보전 | 8( 66.7)  |
| 3반을 만들고 교사 1명 추가 고용                  | 3( 25.0)  |
| 기타                                   | 1( 8.3)   |

### 4) 시범사업의 지역, 어린이집의 유형과 개수 등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향후 시범사업의 지역을 선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범사업을 진행한 지자체 제외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2021기준 76.1%)이상 지역’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한편 시범사업의 진행을 위해 어떤 어린이집 유형을 선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에 상관없이 정원 충족률이 전국 평균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또한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어린이집 개수를 알아본 결과, 100개와 200개보다 많은 300개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어린이집 개수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300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전문가들은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이므로 지역별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 비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V-5-7〉 시범사업 어린이집 개수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
| 전체   | 12(100.0) |
| 100개 | 3( 25.0)  |
| 200개 | 1( 8.3)   |
| 300개 | 8( 66.7)  |

## 6. 소결

3장에서는 전문가들과 지자체 시범사업의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참여하지 않은 원장과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또한 전문가들에게 시범사업의 주요 이슈들에 관한 의견 조사도 실시하였다. 녹취록의 핵심 진술문과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이후 교사 대 아동 비율도 변화했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육 환경에는 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한정된 환경과 가족관계를 경험하면서 어린 아동으로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발달이 예전과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모들도 이전과는 달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으며 육아에 애쓰기보다는 어린이집과 다른 기관에서 육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주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둘째,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과 더불어 유아 교육에 있어서도 보살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정된 누리과정에 의해 아이 중심과 놀이 중심을 강조하면서 더욱 아이에 대한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고 아동 인권이 바탕이 되는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경험을 확장하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은 아이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요구가 어린이집의 방향성과 같지 않다면 운영과 지원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적인 보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고 번아웃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에 많은 전문가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지고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아동의 안전과 개별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주요 과제로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아동 중심의 정책으로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넷째, 현장의 원장과 교사는 이미 수행된 지자체의 시범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 대상의 지역, 연령, 대상 등에 대해서는 일치되는 견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또한 지원 내용과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지원 신청서류에 대한 간소화 요구도 하였다.

다섯째,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경험한 교사들은 무엇보다 안전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점, 아이들과 밀도 있는 상호작용, 신속한 대처를 통해 아이들에게 반응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부모들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낮은 것을 인식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공간이 좁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축소되면서 보육실이 쾌적해졌다고 하였다.

여섯째,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다양한 이슈를 알아보았다. 전문가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보육의 질 개선에 가장 중요하고 아동의 인권과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시범사업의 대상 연령으로는 영아 중 0세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유아에서는 3세였다. 그리고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현행 기준보다 낮은 0세는 2명, 1세는 4명, 2세는 6명, 3세는 10명, 4세 이상은 15명이였다. 한편 시범사업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많았고 제시한 모형 중 1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지원에 상관없이 전국 평균 이상의 정원충족률을 만족하는 어린이집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제안하였다.







---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 제안

---

- 01 시범사업 모형개발의 기본 방향 및 쟁점
- 02 시범사업 실시 추진 계획
- 03 시범사업 모형과 추정 예산



## V.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 제안

### 1. 시범사업 모형개발의 기본 방향 및 쟁점

#### 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

앞서 정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저출생으로 인한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의 감소, 발달 지체 또는 문제 행동을 가진 영유아들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긴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아동이 많아지고 안전과 학대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집의 인가 년도가 오래되었거나 일부 면적이 좁은 소규모 어린이집 등은 영유아와 교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사 배치 기준과 국외의 교사 배치 기준을 참조하여 심층 면담과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 비율을 아래와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영아의 경우는 기존보다 1명씩 감원하도록 하고 유아의 경우는 기존의 인원에 비해 5명을 감원하도록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한다.

〈표 V-1-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제안

|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이상 |
|----|----|----|----|-----|-------|
| 현행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 개선 | 2명 | 4명 | 6명 | 10명 | 15명   |

이렇게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개선하게 된다면 한 반의 영유아의 수가 감소하고 추가반에 대한 교사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어 정원충족률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기관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문제이므로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

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에 의한 시범사업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나. 시범사업을 위한 지원 방식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 안을 정한 후에는 시범사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데, 지원 방식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지자체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면서 추가반을 구성하느냐 아니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면서 반을 그대로 유지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영유아의 수가 증가될 때 추가반을 구성하여 추가된 반에 교사를 지원하는 방법, 혹은 영유아의 수와 교사의 수를 조정하여 한 반의 정원을 감소시키면서 교사는 유지하는 방법이다. 둘째, 추가된 반의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느냐, 감소된 영유아의 수만큼 기관 운영비(보육료 포함)를 지원하느냐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이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의 방안은 담임교사를 추가로 지원하거나 보조교사의 지원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교사를 추가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 교사(담임, 보조)의 지원은 한정된 보육실의 인구 밀집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교사의 지원도 보육실 내의 밀집도를 높이면서 교사 간 업무 갈등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방안은 영유아의 수를 줄이고 반별 최대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육실 면적의 밀집도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 정책의 특성 상 아동의 수를 조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의 운영 측면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둘째 이슈에 대한 방안으로서 추가 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이 나올지, 정원에서 현원을 축소하여 운영하여 감원 아동 수만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이 나올지는 첫째 이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자체의 시범사업의 검토, 심층면담과 전문가의 의견조사들을 고려할 때 아동의 수를 감원하고 감원한 만큼의 아동의 수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의 모형개발에 앞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서 보육료지원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시범사업 실시 추진 계획

### 가. 시범사업 개요

#### 1) 추진 배경과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2) 사업 내용

(정의와 규모) 4개 권역 전국의 어린이집 대상 30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대도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시, 군, 구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면적을 고려해야 한다.

(연령) 0세, 3세 영유아반과 장애아 반으로 한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식사, 배변, 안전 측면에서 개별적이고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영아 0세 또는 기존의 보육에서 낮은 교사 대 비율이 갑자기 증가되는 3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3) 선정기준

(기본사항) 0세반, 장애아반, 3세반 아동 비율 축소 어린이집

(평가 및 평가인증) 정부 평가제 B 등급 이상 또는 평가인증 90점 이상

(정원충족률)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간 정원충족률 평균 70% 이상

(행정처분) 신청일 현재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진행사항이 없는 어린이집

#### 4) 선정방식과 선정 시점

선정방식은 일반 공모로 각 지자체(시, 군, 구)에서 신청을 받도록 한다. 단, 어린이집의 운영, 원아모집, 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유예기간도 필요하다.

## 5) 비용 지원 방식

2023년 기준 비용 지원방식(안)을 준용하되 반 운영비를 지원하여 정부 지원시설은 부모보육료 1인당 금액과 인건비를 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정부 미지원시설의 경우는 부모보육료와 반별 기관보육료를 추가하여 반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 6) 시범사업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전 과정의 모니터링을 위해 연구용역 담당 기관이 담당하고 원장, 교사와 부모에게 사전과 사후 설문 및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외 주요 정책 환경 요인, 시범사업 중 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 나. 시범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의 특성상 이사나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원 영유아는 자연스럽게 상위 연령으로 진입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시범사업 기관의 재원아동은 상위 연령반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큰데 갑작스럽게 시범사업이 종료된다면 재원아가 늘어난 보육실에서 당황하거나 감원된 영유아로 인해 다음 연령의 영유아의 수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면 유예 기간을 주어 추가로 원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정책적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완점을 찾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성과분석 결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홍보는 정책 수요자에게는 정책적 관심과 참여에의 자발성을 갖게 하고 사업수행자는 정책 효과를 알림으로써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 3. 시범사업 모형과 추정 예산

#### 가. 시범사업 모형

앞서 논의한 시범사업의 방향과 지원 방식을 바탕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단 시범사업은 3년간에 걸쳐 진행하고자 향후 모든 연령으로 확대를 계획하고자 한다. 기존의 시범사업에서 가장 많았던 0세를 포함하고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이전 연령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연령대인 3세도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아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한다. 기존 어린이집의 공간을 감안할 때 추가반을 구성하여 인건비 지원을 하기 보다는 반의 정원을 축소하여 공간을 극대화하여 감소된 아동의 수의 보육료 단가 상당 금액을 반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취하면서 시범사업 모형은 세 가지로 제안한다. 장애아반은 우선 지원하면서 0세와 3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안, 영아의 0세만 지원하는 안, 3세만 지원하는 안의 세 가지 안이며 아래 [그림 V-3-1]과 같다.

[그림 V-3-1] 시범사업 모형

| 1안                                                                                            | 2안                                                                                       | 3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 3세반</li> <li>• 장애아반</li> <li>• 두 연령 동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세반</li> <li>• 장애아반</li> <li>• 영아 먼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반</li> <li>• 장애아반</li> <li>• 유아 먼저</li> </ul> |

위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본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 새 정부 임기 내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 시범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첫 번째 모형은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영아 0세와 유아 3세를 동시에 시작하여 3년 안에 전 연령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유보통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고려한 설계이다.

〈표 V-3-1〉 시범사업 모형 1안

| 현행 |      | 모형 내용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0세 | 1:3  | 1:2   | 1:2  | 1:3  |
| 1세 | 1:5  | 1:5   | 1:4  | 1:5  |
| 2세 | 1:7  | 1:7   | 1:7  | 1:6  |
| 3세 | 1:15 | 1:10  | 1:12 | 1:12 |
| 4세 | 1:20 | 1:20  | 1:15 | 1:15 |
| 5세 | 1:20 | 1:20  | 1:20 | 1:15 |

두 번째 모형은 지자체의 많은 시범사업이 영아의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민감한 보육을 위해 0세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모형이다. 0세부터 순차적으로 영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완화하는 형태이다.

〈표 V-3-2〉 시범사업 모형 2안

| 현행 |      | 모형 내용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0세 | 1:3  | <b>1:2</b> | 1:2        | 1:3        |
| 1세 | 1:5  | 1:5        | <b>1:4</b> | 1:5        |
| 2세 | 1:7  | 1:7        | 1:7        | <b>1:6</b> |
| 3세 | 1:15 | 1:15       | 1:15       | 1:15       |
| 4세 | 1:20 | 1:20       | 1:20       | 1:20       |
| 5세 | 1:20 | 1:20       | 1:20       | 1:20       |

세 번째 모형은 유아 첫 연령인 3세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완화해 가는 형태로서 영아 보육에서 3세로 옮기면서 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교사 1인으로 서 돌보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고자 설계한 모형이다. 최근 3세아의 발달이 이전의 3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같은 연령 안에서 발달의 수준이 다르다는 심층면담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연령으로 보았다. 순차적으로 4, 5세 유아의 집단 크기도 15인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였다.



〈표 V-3-3〉 시범사업 모형 3안

| 현행 |      | 모형 내용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0세 | 1:3  | 1:3         | 1:3         | 1:3         |
| 1세 | 1:5  | 1:5         | 1:5         | 1:5         |
| 2세 | 1:7  | 1:7         | 1:7         | 1:7         |
| 3세 | 1:15 | <b>1:10</b> | 1:12        | 1:12        |
| 4세 | 1:20 | 1:20        | <b>1:15</b> | 1:15        |
| 5세 | 1:20 | 1:20        | 1:20        | <b>1:15</b> |

## 나. 모형에 따른 예산 추정

모형에 따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용되는 반 당 연령별 정원 조정 인원에 대한 보육료 상당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금액을 추정하여 소요 예산을 파악해야 한다. 아래 모형에 따른 1인 감소에 대한 보육료 금액은 2022년 기준에 의해 제시되었으므로 사업 규모의 모형에 따른 소요 예산은 변화할 예정이다. 단, 만0세반은 3반, 장애반 1반, 만3세반은 2반으로 300개소를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추정될 것이다.

### 1) 모형 1안의 예산 추정

모형 1안은 만0세반이 기존의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며 장애아반의 경우도 1명이 감소하는 모형이다. 그리고 만 3세반은 기존의 15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하는 경우를 예시로 한 것이다. 즉, 반당 연령별 정원 개선 인원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지원으로 2022년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를 중심으로 산출하여 단가 변경 시는 변경된 금액을 적용하여 추계할 예정이다.

〈표 V-3-4〉 모형 1안의 지원금액

| 구분       | 만 0세반                     | 만 3세반                       | 장애아반                    | 계          |
|----------|---------------------------|-----------------------------|-------------------------|------------|
| 정부지원시설   | 499,000원(1인)              | 1,400,000원(5인)              | 530,000원(1인)            | 2,429,000원 |
| 기관별 소요예산 | 499,000원×3<br>=1,497,000원 | 1,400,000원×2<br>=2,800,000원 | 530,000원×1<br>=530,000원 | 4,827,000원 |
| 정부미지원시설  | 1,069,000(1인)             | 1,198,000원(5인)              | -                       | 2,267,000원 |

| 구분       | 만 0세반                       | 만 3세반                        | 장애아반 | 계          |
|----------|-----------------------------|------------------------------|------|------------|
| 기관별 소요예산 | 1,069,000원×3<br>=3,180,000원 | 1,198,000원×2<br>= 3,960,000원 | -    | 7,140,000원 |

주: 1) 정부지원: 국공립, 공공형 민간·가정, 정부미지원: 일반 민간·가정  
2) 장애아반: 장애아 전문, 통합시설 지정 어린이집  
3) 반 운영비는 보육료 지원 단가 변동 시 변동 금액 적용하며 기관별 소요예산은 월단위임.

지원금액은 2023년 보육료기준에 의해 지급하며 시범사업의 전체 예산의 추계는 장애아반, 0세반, 3세반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3개 반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지원금액의 기준을 전제로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의 월별 지원 예산을 산출한 결과 정부지원시설은 1개소를 월별로 4,827,000원, 정부미지원시설은 7,140,000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2) 모형 2안의 예산 추정

모형 2는 만 0세반이 기존의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며 장애아반의 경우도 1명이 감소하는 모형이다. 지원금액은 2023년 보육료기준에 의해 지급하며 시범사업의 전체 예산의 추계는 장애아반, 0세반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2개 반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지원금액의 기준을 전제로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의 월별 지원 예산을 산출한 결과 정부지원시설은 1개소를 월별로 2,027,000원, 정부미지원시설은 3,180,000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V-3-5〉 모형 2안의 지원금액

| 구분       | 만 0세반                       | 장애아반                    | 계          |
|----------|-----------------------------|-------------------------|------------|
| 정부지원시설   | 499,000원(1인)                | 530,000원(1인)            | 1,029,000원 |
| 기관별 소요예산 | 499,000원×3<br>=1,497,000    | 530,000원×1<br>=530,000원 | 2,027,000원 |
| 정부미지원시설  | 1,069,000원(1인)              | -                       | 1,069,000원 |
| 기관별 소요예산 | 1,069,000원×3<br>=3,180,000원 | -                       | 3,180,000원 |

주: 1) 정부지원: 국공립, 공공형 민간·가정, 정부미지원: 일반 민간·가정  
2) 장애아반: 장애아 전문, 통합시설 지정 어린이집  
3) 반 운영비는 표준보육비용 산정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기관별 소요예산은 월단위임.

### 3) 모형 3안의 예산 추정

모형 3은 만 3세반이 기존의 15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며 장애아반의 경우도 1명이 감소하는 모형이다. 지원금액은 2023년 보육료기준에 의해 지급하며 시범사업의 전체 예산의 추계는 장애아반, 3세반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2개 반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지원금액의 기준을 전제로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의 월별 지원 예산을 산출한 결과 정부지원시설은 1개소를 월별로 3,330,000원, 정부미지원시설은 3,960,000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V-3-6〉 모형 3안의 지원금액

| 구분       | 만 3세반                          | 장애아반                    | 계          |
|----------|--------------------------------|-------------------------|------------|
| 정부지원시설   | 280,000×5인<br>=1,400,000원(5인)  | 530,000원(1인)            | 1,930,000원 |
| 기관별 소요예산 | 1,400,000원×2<br>=2,800,000원    | 530,000원×1<br>=530,000원 | 3,330,000원 |
| 정부미지원시설  | 396,000원×5인<br>=1,980,000원(5인) | -                       | 1,188,000원 |
| 기관별 소요예산 | 1,198,000원×2<br>= 3,960,000원   | -                       | 3,960,000원 |

주: 1) 정부지원: 국공립, 공공형 민간·가정, 정부미지원: 일반 민간·가정

2) 장애아반: 장애아 전문, 통합시설 지정 어린이집

3) 반 운영비는 표준보육비용 산정 변화에 따라 변동 적용하며 기관별 소요예산은 월단위임.

### 4) 시범사업 1년 예산 추정

세 가지 모형의 월별 예산을 토대로 300여개의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1년 예산을 추정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원시설 150개(장애아반 50개 포함), 정부미지원시설 150개를 선정하여 300여개를 지원한다는 가정 아래 예산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제시하는 예산은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이 같은 비율로 구성한다는 전제이나 실제 시범사업 실시의 경우는 각 모형별로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의 구성에 따라 소요예산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표에 따라 1안의 시범사업을 정부지원어린이집 150개소, 정부미지원어

린이집 150개소를 각각 지원한다면 1년 예산은 21,540,600,000원이 될 것이다. 모형 2안의 시범사업 1년은 9,372,600,000원이며 모형 3안의 1년 예산은 13,122,000,000원으로 추정된다.

〈표 V-3-7〉 각 모형의 시범사업 1년 소요예산

| 구분 |       | 월별 예산      | 1년 예산       | 시범사업 1년 예산      |
|----|-------|------------|-------------|-----------------|
| 1안 | 지원시설  | 4,827,000원 | 57,924,000원 | 17,377,200,000원 |
|    | 미지원시설 | 7,140,000원 | 85,680,000원 | 25,704,000,000원 |
| 2안 | 지원시설  | 2,027,000원 | 24,324,000원 | 7,297,200,000원  |
|    | 미지원시설 | 3,180,000원 | 38,160,000원 | 11,448,000,000원 |
| 3안 | 지원시설  | 3,330,000원 | 39,960,000원 | 11,988,000,000원 |
|    | 미지원시설 | 3,960,000원 | 47,520,000원 | 14,256,000,000원 |

- 주: 1) 어린이집 1개소 당 1년 예산  
 2) 각각 정부지원어린이집 150개소, 정부미지원어린이집 150개소의 1년 예산 금액  
 3) 반 운영비는 표준보육비용 산정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함.

결론적으로 시범사업을 300개소로 실시한다고 할 때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정부가 온전히 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이므로 도비나 시비로 매칭한다면 더 비용이 줄 수 있으리라 보지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비, 현장점검 비용, 홍보비 등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강란·장유진(2021).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보육효능감, 소진과 교사-영유아 상호 작용의 관계 : 교사 휴게시간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를 중심으로. 유아 교육학논집, 25(6), 33-52.
- 경기도(2022). 2022년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 광양시(2022).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계획」 내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13a). 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13b).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권수빈·김낙홍(2019). 휴게시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24(5), 389-410.
- 김송이·김명순·김한나(2020).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서울: 서울 시여성가족재단.
- 김아름·김은설·조혜주·양성은(2020).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박진아·이솔미(2019). OECD TALIS 국제 유아교원 비교 연구 2019: Starting Strong Survey 분석.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보육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연구-. 서울: 육아정책 연구소.
- 김은영·박창현·김수정·김혜진(2018).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 맵 연구(I): 교사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종두·김선아·박성심(2018). 영·유아보육기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사용에 대 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8), 285-299.
- 나은영·차유리(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 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2.
- 노원구(2021). 「노원 안심어린이집 선정·운영 추진계획」 내부자료.
- 노원구(2022).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기준」 내부자료.

- 대외정책연구원(n.d.). OECD 위원회 리포트: 통계위원회. [https://www.kiep.go.kr/galleryExtraDownload.es?bid=0015&list\\_no=7215&seq=16](https://www.kiep.go.kr/galleryExtraDownload.es?bid=0015&list_no=7215&seq=16)에서 2022. 7. 23. 인출.
- 대전광역시(2022). 「0세 전용 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내부자료.
- 동작구(2019). 「2019년 추진계획」 내부자료.
- 동작구(2022).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 사업」 내부자료.
- 박지성·양지윤·전상길(2022). MZ세대 관련 국내언론보도에 대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인사조직 분야에의 함의.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46(2), 159-196.
- 박진아(2019). 보육교사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정책과제. *육아정책 Brief*.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희숙(2014). 24시간 어린이집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이 영유아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9(1), 267-285.
- 백선희(2016). 보육시설에서의 초과보육 허용 정책에 대한 비판 및 대안의 모색: 보육의 질적 측면에서의 접근. *비판사회정책*, 51, 133-174.
-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울특별시(202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확대」 내부자료.
- 서초구(2022). 「2022년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지원」 내부자료.
- 성미영·정현심·이서경(2018). 영유아 안전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 및 내용 분석: 2010년~2017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6), 504-517.
- 심도현(2021). 보육교사의 소진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원장과 동료교사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31, 1-23.
- 안소영(2021, 5. 31). 미래 비즈니스 바꾸는 新인류 'MZ세대'.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dustry/2021/05/31/57JHHZF4FBFCLGEKGKJI3IQ2VU/>에서 2022. 8. 4. 인출.
- 양미선·이윤진·김동훈·김근진·조숙인·구자연·오미애·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최은영·김보미(2020). 영유아 수 변동에 따른 어린이집 인적·물적 자원 이용 합리화 방안. 세종: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오수정·김명순(2019). 어린이집 만 2세반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과 영아의 놀이 행동 및 상징놀이 수준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1), 125-141.
- 유지연·황혜정(2015).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1-23.
- 이기숙·강기연(2012). 유아교육기관평가. 서울: 창지사.
- 이완정(1999). 보육시설의 질과 아동의 기질에 따른 걸음마기 영유아의 포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한국영유아보육학*, 18, 175-195.
- 이윤진·이민희(2017).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현옥·윤혜주(2021).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운영 실태와 보육현장의 요구 분석. *영유아교육·보육연구*, 14(1), 5-29.
- 이예진·홍현재(2020).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 방안. 인천여성가족재단.
- 인천광역시(2022).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 기준 안내」 내부자료.
- 임동호·박경아(2020). 어린이집 반정원 조정 인건비 지원사업 성과분석. 광양시.
- 정영실·김영실(2015).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질에 따른 10~21개월 영아의 공동 주의.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137-155.
- 조막래·류임량·김태은(2022).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 정책 성과 분석: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및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우미(2018). 영유아 보육교사가 지각한 근무환경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서 근무소진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7(4), 253-262.
- 조해연·유선영·박선희(2014). 유아교육기관 평가지표 분석: 한국(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미국(NAEYC), 호주(ACECQA)의 상호작용 영역 평가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
- 조해연·이기숙(2014).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5(3), 115-136.
- 진주시(2022). 「구슬모음어린이집 추진 계획」 내부자료.
- 최은희(2021). MZ 세대와의 소통은 다른가요? *충북 Issue & Trend*, (45), 28-32.

- 한국교육개발원(2019). OECD 교육통계 핸드북.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규석·신수진(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황윤세·김연진(2017). 영아 교사의 민감성 및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사회인지놀이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38(4), 161-176.
- 황혜진(2021. 6. 30). 끈끈한 유대는 불편... 동호회 대신 '크루' 즐긴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1063001070103324001>에서 2022. 8. 2. 인출.
-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2020).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 <https://www.acecqa.gov.au/sites/default/files/2020-09/Guide-to-the-NQF-September-2020.pdf>. 2022. 8. 14. 인출.
- Bigras, N., Bouchard, C., Cantin, G., Brunson, L., Coutu, S., Lemay, L., ... & Charron, A. (2010). A comparative study of structural and process quality in center-based and family-based child care services. Child & Youth Care Forum, 39(3), 129-150.
- Ceglowski, D., & Bacigalupa, C. (2002). Four perspectives on child care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0(2), 87-92.
- De Schipper, E. J., Riksen-Walraven, J. M., & Geurts, S. A. (2006). Effects of child-caregiver ratio on the interactions between caregivers and children in child-care centers: An experi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77(4), 861-874.
- Dowsett, C. J., Huston, A. C., & Imes, A. E. (2008). Structural and process features in three types of child care for children from high and low income famili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1), 69-93.
-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 (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 2019 Edition, Eurydice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Howes, C. (1983). Caregiver behavior in center and family day car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4, 99-107.



- Kamerman, S. B. (ed.). (200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The Institute for Child and Family Policy at Columbia University.
- Kontos, S., Hsu, H. C. & Dunn, L. (1994)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 care centers and family day care hom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87-411.
- NAEYC (2022). NAEYC Early learning program accreditation standards and assessment items. Washington, DC: NAEYC.
-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2022. 6. 1). Education (Early Childhood Services) Regulations 2008 (SR 2008/204). Wellington, New Zealand: The Parliamentary Counsel Office. [https://www.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08/0204/latest/DLM1412637.html?search=qs\\_act%40bill%40regulation%40deemedreg\\_ratio\\_s\\_resel\\_25\\_h&p=1#DLM141263](https://www.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08/0204/latest/DLM1412637.html?search=qs_act%40bill%40regulation%40deemedreg_ratio_s_resel_25_h&p=1#DLM141263). 2022. 8. 14. 인출.
- NICHD ECCRN. (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269-306.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747-990.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8). Early child care and self control, compliance, and problem behaviors at twenty-four and thirty-six months. *Child Development*, 69, 1145-1170.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9). Child outcomes when child care center classes meet recommended standards of qu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 1072-1077.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child care for toddlers and preschooler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4, 116-135.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2). Child-care

- structure-process-outcom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hild-care quality on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sychological Science*, 13(3), 199-206.
- OECD. (2018). *Engaging young children: Lessons from research about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tarting Strong*,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9).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OECD. (2022). Students per teaching staff (indicator). doi: 10.1787/3df7c0a6-en. <https://data.oecd.org/teachers/students-per-teaching-staff.htm>에서 2022. 8. 2. 인출.
- Rosenthal, M. K. (1990) Social policy and its effects on the daily experiences of infants and toddlers in Family Day Care in Israe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1, 85- 103.
- Rosenthal, M. K. (2003).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 cultural context.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11, 101-116.
- Vermeer, H. J., van IJzendoorn, M. H., Cárcamo, R. A., & Harrison, L. J. (2016). Quality of child care using the environment rating scales: A meta-analysis of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48(1), 33-60.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193)에서 2022. 7. 19. 인출.



## 부록

부록 1. 사례조사

부록 2. 심층면담(어린이집 원장)

부록 3. 심층면담(어린이집 교사)

부록 4. 전문가 의견 조사

## 부록 1. 사례조사

|                    |  |
|--------------------|--|
| 담당 업무/ 업무 경력       |  |
| 관할 지역 어린이집 유형과 개소수 |  |
| 시범사업 시행 여부         |  |

1. 추진 근거 및 지역 특성
2. 시범사업 참여 여부
3.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의미(중요성)
4.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계기
  - 사업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지원 단가 등
  - 전체 소요 예산
5. 사업 평가
  - 사업 진행 후 자체 평가(관내 반응 등)
  -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 사업 진행을 위한 개선 사항
6. 향후 보완이나 사업에 대한 조언
  - 대상 선정과 선정 기준
  - 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

## 부록 2. 심층면담(어린이집 원장)

|                      |  |
|----------------------|--|
| 기관 유형과 기관명           |  |
| 보육 경력(현재 어린이집 운영 기간) |  |
| 시범사업 참여 여부           |  |

1. 기관 특성
2.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의미(중요성)
3. 사업 내용
  - 사업 참여 계기(사업 내용 인지 정도)
  - 정원 및 현원, 원아 모집 정도
  - 사업 참여 기간과 규모
4. 사업 참여 의견
  - 사업 참여 후 반응(교사와 부모의 만족도 등)
  - 사업 내용에 대한 의견
  - 사업 진행을 위한 개선 사항
5. 향후 보완이나 사업에 대한 조언
  - 대상 선정과 선정 기준
  - 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

### 부록 3. 심층면담(어린이집 교사)

|                      |  |
|----------------------|--|
| 기관 유형과 기관명           |  |
| 보육 경력(현재 어린이집 근무 기간) |  |
| 시범사업 참여 여부           |  |

1. 기관 특성
2.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의미(중요성)
3. 사업 내용
  - 사업 참여 계기(사업 내용 인지 정도)
  - 정원 및 현원, 원아 모집 정도
  - 사업 참여 기간과 규모
4. 사업 참여 의견
  - 사업 참여 후 반응(교사와 부모의 만족도 등)
  - 사업 내용에 대한 의견
  - 사업 진행을 위한 개선 사항
5. 향후 보완이나 사업에 대한 조언
  - 대상 선정과 선정 기준
  - 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

부록 4.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수시과제로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델개발 기초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다음 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1순위, 2순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 1순위(            ), 2순위(            )
- ☐ ① 보육의 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 ☐ ② 아동의 인권과 직결되어서
- ☐ ③ 영유아 인구 감소와 직결되므로
- ☐ ④ 교사의 권리 존중과 근무 여건을 위해서
- ☐ ⑤ 기타: \_\_\_\_\_

2.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어떤 연령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 구분   | 1) 응답(택 1)               | 2) 세부 연령 선택                 | 3) 선택 이유 |
|------|--------------------------|-----------------------------|----------|
| ① 영아 | <input type="checkbox"/> | 0세 <input type="checkbox"/> |          |
|      |                          | 1세 <input type="checkbox"/> |          |
|      |                          | 2세 <input type="checkbox"/> |          |
| ② 유아 | <input type="checkbox"/> | 3세 <input type="checkbox"/> |          |
|      |                          | 4세 <input type="checkbox"/> |          |
|      |                          | 5세 <input type="checkbox"/> |          |

2-1.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할까요?

| 연령 | 1) 교사 대 아동 적정 비율 | 2) 최대 집단 크기 |
|----|------------------|-------------|
| 0세 | 교사 1인당 아동 _____명 |             |
| 1세 | 교사 1인당 아동 _____명 |             |
| 2세 | 교사 1인당 아동 _____명 |             |
| 3세 | 교사 1인당 아동 _____명 |             |
| 4세 | 교사 1인당 아동 _____명 |             |
| 5세 | 교사 1인당 아동 _____명 |             |

3.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분              | 1) 응답(택 1)               | 2) 이유 |
|-----------------|--------------------------|-------|
| ① 시범사업이 필요함     | <input type="checkbox"/> |       |
| ② 시범사업이 필요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       |
| ③ 기타            | <input type="checkbox"/> |       |

4.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안이 있다면 어떤 안이 가장 필요(시급)한가요?

| 1안                                                                                        | 2안                                                                                   | 3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0, 3세반</li><li>• 장애아반</li><li>• 두 연령 동시</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0세반</li><li>• 장애아반</li><li>• 영아 먼저</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3세반</li><li>• 장애아반</li><li>• 유아 먼저</li></ul> |

| 구분   | 1) 응답(택 1)               | 2) 이유 |
|------|--------------------------|-------|
| ① 1안 | <input type="checkbox"/> |       |
| ② 2안 | <input type="checkbox"/> |       |
| ③ 3안 | <input type="checkbox"/> |       |
| ④ 기타 | <input type="checkbox"/> |       |

5.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한 반에 아동에 줄어들거나 반이 증가하면서 교사를 추가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다음 중 어떤 안이 더 효율적일까요? (예: 0세반 기존의 6명의 경우 2반에 교사 2명)



- ☐ ① 2반을 유지/ 4명으로 축소하고 2명 감소분에 대한 보육료 보전
- ☐ ② 3반을 만들고 교사 1명 추가 고용
- ☐ ③ 기타 \_\_\_\_\_

6. 현재 전국에서 서울(3개구 포함)을 비롯하여 6개 지역(첨부 파일 참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범사업의 지역을 선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실시 지역: 서울시(노원구, 서초구, 동작구),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광양시, 진주시).

- ☐ ① 시범사업을 진행한 지자체 포함 지역
- ☐ ② 시범사업을 진행한 지자체 포함 전국 평균 정원충족율(2021기준 76. 1%) 이상 지역
- ☐ ③ 시범사업을 진행한 지자체 제외 지역
- ☐ ④ 시범사업을 진행한 지자체 제외 전국 평균 정원충족율(2021기준 76. 1%) 이상 지역

7. 시범사업의 진행을 위해 어린이집의 유형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 ☐ ①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이나 공공형어린이집
- ☐ ②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 ☐ ③ 정부지원에 상관없이 정원 충족율이 전국 평균 이상 어린이집
- ☐ ④ 정부지원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

8.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린이집은 몇 개 정도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 구분     | 1) 응답(택 1)               | 2) 이유 |
|--------|--------------------------|-------|
| ① 100개 | <input type="checkbox"/> |       |
| ② 200개 | <input type="checkbox"/> |       |
| ③ 300개 | <input type="checkbox"/> |       |
| ④ 그 이상 | <input type="checkbox"/> |       |

감사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기초연구